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이동 청문권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이동 청문권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 청문권

## :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노총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임선영(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김현진(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최서경(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손유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자문: 강현아(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황옥경(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발간사

아동은 1989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으로 아동의 권리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협약의 이행 추세는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복지권에 비해 아동의 시민적 권리의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동 최상의 이익을 존중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비해 아동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와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협약 12조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경우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의견존중은 의견표현, 의견표명을 넘어 ‘듣도록 요구할 권리’로써 청문권(the right to be heard)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절차나 사회적 태도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보호조치 또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최근 즉각 분리제의 시행으로 아동학대 현장 실무자들의 기계적인 업무수행만을 강조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학대피해아동은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충족시킴으로써 책임감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처럼 보호조치 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법·제도적 지침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세부 지침의 부족은 현장의 실천을 느슨하게 이끄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 보장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경험을 살펴보고 특히 보호조치 과정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연구를 수행해 주신 노총래 교수님을 비롯한 정선욱 교수님, 임선영 박사님과 김현진 선생님께 그리고, 연구 자문으로 참여해 주신 황옥경 교수님, 강현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보호의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학대피해아동 최상의 이익과 의견 존중이 조화롭게 적용되도록 각 분야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김 웅 철

# 목 차

<b>연구요약</b> .....	<b>1</b>
<b>제1장 서론</b> .....	<b>17</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3
<b>제2장 문헌고찰</b> .....	<b>25</b>
제1절 아동 청문권의 이해 .....	27
제2절 국내외 아동 청문권 현황 .....	43
<b>제3장 아동 청문권에 대한 종사자 인식 : FGI</b> .....	<b>91</b>
제1절 조사개요 .....	93
제2절 연구결과 .....	95
제3절 FGI 함의 .....	120

<b>제4장 아동 청문권에 대한 전문가 인식 : 델파이조사</b> .....	<b>123</b>
제1절 조사개요 .....	125
제2절 설문 항목 및 내용 구성 .....	128
제3절 연구결과 .....	132
제4절 델파이 조사결과 합의 .....	188
<b>제5장 결론</b> .....	<b>191</b>
참고문헌 .....	204
부 록(설문지) .....	213

## 표목차

〈표 1-1〉 연구진행 일정	24
〈표 2-1〉 아동참여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요건	35
〈표 2-2〉 청문권 이행 절차	37
〈표 2-3〉 아동 청문권 관련 법	44
〈표 2-4〉 아동학대처벌법 아동 청문권 관련 조항	59
〈표 2-5〉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아동 청문권 관련 조항	60
〈표 2-6〉 위기청소년의 청문권 관련 조항	66
〈표 2-7〉 아동 청문권 관련 연구 - 국내	67
〈표 2-8〉 아동 청문권 관련 연구 - 해외	69
〈표 2-9〉 아동 청문권 관련 사업	70
〈표 2-10〉 핀란드 아동복지법 세부내용	76
〈표 2-11〉 프랑스 민법 세부내용	77
〈표 2-12〉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동법 세부내용	81
〈표 2-13〉 국가별 아동 청문권 관련 제도 특징	89
〈표 3-1〉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93
〈표 3-2〉 분석결과 정리	95
〈표 4-1〉 델파이 1차 설문 항목 및 내용 구성	128
〈표 4-2〉 델파이 2차 설문 항목 및 내용 구성	130
〈표 4-3〉 응답자 직책	132
〈표 4-4〉 응답자 거주 지역	132
〈표 4-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33
〈표 4-6〉 아동 청문권 용어	134
〈표 4-7〉 발달단계별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	134
〈표 4-8〉 사법체계 내 아동 청문권 관련 지원 내용	136
〈표 4-9〉 사법체계 내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	137
〈표 4-10〉 아동 청문권 보장 기준	137

〈표 4-11〉 아동 청문권 미보장 이유	140
〈표 4-12〉 다양한 아동 의사표현 청취 방법	144
〈표 4-13〉 간접적 아동의견 청취 방안	146
〈표 4-14〉 포괄적 아동 청문권 보장 요인	148
〈표 4-15〉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환경적 요인	150
〈표 4-16〉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요인	150
〈표 4-17〉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요인	151
〈표 4-18〉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주체별 역할 적합도	152
〈표 4-19〉 의견 차이 발생 시 문제 해결의 주체	155
〈표 4-20〉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 요인	156
〈표 4-21〉 보호조치 중 아동 청문권 관련 발생 가능한 문제	159
〈표 4-22〉 해외 아동 청문권 지원제도	170
〈표 4-23〉 아동 청문권 보장 시 발생가능한 가치 및 상황 충돌 상황	174
〈표 4-24〉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	178

## 그림목차

〈그림 2-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삼각형 모델	29
〈그림 2-2〉 Hart의 아동참여 사다리 모델	36
〈그림 2-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48
〈그림 2-4〉 욕구조사표	49
〈그림 2-5〉 아동상황 점검표 (분리보호관련)	49
〈그림 2-6〉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	50
〈그림 2-7〉 양육상황 점검표 (아동의 상황)	51
〈그림 2-8〉 개별보호·관리계획서 (피해아동보호계획서)	52
〈그림 2-9〉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52
〈그림 2-10〉 사후관리 동의서 서식	54
〈그림 2-11〉 가족복귀절차의 진행	56
〈그림 2-12〉 사례종결 설문조사	57
〈그림 2-13〉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피해아동 적용)	62
〈그림 2-14〉 응급조치 절차도	63
〈그림 2-15〉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 (피해아동 확인란)	64
〈그림 2-16〉 비밀전학 업무절차	65
〈그림 2-17〉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체계	71
〈그림 2-18〉 2020년 시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현황 (2020.12.31. 기준)	73
〈그림 2-19〉 영국의 공적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조치 과정	82
〈그림 4-1〉 아동 청문권 보장기준	137
〈그림 4-2〉 포괄적 아동 청문권 보장 요인	149
〈그림 4-3〉 아동 청문권 보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 우선순위	155
〈그림 4-4〉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요인	159
〈그림 4-5〉 보호조치 단계별 아동의견 청취의 중요도 높은 순	169
〈그림 4-6〉 해외의 아동 청문권 보장제도의 우선순위	171
〈그림 4-7〉 보호조치 과정 중 의견상충 시 의견 중시에 대한 우선순위	175
〈그림 4-8〉 보호조치 시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의 우선순위	184

# 연구요약

## □ 서론

### ○ 연구의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으로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권의 4가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음. 그 중 참여권은 아동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한계를 뛰어넘어, 아동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충분한 고려를 받음으로써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참여권을 대표하는 권리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제12조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의견 청문권(right to be heard)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듣도록 요구할 권리’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환경에서 청문권 보장은 아동의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인격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남. 특히, 아동의 청문권은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견해 존중을 보장할 것을 권고(아동권리위원회)받았으나 법은 보호조치 시 아동의 의사 존중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고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최근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변화함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데 아동의 청문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업무 매뉴얼에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아동 청문권 고려 시, 아동권리의 다른 원칙과 배치될 때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실천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연구 목적

-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헌 검토 및 실증적 조사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청문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내 최초로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위한 실천 가이드북을 마련함으로써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 □ 문헌고찰

### ○ 아동의 청문권의 이해

#### ■ 아동 청문권의 개념

- 아동 청문권은 의견표명권, 의견청취권, 참여권으로 지칭되거나 참여권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등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협약 제12조에 따라 청문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동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의 의무가 있음을 의미 함.
- 본 연구에서는 협약 제12조의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현 보장’에 관한 권리라는 의미로 ‘청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 아동 청문권의 관련 법과 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법이자 국제사회의 약속임(1989. 11. 20 채택). 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기본권과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 생명·생존과 발달의 원칙,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협약 제12조의 문구 분석

문 구	분 석
보장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음</li> <li>•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을 보장해야 함</li> </ul>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의견 표현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부과하지 않았음을 강조함</li> <li>• 이를 법적으로나 현장에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놀이, 몸짓, 얼굴 표정, 그림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형태 존중</li> <li>→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음.</li> </ul> </li> </ul>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롭게’는 본질적으로 아동의 ‘자신의(own)’ 관점과 관련이 있음</li> <li>• 아동이 조종당하거나 과도한 영향이나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됨</li> </ul>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이해 수준은 생물학적 나이와 균일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음. 아동의 견해는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함.</li> <li>• 성숙도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됨. 문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li> </ul>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의 분리, 양육권, 입양, 법률과 상충되는 아동, 신체적·심리적 폭력, 성적학대 또는 기타 범죄, 보건, 사회보장 등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절차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함</li> <li>• 아동 친화적인 정보 제공 및 전달, 적절한 자기 옹호 지원, 적절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 법정 설계, 판사·변호사의 복장, 별도 대기실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함</li> </ul>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의견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기관을 통하여 청취할 수 있음.</li> <li>• 대리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측면과 아동과 함께 하였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li> </ul>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권의 향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절차적 법률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li> <li>•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인 고려를 위해 교체되거나 회부될 수 있음.</li> </ul>

■ 아동 참여의 기본요건 및 청문권 이행 단계

- UN CRC Committee(2009)는 아동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으로 ① 투명성과 정보제공 ② 자발성 ③ 서로에 대한 존중 ④ 적절성과 관련성 ⑤ 아동 친화적 접근 ⑥ 균등한 기회와 포용성 ⑦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⑧ 안전유지와 위험에 대한 민감성 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였음.

- 아동 청문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5단계(UN CRC Committee, 2009).

단 계		내 용
1	준비(Preparation)	아동은 의견표현의 권리와 그들의 의견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의 선택조건에 대해 알아야 함.
2	청문(The hearing)	맥락이 활성화되고 장려되어야 하며, 비밀이어야 하며 일방적인 조사보다는 대화의 형식을 가져야 함.
3	아동 능력에 대한 사정 (Assessment of the capacity of the child)	사례별 분석을 통해 아동이 자율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때, 아동의 의견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함
4	환류(Feedback)	의사 결정자는 반드시 그 과정의 결과를 아동에게 알리고, 자신의 견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해야 하며, 아동의 반응(불만이나 불평사항 포함)도 고려해야 함.
5	이의, 조정, 구제조치 (Complaints, remedies, redress)	불만 신고 절차 등에 대해 들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모든 아동이 자신의 담당자를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이용하는 아동이 폭력이나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아동 청문권의 중요성

- 아동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발달적 측면: 아동은 참여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며, 사회통합 및 발전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민주체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의사결정: 아동은 자신의 삶, 욕구, 관심사에 대한 지식과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임.
  - 아동보호: 아동의 청문권 실현은 폭력, 학대, 위협, 부당 또는 차별의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도구임.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아동의 노동착취에 대해 아동 스스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임.
  -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관심 있는 문제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동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사결정을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아동의 청문권 실현은 장기적

으로 시민권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 아동 청문권 보장 환경

- 아동 청문권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함. 가정과 보호시설, 의료서비스, 학교 등의 교육환경, 폭력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공공 협의에서도 아동의 견해를 포함해야 함.

## ○ 국내외 아동 청문권 현황

### ■ 아동 청문권 관련 법

-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기본법 등 다수의 법에서 아동 청문권에 대한 이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대부분 간접적인 조항임. 특히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의견존중'이 유일하여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의 아동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외에도 나이 제한의 규정 또한 아동 청문권의 온전한 실현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임. 현재 실정법 다수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문제 삼아 청문권을 제한하나 협약에서는 이 두 요인을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고 참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보충적 요건과 배려의 기준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법 :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할 경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경우, 입양특례법 상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아동의 동의' 명시 / 아동 일시보호조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의 변경 청구 시 '아동의 의사 존중'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지자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해마다 개최 및 청소년의 의견 수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 아동 보호체계와 아동 청문권

### •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원칙

- 협약의 4대 기본원칙에 따라 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②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③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④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⑤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명시함. 특히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전 과정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예외적용 됨.

### •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에서의 아동 청문권 보장

- 1단계(상담·조사·사정) : 아동의 욕구과약을 위해 욕구조사표와 아동상황점검표 활용하여 보호조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함. 이 단계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의 기본권리를 설명하고, 아동이 이해했는지 등의 확인과정을 통해 청문권을 보장할 수 있음.

- 2단계(보호계획 및 결정) :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는 충분히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은 계획서에 기재함으로써 청문권을 보장 할 수 있음.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종료 등의 내용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함. 안전 상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 시 ‘만 12세 이상 아동에 대해 의견 청취 의무화’를 명시하여 연령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12세 미만 아동의 의견청취를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크리스트에도 추가되어야 함.

- 3단계(보호조치) : 보호조치 된 아동의 서비스 이행 및 양육상황, 아동의 욕구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보호조치와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함. 피해 아동보호계획서 작성 시 보호조치 단계에서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는지, 아동은 보호조치에 동의했는지,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에 대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아동에게 확인했는지,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동 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아동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아동 청문권을 보장 할 수 있음.

- 4단계(종결) :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연령이 달하였을 경우 보호종료 여부를 결

정하는데 특히, 원가정 복귀 시 복귀 요건 충족 여부 및 사례결정위원회 대면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함. 종결단계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확인과정이 필요함. ① 종결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동에게 종결이 임박함을 알렸는가? ② 종결계획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③ 종결계획에 대해 아동과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④ 그렇지 못했다면 조정되거나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실제 종결이 이루어졌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마련되었는가? ⑥ 아동이 사례결정 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원하는가? ⑦ 아동에게 행정절차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였는가? ⑧ 아동에게 이의제기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는가?

- 5단계(사후관리) : 종결된 아동의 적응상태를 일정기간 모니터링 해야 함. 사회복지사는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아동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사후관리 동의서 또한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기관과 아동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과정에서의 아동 청문권 보장

- 초기면접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변화나 생각, 아동과 가족이 앞으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둬.

- 사정 : 사정은 ‘가족영역’, ‘개인영역’, ‘안전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됨. 개인영역에서는 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 아동학대행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욕구에 대해 확인하는데 특성은 안전과 관련된 것(학대 의심부터 조사 및 판단결과 후 사례관리 시점까지 변화부분, 안전과 관련된 강점과 자원, 위험요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정함. 분리보호된 경우, 아동의 의사,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 필요한 서비스 등을 확인함.

- 사례관리 계획 수립 :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등 사례관리 대상자의 동의를 우선으로 해야 함. 계획은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가족의 문제와 욕구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함.

- 개입 : 개입은 아동 안전 확보, 아동과 가족의 회복 지원,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 구축이라는 목표에 따른 다양한 직접적·간접적 실천을 수행함. 보호체계 유지, 보호체계 변경, 종결을 위한 재결합 유형에 따라 서비스가 나뉘는데 종결을 위한 재결합(가정복귀) 시 개입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 가정복귀 절차 진행 시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분리보호 된 시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점검 및 종결 : 종결이 결정되면, 3개월 간 종결 전 모니터링 실시하게 되는데, 사례 종결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그러나 설문조사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 사법체계와 아동 청문권

- 협약 제12조 제2항에서 ‘아동에 영향을 주는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대상 범위로 삼고 있음. 또한, 2005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아동범죄 피해자증인 관련 유엔 사법지침’(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은 아동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전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아동은 자신의 관점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하도록 강요되거나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뿐만 아니라, 아동 친화적인 진술환경이 마련되고 아동 진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협약에서는 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청취 시, 나이와 성숙도 고려를 명시하고 있음. 나이가 어리고 성숙도가 낮다고 해서 그들의 의사 표명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됨.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함.
- 아동학대 사건의 아동 청문권
  - 아동학대처벌법 : 응급조치 시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제12조) 등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아동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의견진술(47조), 명령의 취소·변경의 신청(제50조)을 할 수 있음. 특히, 시행령은 ‘피해아동의 의견청취 등’에 대한 별도 조항(령 제5조)을 두고, 피해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령 제5조 2항)하고 있음. 이처럼 여러 법률들을 개관해 보면, 아동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절차(보호처분) 또는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조항이 있지만, 세부지침 등의 결여로 아동 청문권을 어떻게 실

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 부재하고, 결과적으로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아동학대 조사의 업무수행 절차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 사용하는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에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 의사를 표현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이 때 아동이 재학대 우려 등을 이유로 분리보호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어린 나이, 장애아동 등의 경우 스스로 분리보호 요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자는 아동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관찰하여 적극적 판단 및 조치 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응급조치 :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또한 피해아동에게 보호시설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반드시 서면을 통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함.
- 임시조치 : 임시조치로 인해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등, 변호사,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외국의 아동 청문권

〈요약 표〉 국가별 아동 청문권 제도 특징

유형	국가	특 징
사법절차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사건에서 12세 이상의 아동 견해 표현</li> <li>• 아동 견해 확인 및 아동 의견 청취 규정(아동복지법 제20조)</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리분별(discernement)이 가능한 미성년자는 모든 사법적 절차에서 본인의 의견 개진</li> </ul>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변호사를 임명하여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아동이 견해를 표현하도록 함</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과정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적장치인 GAL (Guardian Ad Litem)과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프로그램을 마련함</li> </ul>
	남아프리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과정에서 아동의 나이, 성숙도 및 발달단계, 욕구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함</li> </ul>

유형	국가	특 징
행정절차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조치에서 아동을 당사자로 인정함</li> <li>• 보호조치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연령이 어릴 경우 관찰한 결과를 자기결정권의 표현으로 인정함</li> <li>• 아동보호조치 전후의 모든 단계마다 아동 청문권이 보장됨</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행정적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권을 법적으로 보장함</li> <li>• 아동·청소년을 자율적 권리를 가진 권리행사주체로 인식</li> </ul>
학교 및 지역사회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li> </ul>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학교법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 법제화</li> </ul>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협의회(Children's Councils)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 참여</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cerned for Working Children(CWC)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및 자체계획 수립에 대한 아동의 의견제시</li> <li>• 지역사회 내 어린이 우체통을 구비하여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li> </ul>
기타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의 의사표현 권리 제고 및 아동·청소년이 공적사안에 참여하도록 권한 강화</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아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25개년 국가 틀을 아동과 협력하여 제작함</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법원 절차에서 일어나는 종합적인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하고자 웹사이트 제작</li> </ul>
	우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 및 실무자들을 위한 아동 참여에 대한 안내서 제작</li> <li>• 사회 전체에 아동 청문권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 전달</li> </ul>

## □ 아동 청문권에 관한 종사자 인식: FGI

### ○ FGI 개요

- 일 정: 총 3차 - 1차(2021년 5월 7일), 2차(2021년 6월 29일), 3차(2021년 7월 1일)
- 대 상: 1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2명), 2차(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7명), 3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7명)

- 내 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은 청문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청문권 보장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실천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청문권 보장을 위해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파악함.

## ○ FGI 결과

- 청문권에 대한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특정 서비스의 욕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청문을 이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보호와 아동 의견 청취가 부딪히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무엇이 최선의 실천인가, 아동의 의견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 청문권 보장의 현실: 실무자들은 아동 청문권 보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청문권과 보호권이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이나 청문 역량의 부족,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어려운 업무환경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였음.
-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사례집과 같은 형태로 판단의 기준이 제시되는 것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역량강화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또한 아동이 목소리를 잘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동의 치유와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동의 알 권리 충족, 실무자가 판단하기 이전에 아동 스스로 생각할 충분한 시간과 아동중심의 청문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었음. 더 나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간의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공유됨.

## ○ FGI 합의

- 종사자 역량 강화
  - 아동 권리의 불가분성 원칙에 대한 인식 제고 : 아동 권리는 쪼개서 생각할 수 없고 인권 영역의 중요성에 서열을 매기고 특정 영역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또는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됨. 학대피해아동의 경우에도 안전과 함께 발달을, 안전과 함께 참여를 고려해야 함.

- 아동권리협약 12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 협약 12조는 아동이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아동 의견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은 청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다루어야 할 것임.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와 성인들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청문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 아동보호 서비스 다양화, 업무량 조정, 아동보호 전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각자의 역할과 상호 협력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덧붙여 아동이 잘 말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성숙도에 맞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잘 말할 수 있도록 우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아동 중심의 청문 환경을 마련하는 것 등도 앞으로의 과제임.

## □ 아동 청문권에 대한 전문가 인식: 델파이조사

### ○ 델파이조사 개요

- 일 정: 2021년 6월 15일 ~ 8월 6일  
(1차: 2021년 6월 15일 ~ 6월 23일, 2차: 7월 30일 ~ 8월 6일)
- 대 상: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법 경찰관, 변호사, 유관기관 실무자, 가사조사관, 사회복지학 교수 등
- 내 용: 아동보호조치 시 아동을 만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음. 1차에는 아동 청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보장현황, 보장요인, 개선사항 등을 객관식·주관식으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2차에서는 1차에서 수집된 답변을 기반으로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AHP 문항을 추가하여 진행함.

### ○ 델파이조사 결과

- 쌍대비교(AHP) 문항은 총 8문항이며, 항목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순으로 제시됨.

- ① 아동 청문권의 보장 기준 우선순위: 아동의 인지능력-아동의 안전-아동의 의사표현능력-아동의 정서적 성숙도-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아동의 연령
  - ②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요인 우선순위: 현 상황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초기 라포 형성-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포함-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보호조치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 ③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의 우선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진술조력인-학대전담공무원-보호시설 직원-변호사-미성년후견인
  - ④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 우선순위: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아동 최상의 이익 실현 관점 부족-아동학대 전문가 인력 양성 부족-법적/제도적 장치 부족-실무자의 과도한 업무-인적장치 부족
  - ⑤ 보호조치의 각 단계별 아동의견 청취의 중요도 우선순위: 분리조치-가정복귀-응급조치-신고-보호명령 청구-법적증언-사례종결
  - ⑥ 해외의 아동 청문권 보장제도의 우선순위: 아동대리인-독립점검관-독립방문관
  - ⑦ 보호조치 과정 중 의견상충 시 의견 중시에 대한 우선순위: 아동-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지자체 아동보호팀-비가해 보호자-보호시설 직원-아동 국선 변호사-교사-경찰
  - ⑧ 보호조치 시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 우선순위: 아동 청문권 인식 증대-매뉴얼, 절차, 의무 조항 마련-진술 청취 시 아동상황 우선 고려-아동의 의견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사법인력 대상 교육-사법전문인력 확충-아동에게 법정 진술에 대한 절차 고지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전체적인 델파이 조사 결과의 함의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아동 청문권에 관한 편견과 오해 해소, 궁극적인 아동보호의 시작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 청문권의 사회적 인식 증대를 제안하였음.
  - 또한 아동보호 전문인력 및 예산을 보충하고, 관련 법·지침·매뉴얼 신설, 아동청문 환경마련 등을 통한 아동친화적 청문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이외에도 분리 조치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주요 함의로 나타남.

## □ 결론

- 아동보호서비스 행정절차 상 청문권 향상을 위한 변화 필요
  - 아동보호서비스 행정절차 상 청문권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법 내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아동 청문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청문권을 적용하기 위한 실무지침의 마련 및 제시도 필요함.
  - 아동보호절차 각 단계(상담/조사/사정, 보호계획 및 결정, 보호조치, 종결, 사후관리)에서의 절차상 변화가 필요함. 모든 단계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문서 상 아동 동의 및 서명을 받도록 해야 함. 그 외 아동 발달단계에 맞는 청문방안 마련 및 제시가 필요함.
  - 옴부즈퍼슨의 배치 및 역할 부여도 필요함. 아동을 비롯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옴부즈퍼슨이 담당해야 함. 아동이 자신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아동의 연령, 언어, 장애 등의 상황에 따라 가장 최적의 옴부즈퍼슨을 배치하여 이의제기 및 권리보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동의 이의 및 소명 절차 마련 및 지자체의 역할 부여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사례결정위원회에 아동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장을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 아동보호팀, 사례관리팀 등에서 아동 보호계획 체크리스트에 청문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궁극적으로는 독립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 서비스의 다양화 노력도 필요함. 아동의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아동의 선택지를 확대함으로써 아동 청문권을 보장할 수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 사법절차 상 청문권 향상을 위한 변화 필요
  - 이를 위해 먼저 청문환경 조성을 해야 함. 아동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해야 하며, 적절한 자기 옹호 지원해야하며, 적절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를 배치해야하며, 법정 내의 자리배치를 아동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해야하며, 판사와 변호사의 복장도 위협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동을 위한 별도 대기실을 마련하여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세심한 노력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법조인들을 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법조인들이 사법절차 상에서 아동의 연령별 특성(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을 감안한 언어, 태도 등으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법조인들에 대한 교육훈련 마련이 필요함.
- 아동대리인의 활용이 필요함. 아동대리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측면과 아동과 함께 했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부모)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닌 아동의 이익만을 대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훈련
  - 아동이 분리초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굉장한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경험하게 됨. 그러므로 아동의 의견을 듣는 ‘환경’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상세하게 교육해야 함. 또한 교육 커리큘럼 내에 청문권 인식 및 감수성에 대한 내용, 청문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 구체적 지침 및 사례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실무자 대상 교육훈련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실무자들이 아동 청문권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체화할 수 있어야 함.
- 실무자 업무환경 및 슈퍼비전 체계 개설 필요
  - 실무자들은 과중한 업무환경 속에서 적절한 아동 청문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무자 1인당 적정사례수 배정이 필요함.
  - 시설 내 슈퍼비전 시스템을 명문화해야 하며 슈퍼바이저 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저에 대한 아동 청문권 인식 및 감수성 증진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아동복지서비스 NGO 법인 내 법률지원팀(가칭) 설치
  - 법인 내에 법률지원팀을 마련하여, 법인 내 모든 사업 검토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 청문권 보장의 실무적 차원에서의 법적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요구
  - 아동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동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아동의 욕구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그들과 더불어 협력적으로 일해야 함. 아동 청문권의 기본원칙들을 아동과 가족, 실무자와 법조인 등 관계자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보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으로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인권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권의 4가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 참여권은 아동을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던 한계를 뛰어넘어, 성인과 같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받음으로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장민영, 2019). 이러한 참여권을 대표하는 권리로 청문권(right to be heard)이 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의 청문권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견표명권(right to express opinion)을 넘어 ‘듣도록 요구할 권리’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청문권은 아동을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요소이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아동의 삶 속에 중요한 권리로 부각되고 있다(강미경·곽지영, 2017; 최윤진 외, 2004). 아동의 청문권 실현은 가정, 학교 및 다른 환경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사회적 기술 향상 등의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인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UNICEF, 2011).

협약에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 영역이나 공간,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 청문권은 아동이 성장, 발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능력이 맞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 및 보호시설,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의 모든 생활공간에서 그리고 아동의 양육, 보호, 의료, 교육, 놀이, 사회 등 모든 영역과 활동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청문권은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적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체계의 입양,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과 같은 아동보호조치 상황에 대해 법 조항에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의사 존중’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에는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4항).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조치 등을 행할 때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5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제12조). 또한 피해아동 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14조), 임시조치기간에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때도 판사는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다음으로 사법적 절차에서는 아동이 (학대 혹은 폭력 등과 관련한) 피해자로서 법정에서의 증언과 부모의 이혼절차 과정에서 양육권 관련한 자신의 상거소 결정 등에 관한 의견 제시 과정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도 아동의 청문권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의 특수교육 배치과정,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의견 청취와 함께 의료처치(예: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 권리, 의료적 처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 등)에 관련한 청문권 보장은 점진적으로 아동의 책임감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에 대한 제5·6차 심의 결과에서 아동복지법 상에서 아동 의사 존중을 보장할 것을 권고 받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은 보호조치 시 아동의 의사 존중(15조)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하위 세부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영인(2018)은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 사례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아동보호조치 체계에서 아동 청문권의 불명확하고 불충분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O'Donnell(2009)은

대부분의 국가가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확대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나이제한이 청문권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는 공적 보호조치 시 아동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세부규정이 미비하다. 구체적으로 보호조치를 위해 아동의 개별 보호계획을 세울 때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5조 3항), 아동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또한, 아동보호 계획 및 결정 등의 심의 시 사용되는 사례결정위원회 보고사항 체크리스트에서는 아동 상담 여부를 확인하면서 아동의 의견 청취에 대해 그 대상을 만 12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는 등 청문권 보장을 위한 세부지침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들이 법규상 뿐 아니라 수행 주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조치와 관련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아동의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가정복귀 절차 등을 통해 아동의 의사/견해를 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면서 실무자의 아동권리 감수성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절차상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데 있어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업무매뉴얼 등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9월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사망사건(중앙일보, 2019)의 경우, 시설보호 중인 피해아동 가정복귀 의견서에는 아동의 의사가 ‘아동 상담 시, 친모에 대한 질문에는 망설임 없이 보고 싶어 하고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며, 계부에 대한 질문에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보고 싶다고 표현하며 선물을 사주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임’과 같이 적혀있었다. 이 의견서를 근거로 퇴소를 최종결정하여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아동은 2019년 8월에 집으로 돌아갔으나 계부와 친모의 학대로 26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가정 복귀에 대

해 학대피해아동의 긍정적인 의사표현이 동반되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에 의해 사망함에 따라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 청문권의 고려 시, 아동권리의 다른 원칙(예: 보호권, 발달권)과 배치될 때 아동의 청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실천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헌 검토 및 실증적 조사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청문권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지침을 국내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아동보호과정에서 학대피해아동의 참여 및 적극적 의견청취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동 청문권 관련 문헌 고찰로서 국내 아동 청문권 관련 정책 및 연구,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를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아동보호체계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 아동 청문권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굿네이버스 소속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실무자와의 FGI를 통해 질적인 차원에서의 아동 청문권 인식 및 현장 경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실무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방안(슈퍼비전, 교육 및 훈련 등)과 같은 실천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아동 청문권 관련 분야 관계자(아동복지기관 종사자, 변호사, 가사조사관, 교수 등)를 대상으로 델파이기법과 계층화분석(AHP)을 통해 아동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문헌고찰, FGI, 델파이조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청문권에 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아동 청문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부록으로 아동 청문권 개입 원칙, 활용 기술, 행정/사법 절차별 고려해야할 사항, 피해자의 권리 등의 아동보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천 지침 및 가이드를 마련 및 제시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았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아동 청문권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책자료 분석 등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외 아동 청문권의 제도 및 현황을 정리하였다. 둘째, 굿네이버스 소속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장실무자와 총 3회의 FGI를 통해 현장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1차 FGI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실무경력 최소 1년 이상인

현장실무자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차 FGI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 7명, 3차 FGI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실무자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FGI에서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의 아동 청문 경험 이해, 아동 청문 관련 제도와 과정, 절차 등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해 아동 청문 관련 요인 도출 및 아동 청문권 체계를 유형화할 수 있었다. 셋째, 아동 청문권 관련 분야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2회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에 대한 타당성과 중요성을 점검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방향과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와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2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향후 아동 청문권 연구의 기초자료와 아동보호 현장에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1〉 연구진행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문헌 조사	문헌조사	○	○						
관계자 대상 조사	델파이조사 (2회)				○ (1차)		○ (2차)		
	실무자 FGI 진행 (3회)			○ (1차)	○ (2차)	○ (3차)			
	전문가 자문회의 (2회)				○		○		
결과 보고	중간보고						○		
	보고서 작성							○	○
	최종보고								○



## 제2장 문헌고찰

제1절 아동 청문권의 이해

제2절 국내외 아동 청문권 현황



## 제2장 문헌고찰

### 제1절 아동 청문권의 이해

#### 1. 아동 청문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듣도록 요구할 권리’인 청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청문권은 의견표명권, 의견청취권, 참여권으로 지칭되거나 참여권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분 다루어지는 등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청문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동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의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여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분위기, 제도 등을 마련해주고 아동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 보장’에 관한 권리라는 의미로 ‘청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협약’의 제12조는 아동 의견 존중 조항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특히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5·6차 최종견해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상에서 아동견해 존중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은 보호조치 시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와 같은 아동의 의사 존중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만 언급하였을 뿐, 어떻게 아동의 의견을 듣는지 등의 세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사법소송에서 ‘들을 수 있는 권리’는 입양이나 이혼과 이별, 가족에서의 분리

와 돌봄 이동 등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또한 아동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일 경우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간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하지만, 행정적 절차에서의 의견표현과 달리, 민형사 소송에서의 아동 청문권은 미성년자인 아동을 법정에서 증언, 혹은 의견표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판사 및 변호사, 가사조사관을 포함한 법원 관계자, 아동복지 종사자 등)은 아동이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법률, 규정, 정책 지침 및 실제 절차를 통해 아동의 의견이 적절히 요청되고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의 청문권과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협약 및 국내의 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 청문권 관련 법과 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의 아동 관련법과 정책 및 서비스에 모두 영향을 준다. 이는 국제협약이 국내법의 상위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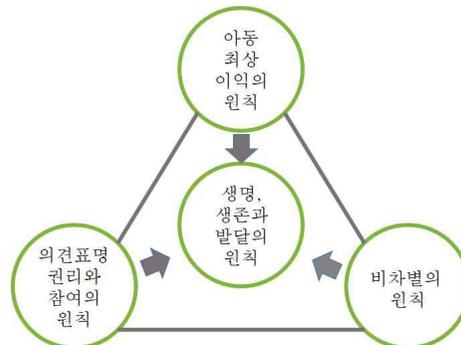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1989년 11

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는 곧 국내 아동 관련법 및 정책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상위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각국은 국가 상황에 따라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크게 4대 기본권과 4가지 주요 원칙으로 아동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총 4가지의 권리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 생명·생존과 발달의 원칙,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 총 4가지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삼각형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삼각형 모델은 아동의 생존·발달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세 개의 축이 반드시 균형적으로 필요하며, 그 세 개의 축은 아동의 의견표명과 참여, 비차별,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으로 설명된다.



<그림 2-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삼각형 모델

자료: 보건복지부(2009) 재인용

### 일반원칙1)

#### ① 비차별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등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제2조). 즉,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 협약에 규정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 굿네이버스(2019b)에서 내용을 발췌하였다.

②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기준은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국내법과 여러 관행을 평가하는데 기초가 된다.

③ 생명, 생존과 발달의 원칙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④ 참여의 원칙

아동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견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준 높은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참여는 아동의 말을 듣고 견해를 의미 있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참여는 성인과 아동 간의 관계에 변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관계를 갖도록 한다. 아동이 가족의 삶에 기여하고,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sup>2)</sup>

**제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 청문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의 견해 존중)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제12조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

2) UN CRC Committee(2009).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당한 비중이 주어지는 아동에 대한 관점을 보장하고 있다. 제2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청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12조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포함한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이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규정하였다(UN CRC Committee, 2009). 여기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제1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원문 표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1항<sup>3)</sup>

#### ① 보장해야 한다 (“Shall assure”)

제12조제1항은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장할 것"은 강한 의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적 용어이며, 이는 당사국의 재량권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국은 모든 아동들에게 이 권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그러한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의 문구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아동이 자체적인 견해를 형성하는 능력에 가능한 최대로 접근해야한다는 의무로 여겨야 한다. 다시 말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없다는 가정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며 그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12조가 아동의 의견 표현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을 부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당사국이 아동의 청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법적으로나 현장에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부터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sup>4)</sup>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12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아동의 놀이, 몸짓,

3) UN CRC Committee(2009).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얼굴 표정, 그림을 포함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를 인식하고 존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령이 어린 아동에 대한 이해와 선택 및 선호를 입증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절히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력이 필요하다. 셋째,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듣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들에게 이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사소통 방식을 갖추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 보청기 등을 통한 의사소통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소수민족, 원주민 및 이주아동 등에 대한 의견 표현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에는 해당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는 이중 언어 전문가 및 통역인의 활용도 포함한다.

③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자유롭게’란 아동이 부담 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아동이 자신의 청문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이 조종당하거나 과도한 영향이나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롭게’는 본질적으로 아동의 ‘자신의(own)’ 관점과 관련이 있다. 즉, 아동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조건과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존중받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이 가해부모 및 비가해부모의 영향력 없이 학대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보호조치 과정에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 조사과정에서 아동에게 유도질문을 한다면 이 또한 아동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기법은 피해야 한다.

④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당사국은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논의 중인 문제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이 기본 조건은 폭넓게 존중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4) Lansdown, G.(2005).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Papers innins05/18, Innocenti Insights.

## ⑤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하거나 그 견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아동에게 전달하기 위해 평가해야 하는 아동의 능력을 말한다. 제12조는 단순히 아동의 말을 듣는 것은 불충분하며, 아동의 견해는 아동이 스스로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에서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비중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연령만으로 아동의 견해의 중요성을 결정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 아동의 이해 수준은 그들의 생물학적 나이와 균일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보, 경험, 환경, 사회적·문화적 기대, 지원수준이 아동의 견해 형성능력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견해는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성숙도는 특정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아동의 개별 역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 제12조의 맥락에서 성숙도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 내려진다. 문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제2항

## 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의 청문권 (The right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제12조제2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조항이 부모와의 분리, 양육권, 입양, 법률과 상충되는 아동, 신체적·심리적 폭력, 성적학대 또는 기타 범죄, 보건, 사회보장 등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절차에 제한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행정절차로는 아동의 교육, 건강, 환경,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결정이 있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의사결정자가 아동의 관점에 대한 고려사항의 범위와 아동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연령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은 효과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 친화적인 정보 제공 및 전달, 적절한 자기 옹호 지원, 적절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 법정의 설계, 판사·변호사의 복장, 별도 대기실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아동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한 후에는 아동의 의견을 들을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청취하는 방법들이 있다. 대리인은 부모, 변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동의 명백한 대리인인 부모의 사이에 이해 상충의 위험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인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는 이해 상충이 극명하게 나타나기에 이 경우 부모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대리인을 통해 아동의 청문권이 실현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아동의 견해를 의사결정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아동 또는 아동의 특정 상황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권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측면과 아동과 함께 하였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은 다른 사람(부모)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닌 아동의 이익만을 대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③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진술할 기회는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은 기본권의 향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절차적 법률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당사국은 공정한 절차의 기본 규칙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인 고려를 위해 교체되거나 회부될 수 있다.

## 2) 아동참여 기본요건

아동의 청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거나 성인의 의도대로 발언하게 하거나 아동의 참여가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발적 행사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UN CRC Committee, 2009).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참여’는 유엔아동

권리협약 제12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기본요건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아동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을 협약 제12호의 이행을 위한 모든 입법 및 기타 조치에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CRC Committee, 2009). <표 2-1>은 이러한 요건들을 9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아동참여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요건**

기본요건	내용
투명성과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참여에 있어 윤리적 실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li> <li>•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와 참여방법, 범위, 목적, 잠재적 영향력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li> <li>• 참여의 목적과 목표는 아동과 합의되어야 한다.</li> </ul>
자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아동이 가지며,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li> </ul>
서로에 대한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생각과 견해는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li> <li>• 아동이 참여를 통해서 아동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li> </ul>
적절성과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참여의 이슈들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아동의 실제 생활과 연관이 있어야 하며, 아동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이용 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li> </ul>
아동친화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반 환경과 방식은 아동의 역량을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한다.</li> <li>• 아동이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li> </ul>
균등한 기회와 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참여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참여의 실행과정 속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li> </ul>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은 아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아동 역량에 대한 이해, 아동과 협력하는 방법, 의사소통 기술 등을 훈련해야 한다.</li> </ul>
안전유지와 위험에 대한 민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은 아동학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li> <li>• 아동 참여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적절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li> </ul>
결과에 대한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참여를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전 과정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li> <li>• 아동은 자신의 참여가 어떠한 영향이나 결과를 가져왔는지 피드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적절한 경우 아동이 후속조치, 평가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자료: 굿네이버스(2019). 이슈포커스 16호, UNICEF 홈페이지(<https://www.unicef.or.kr>)

### 3) 아동참여의 수준

아동 청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는 아동 참여 수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은 아동 참여를 ‘의사결정에의 참여’이며, 아동 참여권의 핵심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에 의사를 표명하고 성인은 이런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는 것(강현아, 2006)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참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동에게 참여를 위한 선택권과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지, 아동의 참여가 의사결정과정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일 수 있다.

Hart(1997)는 아동 참여의 질과 수준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두어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아동의 참된 참여(genuine participation)를 이야기하면서 아동이 참여의 선택권을 소유하고, 참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으며, 추가로 아동의 의사결정 과정이 함께 공유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참여 사다리(A Ladder of Children’s Participation)’ 모델을 통해 아동의 주도권과 개입 정도에 따른 아동 참여수준 8단계를 제시하였다.

8	<b>아동 주도로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b>	아동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거나 영향을 행사하고 성인에게 의사결정을 공유함.
7	<b>아동이 주도하고 감독하는 단계</b>	아동이 주도적으로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성인은 아동의 활동을 관찰하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6	<b>성인 주도로 아동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b>	성인에 의해 활동이 주도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짐
5	<b>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단계</b>	성인에 의해 주로 활동이 운영되지만 아동은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성인에게 조언하고 아동의 의견은 비중 있게 고려됨
4	<b>성인이 지시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b>	성인 주도로 활동이 운영되지만 아동에게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되며, 아동은 참여 방법과 이유에 대한 정보를 알며, 아동의 역할과 그 의미를 알고 있음
3	<b>명목상 단계</b>	아동은 의사소통 주제나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한적으로 주어짐
2	<b>장식 단계</b>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이해가 적고 자신의 의사를 말할 기회없이 장식적으로 동원됨
1	<b>조작 단계</b>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이해없이 성인이 지시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수행함

〈그림 2-2〉 Hart의 아동참여 사다리 모델

자료: 굿네이버스(2019). 이슈포커스 16호.

#### 4) 청문권 이행 절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청문권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또는 공식적인 절차나 환경에서 아동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주어졌을 때 아동의 청문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단계들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UN CRC Committee, 2009). <표 2-2>은 청문권의 이행 절차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청문권 이행 절차**

	단계	내용
1	준비(Preparation)	아동은 의견표현의 권리와 그들의 의견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의 선택과 조건에 대해 알아야 함.
2	청문(The hearing)	맥락이 활성화되고 장려되어야 하며, 비밀이어야 하며 일방적인 조사보다는 대화의 형식을 가져야 함.
3	아동 능력에 대한 사정 (Assessment of the capacity of the child)	사례별 분석을 통해 아동이 자율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때, 아동의 의견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함
4	환류(Feedback)	의사 결정자는 반드시 그 과정의 결과를 아동에게 알리고, 자신의 견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설명해야 하며, 불만을 포함한 아동의 반응(불만이나 불평사항 포함)도 고려해야 함.
5	이의, 조정, 구제 (Complaints, remedies, redress)	불만 신고 절차 등에 대해 들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모든 아동이 자신의 담당자를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이용하는 아동이 폭력이나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자료: UN CRC Committee(2009).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 2. 아동 청문권의 중요성<sup>5)</sup>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아동이 학대 상황과 같은 부정적 사건의 경험을 떠올림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으나, 이러한 위험은 아동보호 조치 및 사법적 조치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동이 의견을 표현할 때 자신의

5) Unicef(2011). Every Child's Right to be Heard. New York: UNICEF.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상황을 재통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아동의 청문권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그리고 제한 없이 표현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발달적 측면

아동 청문권의 실현은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가정이나 학교 및 다른 환경에서 아동의 의견과 경험을 듣는 것은 아동의 자존감, 인지 능력, 사회적 능력 및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아동은 참여 경험을 통해 사회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 등을 익히며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또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정치·사회화과정 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강미경·곽지영, 2017). 이와 같이 아동의 참여는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사회적 입장에서 아동의 목소리와 역량들을 반영·흡수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발전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민주체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최윤진 외, 2004).

### 2) 의사결정

성인이라고 해서 아동을 위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에 입각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통찰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은 자신의 삶, 욕구, 관심사에 대한 지식과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아동들에게 미치는 문제에 관련이 있으므로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알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이 자신의 관점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3) 아동 보호

아동의 청문권 실현은 폭력, 학대, 위협, 부당 또는 차별의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그 상황을 직면해 나갈 것을 거부 당해 왔기 때문에 침묵해 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만약에 아동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면 아동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교도소, 기관 내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아동의 노동착취에 대해 아동 스스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4)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성장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관심 있는 문제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동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과 의사결정을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동이 지역공동체, 비정부기구(NGO), 이사회, 노조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것을 돕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소속감, 연대감, 정의, 책임, 배려,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아동의 참여는 가족 내 의사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아동은 차이를 존중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상생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의 청문권을 실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민권을 키우며 훗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3. 아동 청문권 보장 환경<sup>6)</sup>

아동 청문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이 성장하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과 상황에는 아동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며, 이는 아동이 일상적인 문제나 중대한 결정에 관여하도록 유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청문권은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아동 청문권 실현을 상황별로 정리하였다.

6) UN CRC Committee(2009).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와 한국보건 의료원(2018). 중증 소아 환자의 치료 결정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 <https://hineca.kr/1604> 에서 인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1) 가정 및 보호시설

당사국은 가족 및 보호자들이 아동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그들의 견해가 충분한 비중을 두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과의 상호 존중의 관계, 아동의 견해를 듣고 고려하는 것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보호시설에 배치되는 아동에게는 충분한 정보와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기관을 모니터링하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 및 아동의 직접적인 견해에 대해 들을 수도 있다. 보호시설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이 참여하는 자체회의와 같은 참여방법을 마련하여 시설의 정책 및 규칙을 발전시키거나 보충할 때에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 2) 의료 서비스

아동에게 의료적 치료법과 그 효과 및 결과, 연구 및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정폭력 상황이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부모의 동의 없이 비밀 의료 상담과 조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어린 아이들이 정보에 입각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들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아동이 보건 서비스의 기획과 프로그래밍에 자신들의 견해와 경험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도입해야 한다.

2018년 2월에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절차를 통해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가지 질환(암, 간경변,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에이즈)에 속하는 소아청소년 암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기 또는 임종기에 해당하는지를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판단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때 담당의사는 환자와 친권자에게 이 결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정에 대한 서명은 친권자에게 받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처음으로 법제화하였다는 것과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말기/

임종기 사실과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 10조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반드시 환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나쁜 예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여러 논문과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의 여러 상황들을 파악하고 보호자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환자에게 이득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나쁜 예후에 대해 꼭 알리지 않아도 됨을 권고하고 있다.<sup>7)</sup>

### 3) 교육 및 학교

아동은 학교에서 인권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에 옮기기도 한다. 권위주의, 차별, 무례, 폭력은 아동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정부 관계기관은 아동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급이나 학생회 또는 학교 게시판, 학교 위원회, 독립적인 학생 단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또는 훈육에 대한 결정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학교를 넘어 정부의 관계기관은 교육 정책의 모든 측면에 지역 및 국가 차원으로 아동과 협의해야 한다.

학교 내 학생참여와 관련하여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의 주요과제는 정책 과정에서 아동 참여, 의견표명 수단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생활 속에서 아동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것이다. (가칭)아동청원 플랫폼을 도입하고, 학생회를 법제화시키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에서의 학교 참여를 제도화하여 학교 내에서의 학생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교 내 학생 참여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제1항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예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제2항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

7) Cha, J. M., Kim, H. S., Kwak, M. S., Park, S. H., Park, G. N., Kim, J. S., Kim, J. H., Kim, W. H. (2018). Features of Post-colonoscopy Colorectal Cancer and Survival Times of Patients in Korea.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와 같이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도 참여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인데, 특히 제20조제3항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폭력의 상황

아동보호의 측면에서는 아이들에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신체적 차별, 성학대 등에 대해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방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일반논평에서는 정부기관이 폭력을 다루기 위한 조치와 상담 절차에 대해 아동과 상의할 것을 권장하는데, 이 때 난민 아동이나 가출 청소년 등과 같이 소외된 아동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5) 지역사회

지역사회 또는 국가 차원의 공공 협의는 아동의 견해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아동의 견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은 그들만의 조직을 구성하고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정부와 NGO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아동참여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참여기구이다. 청소년특별회의란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를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등의 자문, 평가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기구이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성북구는 2014년부터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이란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사업 중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청소년 토론회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에 실제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8) 2022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접수(202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20> 에서 인출하였다.

## 제2절 국내외 아동 청문권 현황

### 1. 아동 청문권 관련 법

현재 아동 청문권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기본법 등 다수의 법에서 아동 청문권에 대한 이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간접적인 조항으로, 아동 청문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의견존중’이 유일하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의 아동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위한 방법, 아동의 의견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동 청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 세부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외에도 나이지제한의 규제 또한 아동 청문권의 온전한 실현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실정법 다수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문제 삼아 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 두 요인을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고 참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보충적 요건과 배려의 기준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의 아동 청문권은 성인의 듣기 역할과 성인에게 청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주어짐을 강조하였다(이성옥, 2015).

〈표 2-3〉는 아동 청문권에 대해 국내외의 다양한 법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아동 청문권과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크게 교육, 아동보호조치, 청소년활동의 범위로 나눠서 정리하였는데, 먼저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보장 및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책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보호조치에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할 경우와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경우와 입양특례법에서도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 아동의 동의를 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일시 보호조치 하고자 함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임시조치의 청구, 임시조치로 인해 피해아동의 후견인 임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경우에도 아동의 의견을 들어

야하며,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따라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야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수탁연고자 선정에 있어서도 피해아동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보호조치절차에서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거나 아동의 동의를 구하는 등 아동의 청문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청소년의 참여보장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청소년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하도록 하고, 제12조에서도 청소년 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청문권을 보장하고 있다.

〈표 2-3〉 아동 청문권 관련 법

범위	법		관련조항
교육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제3항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보호 조치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5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제2항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입양특례법	제12조 제4항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	제15조 제5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제3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

범위	법	관련조항	
아동학대 처벌법		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동보호 심판규칙	제59조 제2항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할 수 있다.
		제88조 제2항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구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 연구자 등의 직업, 소득,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구자 등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활동	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제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의 참여 보장</li> <li>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li> <li>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li> <li>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li> <li>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li> <li>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li> </ol>
	제12조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1항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2. 아동보호체계와 아동 청문권

아동복지체계에서 아동 청문권의 보장이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특히 아동이 아동복지체계에 유입되는 원인 가운데 아동학대 및 방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요즘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체계 내에서 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원칙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 유형으로는 원가정보호, 연고자 대리 양육, 가정위탁, 아동보호시설 내 보호,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및 입소, 입양,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원칙은 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② 원가정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③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④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⑤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이다. 특히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원칙에 따라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을 전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아동 청문권에 대한 기본원칙이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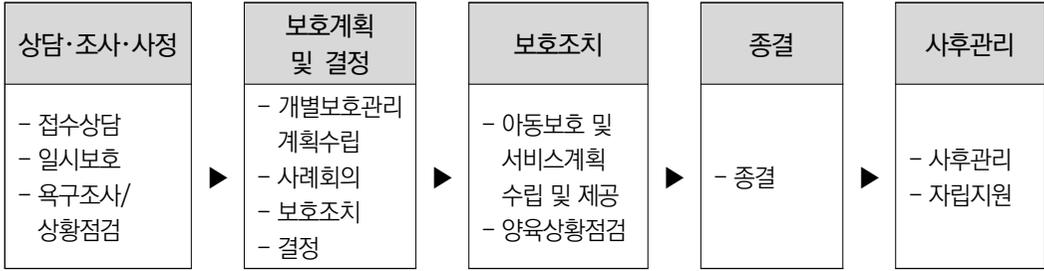
### 2)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sup>9)</sup>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를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사정·조사·사정-보호계획 및 결정-보호조치

9)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종결-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상담·조사·사정으로 최초 방문자를 통해 기초정보 파악 및 상담 결과에 따른 대상자를 접수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주며, 그 과정에서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 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욕구조사를 통해 아동과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 보호서비스 제공 및 방향 등을 사정하게 된다. 2단계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으로 이전 단계의 조사·상담·사정 결과를 통해 보호 조치 유형 및 보호기간, 사례관리 등의 계획을 수립하며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3단계에서는 아동 분리보호 시 관련 보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분리보호 후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4단계에서는 양육상황 점검결과,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보호조치를 종결한다. 5단계는 사후관리로 보호종료 후 아동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기관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 및 관리를 제공한다.

아동보호서비스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의 의견청취를 각 단계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인 상담·조사·사정에서는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판단하기 위해 욕구조사표와 아동상황점검표를 통해 아동의 욕구를 파악한다. 또한 아동에게 상담의 목적,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된 아동의 기본권리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단계인 보호계획 및 결정에서는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만 12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사항이 사례결정위원회 보고사항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3단계인 보호조치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는가, 보호조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가, 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호조치 이후에 양육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아동의 만족도, 욕구 등 아동의 의견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4단계 종결에서는 원가정 복귀에 대한 아동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종결계획에 있어서는 아동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실시를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동의서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2-3〉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1) 1단계 - 상담·조사·사정

상담·조사·사정의 목적은 아동 및 보호자의 의뢰동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에 있다. 읍·면·동 및 타 사례관리의 상담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 받아 보호조치를 의뢰 하되, 필요한 경우 욕구조사 및 아동과 친부모상황 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 때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욕구조사표와 아동상황점검표가 활용된다. 욕구조사표는 총 10개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권익보장)을 조사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해결에 도움이 되는 주변 환경 및 잠재적 자원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아동상황점검표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의료적 욕구, 사회적 욕구, 교육적 욕구와 섭식상태, 충동조절, 발달장애, 학습의욕 등의 취약점을 파악한다. 또한 분리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호조치 될 가능성 여부 및 아동의 보호 희망형태를 파악하고 보호 조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한다. 상담·조사·사정의 단계에서는 ‘아동에게 면담의 목적,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의 기본권리(예: 알권리,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 자신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권리, 비밀보장의 권리, 이의제기 권리 및 절차, 통역인 및 수화 등과 같은 보조인력 및 장비 활용의 권리 등)를 설명하였고, 아동이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주요욕구	우선순위	욕구명	욕구내용
종합의견	요청 서비스 내역		

〈그림 2-4〉 욕구조사표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분리 보호 관련	18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 명함	희망보호유형: (예) 친인척,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19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아니오	불분 명함	만남 주기:

〈그림 2-5〉 아동상황 점검표 (분리보호관련)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2) 2단계 - 보호계획 및 결정

접수상담 및 아동, 부모 상황점검 등을 통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목표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1개월), 장기(1년 이내)의 목표를 설정한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설명내용 등은 계획서에 기재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종료 등에 관련된 내용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한다.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을 상정하게 되는데, 주요항목 중에 ① 아동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가?(만 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② 아동상황점검표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파악되었는가? 등의 아동의 의견청취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체크리스트의 1번 사항에서 만

12세 이상 아동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청문권 보장 조항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있어서는 ‘또한 향후 만 12세 미만의 아동의 의견 파악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실행하였는가?’와 같은 내용이 추가될 필요성이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체크리스트 9번 다음에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그리고 아동에게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는가?’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항목	실행 여부		비고
1. 아동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가? (만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예	아니오	
2. 아동상황점검표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파악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아동상황점검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4. 친부모상황점검표에 따라 보호자의 상황이나 욕구를 충분히 파악했는가?	예	아니오	
5. 친부모상황점검표 이외에 보호자 상황, 가구 여건 등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6.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보호조치 기간 수립 시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7.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시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입양)를 먼저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예	아니오	
8.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는가? 아닌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가?	예	아니오	
9. 아동이 질병, 장애, 학대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내용이 보호계획에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10.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후 사후관리 또는 모니터링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1. 원가정에 대한 자원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2. 아동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예	아니오	

〈그림 2-6〉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3) 3단계 - 보호조치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아동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단계로,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에게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한다. 원가정의 보호기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등 사례관리를 수행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필요 시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지원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서비스 이행상황, 양육상황 및 아동의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서비스 계획의 달성수준, 보호대상아동의 변화정도,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아동의 욕구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욕구 재조사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정 필요 여부 등이 있다. 실제로 이 때 사용하는 양육상황 점검표에는 아동의 만족도를 점검하는 기재란이 있어, 아동 보호조치의 만족여부, 구성원과의 관계, 서비스 만족 등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듣고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동 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아동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아래의 <그림 2-7>가 설명하듯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아동의 욕구를 재조사하고, 보호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계획 및 보호조치 변경 또는 보호 종결을 실시하게 된다. 향후 이러한 개별보호 및 관리계획 양식에 아동의 의견 청취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의 하나로 아동보호 계획에 아동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보호조치 단계에서 ‘보호조치 시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는가?’, ‘아동은 보호조치에 대해 동의하는가?’,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에 대해 아동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아동이 이해했음을 확인하였는가?’, ‘아동이 추가로 제시하는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을 확인함을 통해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아동의 상황 (만족도, 보호조치, 서비스 등)	<아동 보호조치의 만족여부, 구성원과의 관계, 서비스 만족 등 기술>
---------------------------------	--

**<그림 2-7> 양육상황 점검표 (아동의 상황)**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b>욕구 조사 결과</b>	아동의 욕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보호자의 욕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
	관찰된 보호자의 특성:

**<그림 2-8> 개별보호·관리계획서 (피해아동보호계획서)**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점검결과	조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li> <li>• 보호대상 아동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li> <li>• 현행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없거나 아동 부적응 경우</li> </ul>	욕구재조사 보호계획 변경 보호조치 변경 아동학대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의 종류, 양 및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li>•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li> </ul>	서비스 계획 재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li> <li>• 보호자가 문제가 완화되었고, 아동과 결함을 희망하는 경우</li> <li>•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희망할 경우</li> </ul>	종결을 위한 평가

**<그림 2-9>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4) 4단계 - 종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호 연령이 달하였을 경우 보호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학대피해로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2호~4호 근거에 따라 분리 보호한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점검표 및 가정환경조사 등을 바탕으로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례결정위원회

에 보호종결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하게 된다.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가정 복귀 요건 충족 여부 및 사례결정위원회 대면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를 확보해야 한다.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의 경우,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를 확보해야 한다.

종결단계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 종결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동에게 종결이 임박함을 알렸는가?
- 종결계획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 종결계획에 대해 아동과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 그렇지 못했다면 조정되거나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실제 종결이 이루어졌고, 아동이 이에 대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마련되었는가?
- 아동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원하는가?
- 아동에게 행정절차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였는가?
- 아동에게 이의제기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는가?

#### (5) 5단계 - 사후관리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연령 초과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정기간 적응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 때 원가정복귀하기 전에 작성했던 양육계획서 및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를 참고하고, 사후관리 점검표를 활용하여 재점검한다. 사후관리 동의서 서식 중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의무 및 비고를 발췌한 부분은 <그림 2-10>과 같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아동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사후관리 동의서 또한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기관과 아동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아동과 사회복지사의 의무	해당 아동은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아동과 함께 공유해야 하며,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아동은 퇴소 후 자립수준평가(자립상태점검)에 응하고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한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아동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때 아동과 사례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그림 2-10〉 사후관리 동의서 서식**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3) 아동학대사례관리 실천과정<sup>10)</sup>**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학대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안전체계 구축 및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동학대사례관리의 실천과정에서 ① 초기면접, ② 사정, ③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④ 개입, ⑤ 사례점검, ⑥ 종결에서 아동의 청문권이 실현되고 있는지 각 단계마다 살펴보았다.

**(1) 초기면접**

초기면접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상담원이 사례를 연계 받아 학대가 발생한 가정과의 첫 만남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여 첫 만남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참여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중요시 되는 단계이다. 초기면접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의 변화나 생각, 아동과 가족이 앞으로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둔다.

**(2) 사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상담원이

10)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권(아동학대사례관리)』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사례를 연계 받아 학대가 발생한 가정과의 첫 만남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여 첫 만남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사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영역’, ‘개인영역’, ‘안전영역’으로 나뉘지는데 특히 ‘개인영역’에서는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 개별적인 특성 및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정 기록지를 작성할 때, 개인영역에서는 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 아동학대행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욕구에 대해 확인하는데 특성은 안전과 관련된 것(학대 의심부터 시작해서 조사 및 결과 후 사례관리 체계까지 오는 동안 변화한 부분, 안전과 관련된 강점과 자원,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사정한다. 또한 욕구 파악은 바라는 것, 변화하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서비스와 자원을 중심으로 탐색한다. 분리보호된 경우, 아동의 의사,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 필요한 서비스 등을 확인한다.

### (3)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사례관리계획은 안전평가를 포함하여 사정 단계에서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등 사례관리 대상자의 동의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사례관리 계획은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가족의 문제와 욕구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4) 개입

개입은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아동 안전 확보, 아동과 가족의 회복 지원,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 구축이라는 목표에 따른 다양한 직접적·간접적 실천을 수행한다. 유형에 따른 개입 서비스를 보호체계 유지, 보호체계 변경, 종결을 위한 재결합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종결을 위한 재결합(가정복귀) 시 사례관리 개입의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복귀’란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보호 된 피해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 된 경우를 말한다. 가정복귀 절차를 선택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한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확인하여 복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복귀 절차의 진행은 살펴보면 <그림 2-11>과 같다. 먼저 아동 및 보호자 방문 상담을 통해 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단,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분리보호된 시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대한으로 아동의 의

사를 존중해야 하나 아동학대행위자가 가정 복귀 요건에 불충족 하거나, 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절차(2020년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2권 88p) 내용 요약〉**

- ㉠ 아동 및 보호자 가정 복귀 의사 확인 (보호자의 양육계획서, 가정 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 ㉡ 가정 복귀 요건 확인 (해당 사건 법적처분종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중 최근 1년간 재학대 발생 없는 경우)
- ㉢ 양육환경 점검 (아동 및 보호자 심리평가 및 면담을 실시)
- ㉣ 가정 복귀 계획 수립
- ㉤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복귀 프로그램 실시, 가정 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발급
- ㉥ 공공연계 사례회의 실시  
(필수참석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관장 또는 팀장, 담당 상담원, 해당 시설장 등)
- ㉦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및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출
- ㉧ 사례결정위원회 통한 복귀 승인 시 아동귀가조치 실시
- ㉨ 사후관리 실시  
(1주일 이내 가정방문, 이후 1개월 주1회, 3개월간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모니터링)

**〈그림 2-11〉 가족복귀절차의 진행**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5) 사례점검**

점검(monitring)이란 사례관리 목표와 계획에 따라 사례관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가 만족하며 계획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6) 종결**

종결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개입을 통해 나타난 변화를 평가한 후 사례관리자와 아동 및 가족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는 과정이다. 종결의 주요내용 중에서 종결 전 모니터링은 학대위험 사유 감소 등의 종결사유가 발생하고 사례종결 평가회의에서 종결이 결정되면, 3개월 간 종결 전 모니터링 실시하게 된다.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방문상담 1회, 월1회 이상 유선상담을 실시하며 아동학대행위자와 비동거하는 경우에는 월1회 유선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사례관리에 참여한 아동 등이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례종결 설문조사를 통해 사례 종결에 대한 평가,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사례종결 설문조사를 사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담당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1	나는 존중받았다					
2	내가 전화할 때 바로 응답하였다					
3	내가 편한 시간에 약속을 정했다					
4	담당상담원은 약속시간을 지켰다					
5	상담원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6	서비스 내용을 정하는데 나도 참여하였다					
7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았다					
8	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았다					
9	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았다					
10	나는 내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느꼈다					
② 사례관리를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③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④ 사례관리 종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④-1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사례관리 종결시기가 언제가 적당할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종결을 해도 될지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작성자						년    월    일 (인)

### 〈그림 2-12〉 사례종결 설문조사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권(아동학대사례관리)

### 3. 사법체계와 아동 청문권<sup>11)</sup>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제2항에서 “아동에게는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혹은 대표자나 적절한 조직(기관)을 통하여 국내 법률의 절차 규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회(opportunity to be heard)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영향을 주는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대상 범위로 삼는다는 점에서 아동 피해자·증인이 참여하게 되는 형사절차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한 ‘아동범죄 피해자·증인 관련 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은 아동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전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표현은 아동이 자신의 관점을 독자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하도록 강요되거나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동이 진술하는 장소, 참여자의 좌석배치, 아동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시간 제공, 면접자의 의상과 인원, 질문 구성과 방식, 대면방식, 전문가의 참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에게 진술을 요구받았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어떠한 결과가 가능한지, 어떠한 상황에서 진술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법적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들을 때,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객관적인 나이만으로 아동의 진술의 가치나 기회가 결정되는 것, 즉 나이가 어리고 성숙도가 낮은 경우 그들의 의사 표명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아동친화적인 진술 장소와 환경 및 그림, 물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아동이 사법절차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의 청문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청문권 보장의 수준을 다양한 상황별로 살펴보았다.

11) 권순민(2013). 『아동 피해자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형사절차법적 수용과 합리적 이행방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 1) 아동학대사건의 아동 청문권<sup>12)</sup>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학대범죄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이지만, 피해아동의 보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 임시조치기간 동안 후견인 임무를 임시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때에도, 판사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동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아동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제47조), 명령의 취소나 변경의 신청(제50조), 명령의 기간연장청구(제51조) 등을 할 수 있다.

〈표 2-4〉 아동학대처벌법 아동 청문권 관련 조항

법	관련조항
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 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 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2) 장영인(2018).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법	관련조항
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시행령은 ‘피해아동의 의견청취 등’에 대한 별도의 조항(령 제5조)을 두고 있어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령 제5조 1항). 또한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령 제5조 2항).

〈표 2-5〉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아동 청문권 관련 조항

법	관련조항
제5조 (피해아동 등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 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 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피해아동 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증개는 피해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 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 및 관련지침은 아동이 피해당사자인 만큼, 보호절차에서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없을 뿐 아니라, 가정법원이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 절차에서 아동을 당사자로 인정하는 관점은 결여되어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호자의 자발적 의뢰로 보호조치 되는 아동의 청문권은 더욱 간과되고 있다. 보

호대상 아동의 청문권을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법률들을 개관해 보면, 아동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절차(보호처분) 또는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조항이 있지만, 세부지침 등의 결여로 아동 청문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 부재하고, 결과적으로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세원(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495건의 사례를 질적 내용분석 하였는데, 전체 사건 중 판결문에서 아동의 재판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는 단 2건 뿐이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참여는 일방적인 방식에 불과하였고 본인에 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만 전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도 실제 재판에서 피해 아동을 참여시켜 의견을 고려하는 절차는 부족하며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보다는 여전히 아동에 대한 보호중심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아동학대조사의 업무수행 절차<sup>13)</sup>

아동학대조사의 업무수행 절차 중에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할 시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를 통해 피해아동의 욕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절차에서도 아동의 의견 존중 및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제도에서 아동의 의사확인이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아동학대조사의 업무수행 절차에서도 아동의 청문권이 보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다음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 (1) 피해아동보호계획 업무수행 -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

피해아동보호계획이란, 아동학대조사내용 및 사례판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여부, 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전반적인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치, 아동학대행위자의 사건처리 또는 개입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아동학대위험도 평가척도(피해아동 적용)의 평가문항을 살펴보면 <그림 2-13>과 같다. 피해아동의 욕구 및 특성에 대한 평가문항 중 <문항 6>은 아

13)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아동학대조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아동이 학대 재발우려 등을 이유로 분리보호를 원하는지 또는 어린 나이, 장애아동 등의 경우 스스로 분리보호 요구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사자는 아동의 비언어적 메시지(경직, 눈치 등)를 관찰하여 적극적 판단 및 조치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요인	평가문항		점수	
학대 심각성 및 지속성	1	아동에게 신체 외부 손상이 관찰되거나 신체 내부의 손상 혹은 정서적 피해가 의심된다.	아니오 (0)	예 (1)
	2	아동의 주거 환경에 아동의 건강이나 안정상의 위험요소가 있다. (예: 깨진 유리나 술병, 낙상 위험이 있는 가옥 구조, 보호자 없이 아동 방치, 노숙 등)	아니오 (0)	예 (1)
	3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2회 이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아니오 (0)	예 (1)
	4	방임을 포함한 학대로 초래된 발육부진이나 영양실조, 혹은 비위생 상태가 관찰된다.	아니오 (0)	예 (1)
피해아동의 욕구 및 특성	5	아동이 학대행위자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표현한다.	아니오 (0)	예 (1)
	6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한다.	아니오 (0)	예 (1)
	7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하다.	아니오 (0)	예 (1)
생활환경	8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비학대행위자)가 없다.	아니오 (0)	예 (1)
	9	학대행위자가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에게 접근할 여지가 많다.	아니오 (0)	예 (1)
〈적용기준〉			총점	
* 총점이 4점 이상일 경우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등 조치 고려			(      /9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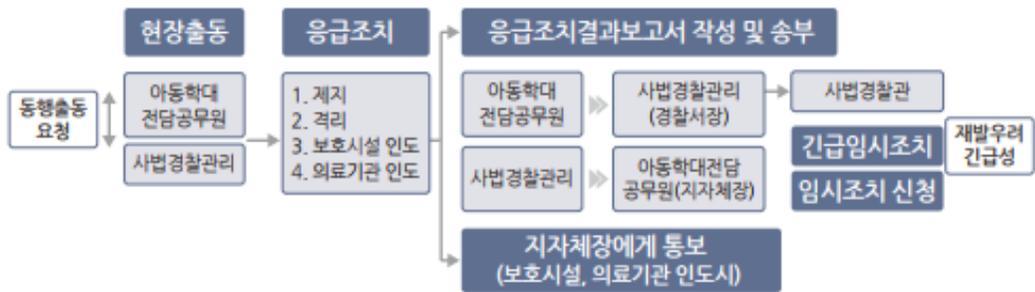
**〈그림 2-13〉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피해아동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아동학대조사)

**(2) 응급조치**

응급조치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피해아

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즉시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피해아동 등을 보호시설·의료기관으로 인도)를 의미한다.



〈그림 2-14〉 응급조치 절차도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아동학대조사)

응급조치의 유형으로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 학대행위를 가하고 있는 경우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를 72시간 동안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격리조치가 있다. 그 외에 아동학대행위자 외 피해아동 등을 보호해줄 성인이 없거나 피해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조치가 있다.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 시 주의사항은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아동 등의 보호시설 인도에 있어서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 등에게 보호시설의 종류(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와 특징,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일반 등 보호시설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반드시 서면(〈그림 2-15〉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을 통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위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피해아동은 안전을 위해 분리보호 되었습니다. 분리보호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 관한 사실은 피해아동의 연령, 장애유무, 언어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치자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설명 내용은 녹음되었습니다.	
피해아동 확인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 및 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분리보호에 동의합니다.
	피해아동 (서명 또는 인)

**<그림 2-15>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 (피해아동 확인란)**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아동학대조사)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조사내용 및 아동학대 판단척도를 통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대상아동에게 응급조치의 종류나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대상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며 서면으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피해아동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단,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증개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임시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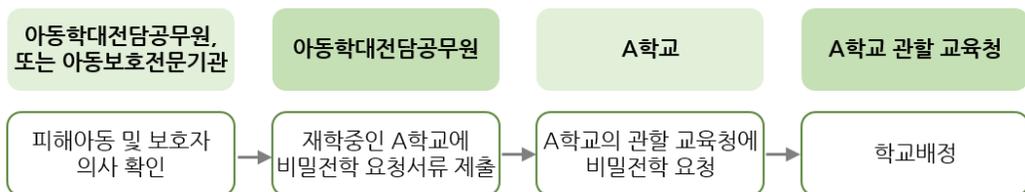
임시조치와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는 모두 피해아동 등의 보호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응급조치에 한정)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 일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다. 임시조치는 필요적 임시조치와 임의적 임시조치로 나뉘지는데, 먼저 필요적 임시조치란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1호 조치 제외) 또는 긴급임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법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필요적으로 받기 위하여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임의적 임시조치란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절차 중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함에 따라 아동의 청문권이 보장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판사는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 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4)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응급 및 일시보호 중 피해아동의 취학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으로는 학대피해아동이 취학아동이나 보호체계 변경(시설입소 등)을 이유로 현재 학적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학적처리(출석인정)와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교환학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비밀전학이라는 취학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아동이 안전유지 등을 이유로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피해아동의 전학 관련하여 취학업무 관계자 외에 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전학조치 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밀전학 결정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비밀전학 의사를 확인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 알려야 한다. 만약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인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피해아동이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보호자 1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나 비가해 보호자가 있는 경우 협조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 시·도 또는 시·군·구 교육지원청마다 비밀전학의 처리 주체,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절차 확인 후 진행필요

\*비밀전학처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처리된 상황에 대해 인지하여 개입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그림 2-16〉 비밀전학 업무절차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아동학대조사)

### 3) 위기청소년의 청문권<sup>14)</sup>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4). 이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은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지원을 행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의2). 이와 같은 청소년 본인의 동의 규정은 지원을 제공할 때에도 청소년의 의사를 중요한 결정요소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2-6〉 위기청소년의 청문권 관련 조항

법	관련조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li> <li>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li> </ol>

### 4. 아동 청문권 관련 연구 동향

아동인권의 4대 인권 중 하나로 청문권이 소개되고 있으나 아동 청문권 자체를 다룬 국내연구는 부족한 실상이다. 〈표 2-7〉는 국내에서 진행된 아동 청문권 관련 연구의 목록을 정리한 것인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문권을 참여권으로 지칭하거나 참여권의 하나로 소개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었던 청문권 연구는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아동 청문권에 대하여 연령대별, 교육/보호/활동 등 각 부문별,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삶의 다양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보호조치과정에서 아동

14) 장영인(2018).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의 의견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표 2-7〉 아동 청문권 관련 연구 - 국내

	논문제목	저자	학술지명	발행연도
1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장영인	사회복지법제연구	2018
2	아동권리협약상 학생의 의견청문권 실현을 위한 교육법제 개선방안	장민영	대한교육법학회	2019
3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고를 위한 교육법제 개선방안: 학생의 의견청문권을 중심으로	장민영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9
4	아동 참여권의 재해석과 영유아보육현장 적용	이성옥,이순형	한국인간발달학회	2015
5	우리나라 영유아 인권 논의의 과제	허종렬	법과인권교육연구	2017
6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참여권 인식과 참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함민아,강현아	아동과 권리	2012
7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와 적응과의 관계	김젤나,이재연	아동과 권리	2007
8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참여권 행사의 매개효과	채은영,이재연	아동과 권리	2016
9	아동참여권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분석	김진숙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17
10	아동참여권 실현을 위한 노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을 기반으로	정병수	한국어린이재단 (동광)	2016
11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중심으로	강미경,곽지영	법과인권교육연구	2017
12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홍승애	인권복지연구	2010
13	영유아의 참여권에 관한 고찰	김진숙	방과후아동지도연구	2014
14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의 신장방안	이용교	아동과 권리	2004
15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정에서의 참여권 실현 정도: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김한진	한국교육	2002

	논문제목	저자	학술지명	발행연도
16	참여권 확보를 위한 아동투표권에 대한 소고	정익중	한국어린이재단 (동광)	2016
17	모래상자치료를 적용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참여권 증진에 관한 연구	김경희,이선희	모래상자치료연구	2017
18	아동·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의 현황과 발전과제	김윤나	법과인권교육연구	2011
19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김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20	유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써 기록화의 가능성	강진주,고은경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2018
21	유아용 참여권 인식척도 개발 연구	홍순옥,정은주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
22	유아 참여권 실현을 위한 교사의 지원방법	정서연,윤재희	유아교육연구	2021
23	토의활동 중심 유아참여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나정숙,김경숙	어린이미디어연구	2020
24	청소년 참여권 연령에 대한 부모-교사-청소년간 인식차이 연구	김윤나	민주주의와 인권	2010
25	청소년 보호권 및 참여권 연령기준 인식차이에 따른 인권교육 방향	김윤나	법과인권교육연구	2013
26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영준	사회과학논총	2016

아동 청문권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의 목록을 <표 2-8>에 정리하였다.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 청문권에 대한 공식단계나 기본 요건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한 정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아동 청문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으나 그동안 아동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못한 현실과 실제 아동 청문권 실시 상황에서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되었던 연구와 유사한 점으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문권(Children's right to be heard)을 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으로 지칭하거나, 참여권 연구에서 아동의 청문권에 대해 일부 다루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다.

〈표 2-8〉 아동 청문권 관련 연구 - 해외

	논문제목	저자	학술지명	발행연도
1	Children's Right to Be Heard: What Children Think	Bosisio, 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2012
2	Children, Autonomy and the Courts: Beyond the Right to be Heard, by Aoife Daly	Cave, Emma	Human rights quarterly	2018
3	Implementing children's right to be heard: Local attenuations of a global commitment	Beier, J. Marshall	Journal of Human Rights	2019
4	A child's right to be heard : Weaving children's voices into meaningful outdoor experiences	Warden, C.	Every Child	2010
5	Children's Right to Be Heard: Learning from Children about Their Perspectives on Play	Nicholson, J., Shimpi, P.M., Carducci, C.	EXCHANGE -EXCHANGE PRESS-	2012
6	CHILDREN'S VOICES: HOW DO WE ADDRESS THEIR RIGHT TO BE HEARD?	Catts, R., Allan, J., Smyth, G.	SCOTTISH EDUCATIONAL REVIEW	2007

## 5. 아동 청문권 관련 사업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 청문권 관련 사업 및 활동은 아동 관련 NGO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굿네이버스, 국제 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의 아동 관련 민간 단체에서는 아동 조직화, 상시적인 아동권리 관련 이슈 모니터링 및 제안 활동, 포럼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아동의 의견이 중요하게 청취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아동의 참여 또는 의결을 위한 기구를 운영하거나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을 〈표 2-9〉에 정리하였는데, 아동 청문권 실현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9〉 아동 청문권 관련 사업

구분	제목명	주최기관
아동	대한민국 아동총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참여위원회 / 아동의원	각 지자체
청소년	청소년 참여포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 1) 대한민국 아동총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아동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이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및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아동 참여의 장이다. 이는 ‘아동이 본인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이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함께 열게 되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참여하는 아동대표는 만 10세~17세로 구성되었으며, 아동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그 토론결과는 결의문으로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된다. 정부에 전달된 결의문은 아동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아동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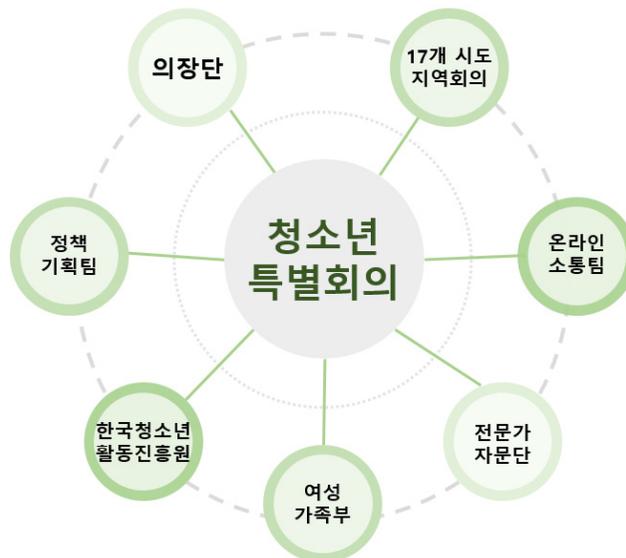
### 2)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참여기구이다. 지자체마다 아동참여위원회로 활동할 아동을 선출하고, 주로 아동관련 정책수립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정책제안,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아동친화도시 관련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sup>16)</sup>

15)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에서 발췌하였다.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89&cntntsId=1107>)  
16) 용인시 아동시청 사이트에서 발췌하였다.  
([https://www.yongin.go.kr/home/child/c\\_friendly/friendly02\\_02.jsp](https://www.yongin.go.kr/home/child/c_friendly/friendly02_02.jsp))

### 3)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음에 그 추진배경이 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일환으로서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해야 할 국가의 추상적인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설정 및 추진을 점검하고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7)</sup>



〈그림 2-17〉 청소년특별회의의 추진체계

자료: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17)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에서 발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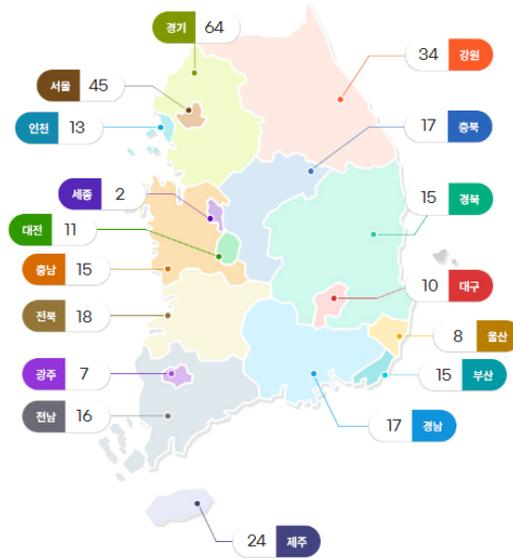
#### 4) 청소년운영위원회<sup>18)</sup>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 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에 두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도 청소년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그 구성·운영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임기, 위원장 선출방법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1999년부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업 운영비 지원에 따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2020년 기준 전국 331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들의 청소년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시설 및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 수행이 있다.

---

18)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에서 발췌하였다.



〈그림 2-18〉 2020년 시도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현황 (2020.12.31. 기준)

자료: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 5) 청소년참여위원회<sup>19)</sup>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두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인원구성(20명 내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으로 선발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 활동으로 지역 청소년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내 정책제안 활동을 하며 지역 내 청소년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의견도 수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33개의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19)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에서 발췌하였다.

## 6) 청소년참여포털<sup>20)</sup>

청소년 참여포털은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참가신청 게시판을 통해 청소년이 참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제안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과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투표게시판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은 누구든지 참여포털에 접속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이유, 현황 및 문제점, 정책제안, 기대효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글로 작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에 50개의 공감미달이 되면, 청소년특별회의에서 해당 정책을 검토 및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영된 정책은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로 제안되어 정부부처에 전달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각 지자체, 아동 NGO 등에서 아동 청문권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 청문권은 대부분 아동들에게 여전히 모호하며 심지어 아동 청문권 관련 사업이 시행되는 곳에서도 아동의 삶 속에 제한된 측면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단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UNICEF, 2011). 각 지자체, 아동 NGO에서 아동 참여권과 관련하여 아동을 포함하여 총회, 모니터링,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각 아동·청소년의회,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경우는 현행 법령보다 아동의 참여권 및 청문권의 보장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협약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적절한 통합 매뉴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위 행사들은 해당 시기 아동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아동 보호조치 시의 아동 청문권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외국의 아동 청문권

여기서는 우리나라 아동 청문권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일본, 덴마크, 탄자니아, 인도

20)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에서 발췌하였다.

등 각국의 아동 청문권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사법절차 내에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는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특히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영국, 일본, 미국을 통해 보호조치 단계마다 어떻게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 아동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의 의견제시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덴마크, 탄자니아, 인도 외에도 아동 청문권 실현을 위해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가이드를 제작한 캐나다, 우간다, 필리핀을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법절차 내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

### (1) 핀란드<sup>21)</sup>

1990년 핀란드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의 청문권을 확대시켰고, 시설 입소 또는 위탁 가정 지정에 반대할 권리에 관한 최소 연령은 15세에서 12세로 낮추었다. 이에 핀란드 아동복지법 제20조에서는 아동의 견해 확인 및 아동의 의견 청취 규정을 두어 12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아동복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은 아동복지사건에 있어서 12세 이상의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청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외에도 핀란드 아동복지법 제86조는 아동이 법원에 출석하여 청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12세 이상의 아동이 자신에 관한 아동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항소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즉, 핀란드 아동복지법은 12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일정 부분 성인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는 아동이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아동이 직접 행정법원이나 최고행정법원에 출석하여 청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정법원이나 최고행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법률 고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지식이 부족한 아동들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1) 김태환(2019). 『핀란드의 아동복지 법제에 관한 고찰』에서 발췌하였다.

〈표 2-10〉 핀란드 아동복지법 세부내용

법	관련조항
제20조제1항	아동복지를 제공할 때 아동이 희망하는 바와 견해가 확인되어야 하며, 아동의 나이와 발달 수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20조제2항	12세 이상 아동은 행정절차법(434/2003) 제34조에 따라 아동복지사건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20조제3항	아동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또는 그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제4항	아동의 견해를 확인하고 아동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아동의 다른 중요한 사적인 이익에 위배되는 어떠한 정보도 아동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제21조	아동의 후견인 또는 그 밖의 법적 대리인 이외에, 12세 이상의 아동은 그 아동에 관한 아동복지 사건에서 청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6조제1항	아동이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아동은 행정법원이나 최고행정법원에 출석해서 직접 들을 수 있다.
제86조제2항	아동을 보호하거나 아동의 독립적인 견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과 해당 아동만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들을 수 있다.

## (2) 프랑스<sup>22)</sup>

프랑스는 1990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93년 1월 8일 민법 제 388-1조를 신설하여 아동의 의견개진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민법 제 388-1조는 사리분별(discernement)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과 관련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서 판사 또는 판사가 지명한 자에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 본인이 선택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6년 12월 28일, 프랑스는 기존의 의견개진권 절차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였다.

부부의 이혼을 비롯한 별거 시에 작성되는 부모의 친권행사를 비롯한 교육 및 양육비와 관련한 협약서에는 미성년자에게 의견 개진권이 고지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88-1조 제4항). 또한, 만약 해당 미성년자가 의견을 개진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또한 동 협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388-1조 제4항). 그리고 2016년 3월 14일 법을 통해 완전입양(adoption plénière)의 경우 판별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원 또는 법원에서 지명한 자에게 본인의 의견을 개

22) 안문희(2019). 『프랑스와 한국의 아동보호에 관한 비교법 연구』에서 발췌하였다.

진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이나 성숙도에 적합한 방식으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민법 제353조 제2항).

〈표 2-11〉 프랑스 민법 세부내용

법	관련조항
제388-1조	<p>① 그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사리분별이 가능한 미성년자는 법관에게 진술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요구되는 때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법관에 의해 지정된 사람에게 진술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개입이나 동의를 정하고 있는 조항들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p> <p>② 이 청문은 미성년자가 이를 요청할 경우에 당연히 개시된다. 미성년자가 청문을 거부할 경우, 법관은 이 거부의 정당성을 평가한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변호사 또는 그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청문에 응할 수 있다. 이 선택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경우, 법관은 다른 사람으로 지명할 수 있다.</p> <p>③ 미성년자의 청문이 그에게 소송상 당사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p> <p>④ 법관은 미성년자가 진술할 권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p>
제353조	<p>① 입양은, 양친이 될 사람의 청구에 기하여 지방법원이 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정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입양이 아동의 이익에 합치하는지를 심리하여 신고한다.</p>
	<p>② 사리분별이 가능한 미성년자는 법원(tribunal)이, 또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요구되는 때에는 법원이 지명한 자가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 의견청취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성숙도에 적합한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미성년자가 의견개진을 거부하는 때에는 판사(juge)는 그 거부가 정당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또는 미성년자가 선택한 사람이나 변호사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선택이 미성년자의 이익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판사는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p>

### (3) 뉴질랜드<sup>23)</sup>

뉴질랜드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아동에 대한 분쟁을 가려낼 때, 판사는 아동을 위해 독립 변호사를 임명한다. 이를 아동 변호사(Lawyer for the child)라고 지칭하며, 뉴질랜드 아동 변호사 행동 강령<sup>24)</sup>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청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② 아동은 자신의 견

23) Unicef. (2011). Every Child's Right to be Heard. New York: UNICEF.

24) Extract from: 'Practice note - Lawyer for the Child: Code of Conduct', Family Court of New Zealand, <http://www.justice.govt.nz/courts/family-court/practice-and-procedure/practice-notes/practice-note-lawyer-for-child>

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서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④ 변호사가 아동의 복지와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아동은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신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⑤ 아동은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변호사로부터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아동 변호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변호사는 아동에게 독립적인 대표 및 조언을 제공한다. ②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견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 아동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아동의 복지 및 최선의 이익과 관련된 아동의 견해와 정보 간에 상충되는 경우, 변호사는 아동과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 (4) 미국

미국은 소송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대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Guardian Ad Litem(GAL)<sup>25)</sup>로 소송 진행 중에 미성년자의 최우선의 이익을 위해 법원에서 임명한 변호사이다. 법원에서 판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면접교섭, 주거 준비 등의 문제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GAL을 지정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은 스스로 법정에서 출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GAL이 ‘법원의 눈과 귀’가 되어 준다. GAL은 아동이 각 부모가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각 부모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학교 관계자, 다른 친척 등 아동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등 공식적인 연락책 역할을 한다. GAL의 의무로는 아동의 현재 생활, 관계, 일과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GAL은 아동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법원에 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대해 보고한다. 이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법원에 권고한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 법원임명 특별옹호자) 프로그램은<sup>26)</sup>

25) 'What's the Role of a Guardian Ad Litem in a New York Divorce Case?', MandellLawFirm, <https://www.mandellawfirm.com/whats-the-role-of-a-guardian-ad-litem-in-a-new-york-divorce-case/>

26) 박성혜(2018). 『한국에서의 미국 CASA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 미국과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발췌하였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훈련 받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판사에 의해 임명되어 소송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임명되고, 그들은 각각의 사건이 종결되고 아이가 안전하고 영구적인 집에 있을 때까지 함께 지낸다. CASA 프로그램은 법원이 아동 친화적으로 모범이 되어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박명숙 외, 2019).

CASA는 아동의 최고의 관심사에 대한 더 좋은 옹호를 지원하는 것, 법정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적절한 거주지를 찾아서 배치해 주는 것,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성취감, 미래를 향한 낙관적인 태도, 사회적 기술, 지역 자원과 같은 보호요인을 개발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뉴욕 주에서는 가정위탁제도 관련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위탁 가정 배치 전과 배치 중에 아동과 법원의 변호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아동의 연령별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 ① 10세 미만의 아동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청문회(permanency hearings)에 참여할 수 있다. 아동이 청문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아동의 변호사는 참여를 수락하는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특정 아동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② 10~13세 아동

이 연령대의 청문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동은 참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참여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수단을 이용한 참여 또는 법원에 서면 진술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10~13세까지의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아동의 직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아동의 참여권을 고려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
- 청문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 청문회 참여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
-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 발달수준

법원이 아동의 직접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대체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청문회를 두 부분으로 분할
- 아동이 사용가능한 전화 또는 기타 전자수단을 활용하여 청문회에 참여하도록 허용
- 법원에 대한 아동의 서면 진술서 발급

### ③ 14세 이상 아동

아동은 자신이 참여하기로 선택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은 참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직접 참여, 전화 또는 기타 전자수단으로 참여하거나 법원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14세 또는 다음 청문회 전에 14세가 되는 아동에 대해 법원은 청문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그 순서에 따라 아동을 위해 개발된 계획과 개정안이 아동과의 상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아동의 선택에 따라 양부모 또는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가 아닌 최대 2명의 개인이 포함되어야 한다(OCFS, 2019).

## (5) 남아프리카 공화국<sup>27)</sup>

200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동법에 아동들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을 소개하였으며, 법정 소송에 관여할 때 법원이 아동의 나이, 성숙도 및 발달단계, 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하여 소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아동법 제61조).

27) Unicef(2011). Every Child's Right to be Heard. New York: UNICEF.

〈표 2-12〉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동법 세부내용

법	관련조항
제14조	모든 아동은 해당 사안이 법원의 관할에 속할 경우,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제기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1조	(1) 아동법원의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법원이 아동의 나이, 성숙도 및 발달 단계, 그리고 아이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욕구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관여한 어린이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견해와 선호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b) 법원이 어린이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거나 문제에 대한 견해나 선호도를 표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기록한다. (c) 법원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질문이나 반대 심사에 개입한다.

## 2) 행정절차

### (1) 영국<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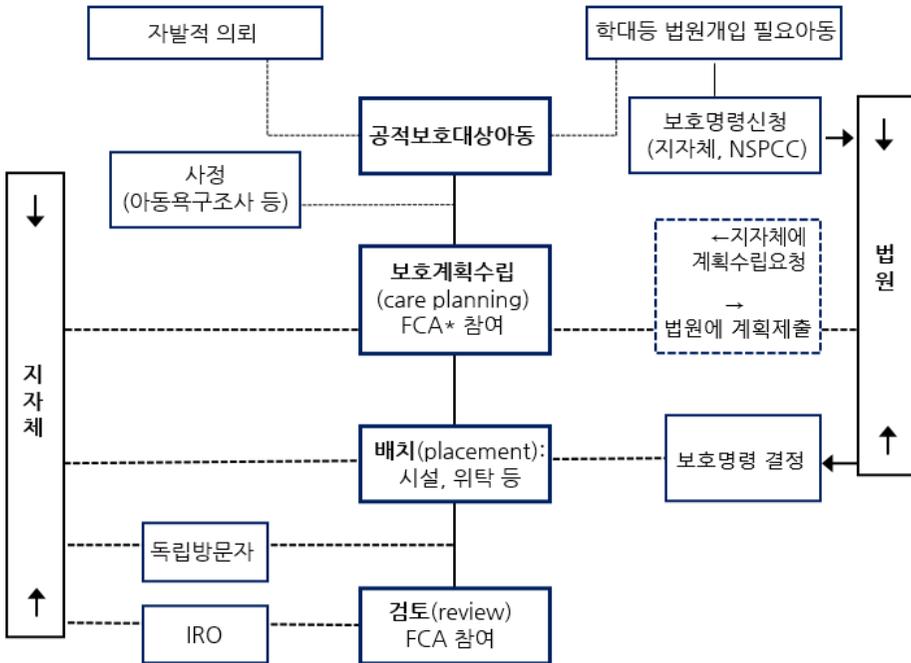
영국의 아동보호와 양육에 관련된 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1989년에 입법화 되고 1991년 10월 14일 효력을 발생한 영국 아동법(The Children Act)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보호, 요보호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관련법을 한 곳에 모은 법이다. 1989년 아동법은 법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고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아동보호조치는 ‘아동중심의 관점’에 기반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의견 표명 이해력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연령이 어린 아동이거나 이해력이 낮은 경우 그의 욕구와 감정, 견해를 듣고 관찰한 결과를 아동의 자기결정권의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 청문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 특히 아동의 바람과 감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고려할 것을 지자체에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공적보호 아동에 대한 지자

28) 장영인(2018).『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내용 일부를 발췌하였다.

체의 일반적 의무는 법 제22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22조 제3항은 ‘지자체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에 대하여 (a) 그 복리를 지키고 촉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b) 지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이는 서비스 즉,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돌보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2조 제4항은 공적보호아동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서 아동의 바람과 감정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그들이 돌보는 아동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한, (a) 아동, (b) 그 부모, (c) 친부모는 아니지만 부모책임을 가진 자, (d) 지자체가 해당 사안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의 바람(wish)과 감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22조 제5항 (a)는 지자체가 그러한 결정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한 아동의 바람과 감정에 대하여 그 연령과 이해도를 유념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아동 보호조치 전후의 모든 단계마다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구체적 단계 및 내용은 다음의 <그림 2-19>과 같다.



<그림 2-19> 영국의 공적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조치 과정

자료: 장영인(2018).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157p)

## ① 보호조치의 준비단계 : 보호계획의 수립(care planning)과 아동 청문권

정부지침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HM Government, 2015)은 ‘효과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은 아동 중심적이며, 보호시스템의 실패는 아동의 욕구 및 견해를 간과하거나 성인의 이해를 우선시한 결과(para.20)’이며, ‘아동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동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아동의 욕구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할 때 그들과 협력적으로 일해야 한다(para.22)’고 아동 청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보호계획 수립에서부터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인적 장치를 두고 있다. 법 제41조는 보호명령의 신청 또는 해제(discharge)의 경우, 법원이 아동대리인(representative)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보호명령 등을 신청할 때나 명령 이후 법원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에 아동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독립된 지위를 가진 Children and Family Court Advisory and Support Service(CAFCASS: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법원 자문 및 지원서비스)가 아동의 편에 서서 아동 및 여러 이해관계인을 면담하고 아동의 욕구와 감정을 확인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동후견인은 배치 이후의 점검절차에서도 아동의 편에 서서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만약 아동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할 역량이 있고 그의 의견과 아동후견인의 의견이 다르다면 아동은 스스로 변호사(solicitor)를 선임하여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K Holt, 2014). 이런 인적 장치를 통해 아동의 견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 ② 보호조치의 개시 : 법원명령과 아동의 배치(placement)

규정(2010:제9조 제1항)은 지자체가 아동의 배치에 앞서, 배치계획(placement plan)을 수립해야 하며, 아동의 바람과 감정을 확인하고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배치 이후에도 지자체는 배치된 아동에 대한 방문 및 면접을 보장해야 하는데, 법 제 23ZA조는 아동에게 조언과 지원을 해줄 대리인(representative)의 방문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인 규정2010(제5부)는 방문시기와 기간(예컨대, 배치된 지 1주일 이내에 첫 방문을 시작으로 최소 6주에 한번 씩 방문할 것을 권고)(규정2010:제28조), 그리고 매 방문 시 대리인이 아동과 단둘이 대화할 것(규정2010:제29조)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세부지침(지침2: 3.243)은 아동이 의사소

통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바람과 감정표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 인력의 활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보호조치의 검토(review)

점검 업무는 원래 사회복지사가 수행하였으나, 이들이 지자체로 하여금 보호계획을 따르도록 개입할 권한이 부족하여 좌절을 경험하면서, 외부검토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보호계획 검토를 위한 IRO(independent reviewing officer)의 지명을 지자체에 요구하게 되었다(Ball, 2014). 그 명칭에서 시사하듯이 이들은 아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IRO의 활동은 지자체의 조치가 아동의 관점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피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아동은 보호대상일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행사의 주체로 간주된다. 예컨대, IRO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아동의 바람과 감정을 지자체가 충분히 고려하게끔 하는 것’(법 제25B조 제1항(c))이며, 이들은 2가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의 현재의 바람과 감정이 확립되고 또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만 한다(IRO지침:2.12).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는 주체는 성인이지만, 권리 소유자인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은 IRO 아동용 가이드북(DfE, 2011)을 통해, 왜 아동자신이 IRO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특히 지자체로부터 ‘독립적인(independent)’ 것이 왜 필요하며, 이것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IRO와 관련된 법과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IRO지침은 마치 법과 같아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IRO가 아동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다.

## (2) 일본<sup>29)</sup>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1947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법적 변화로는 1997년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권리규정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이전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적 권리주체로 인식하여 아동상담소가 시설입소 등의 조치를 취할

29) 김미숙(2013). 『아동·청소년의 권리옹호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였다.

경우, 사전에 부모의 의견을 듣고 부모가 해당조치에 반대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승인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권은 보장되지 않았다(才村純, 2013). 그러나 1997년의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아동상담소가 입소 조치를 행할 경우에 반드시 해당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할 것(제26조 제2항)과 해당조치가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조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제27조). 이러한 변화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자율적 권리를 가진 권리행사주체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 3) 학교 및 지역사회<sup>30)</sup>

#### (1) 미국<sup>31)</sup>

미국의 특수교육에서 학부모는 자녀가 특수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다양한 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먼저 특수교육에서 장애아동의 부모는 선호하는 언어 또는 의사교환 방식으로 교육 결정 절차에 대해 적절하게 공지 받아야 한다.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 대해 가정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기 전에는 학교가 반드시 아동의 부모에게 동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선호하는 언어로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동의는 자발적인 것으로, 아동의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동의를 철회한다고 해서 동의 이후로부터 철회 이전까지 발생한 조치가 소급되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교육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부모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회의참석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학교는 이러한 IEP 회의 참석을 보장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회의에 참석할 시, 장애아동 또는 장애에 대해 잘 알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동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 뉴욕시 교육청(DOE: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통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30)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덴마크, 탄자니아, 인도의 아동 청문권 관련 내용은 Unicef(2011). Every Child's Right to be Heard. New York: UNICEF.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1)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미국의 아동 청문권 관련 내용은 NYC Department of Education(2021), Family Guide to Special Education Services for school-age children.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그 외에도 장애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다른 의견을 개진하거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 공정심의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와 공정심의를 통역이 필요한 경우 뉴욕시 교육청(DOE)에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의 학교 기록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 개별교육프로그램(IEP) 회의 참석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살펴보면서 준비할 수 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기록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학교나 특수교육 위원회(CSE: 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위원장과 만남을 요청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2) 덴마크

덴마크 초·중등학교법(Act on Folkeskole)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법제화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법 제42조는 각 학교로 하여금 교육위원회(school board)를 두도록 정하면서 그 구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5~7명의 학부모 대표, 2명의 교사 대표 그리고 학생들이 선출한 2명의 학생 대표로 구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동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3) 탄자니아

탄자니아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 협의회(Children's Councils)가 지역사회에 구성되어 아동들이 관심 있는 문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 협의회에 속한 아동들은 장애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 아동에게도 공정한 대표성이 부여되고, 이들은 2년의 임기동안 일하게 된다. 지방 정부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과 관심사에 대해 알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에 아이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아동 협의회는 실제로 지방 통치 과정에서 눈에 띄는 영향을 가져왔다. 아동 협의회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동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과 지역 공무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 협의회에 속한 아동들도 민주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해 더 잘 알고, 참여의 기술을 배우며,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 (4) 인도

인도 남서부에 있는 카르나타카 정부는 몇 년 동안 지역화 된 계획 과정을 시작하려고 노력해왔으며, 2004년에 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지방 분권형 계획 과정에 착수할 수 있는 지방 정부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그 중 ‘Concerned for Working Children, CWC’은 지역 관할의 56개의 판차야트(Gram panchayats: 마을 협의회)가 자체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CWC를 통해 아이들은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 환경적 우려, 이동 및 교통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실제로 56개의 판차야트를 조사한 결과, 도서관, 학교 운동장, 식수, 화장실, 식사, 교사 등 교육과 학교에 관련된 문제가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CWC는 이와 같은 문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른들은 현실 세계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해 냉소적이고 경계하는 반면, 아이들은 여전히 희망과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변화가 가능하였다.

막칼라 판차야트(Makkala Panchayats: 아동 판차야트 또는 마을 협의회)는 모든 아동을 대표하여 6~18세 아동으로 구성된 마을 아동 협의회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각각의 막칼라 판차야트에는 막칼라 미트라(Makkala Mitra)라는 아동의 친구가 되는 성인이 있는데, 그들은 아동이 위기와 필요에 처했을 때 도와주며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막칼라 미트라에게 직접 표현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Makkala Anche Pettige라는 어린이 우체통이 구비되어 있다. 아이들은 공개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체통을 이용하기도 한다. 우체통은 모든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어야 하며, 실제 위치의 결정권 또한 아동에게 있다. 막칼라 미트라는 매주 우체통을 열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아동의 이름은 기밀로 유지한다.

#### 4) 기타<sup>32)</sup>

이 외에도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꾸준한 노력을

32) 필리핀, 캐나다, 우간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Unicef(2011). Every Child's Right to be Heard. New York: UNICEF.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이어가고 있는 대만과 필리핀, 아동 청문권의 실현을 위해 매개체를 만들고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와 우간다에 대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만의 경우<sup>33)</sup>, 1993년 외무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대만정부는 CRC 지침을 준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만정부의 역할로는 1999년 11월 20일 국제아동권리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에 아동국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에는 아동·청소년 복지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로도 2014년에는 ‘아동권리협약 이행법’, 2016년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결과보고 및 국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만의 비정부기구도 인권관련 정책이 UN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대만 UN 가입에 대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인권관련 법률들에 아동권리가 포함되도록 법률개정 운동을 전개하여 관련 법률들이 CRC 지침에 따라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복지 및 권리 증진 위원회를 행정원(대만 최고의 행정 기관) 산하에 설치하여 4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아동과 청소년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법률과 정책을 점검·평가하는 등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특히 대만의 최초보고서에서 제안된 권고사항 중 다음의 사항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되었다. ① 아동보호와 관련된 입법이나 법원 및 기타 관계당국의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 ② 아동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아동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보다 자유롭게 안전하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아동권리와 관련한 권고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제고하는 아동에 대한 문화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아동과 청소년이 공적사안에 참여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필리핀을 볼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정부가 아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25개년 국가 틀을 아동과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참여권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와 관련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모든 가정 법원 절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sup>34)</sup>를 개발하였다. 이는 아동 및

33) 대만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2020 아동권리국제포럼』에서 발표된 ‘대만 아동권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Yu-Wen Chen 발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4) [http://advocate.gov.ab.ca/home/OCYA\\_Youth\\_home.cfm](http://advocate.gov.ab.ca/home/OCYA_Youth_home.cfm)

청소년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해를 하는 것이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우간다 정부는 유니세프와 함께 학교, 의료 제공자, 법률 기관, 보호관찰 및 복지 기관, 지방 의회, 비정부 기구, 지역 사회 기반 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 참여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였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참여시키는 이러한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과 아동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아동 청문권 제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시사점은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절차적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시사점은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 법원에 가게 될 경우 아동 변호사 지원, 법원에서 일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가이드 제공 등과 같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나 지역사회 등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계획수립에 반영 및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각 나라별 아동 청문권 관련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여 살펴본다면 <표 2-13>과 같다.

**<표 2-13> 국가별 아동 청문권 관련 제도 특징**

유형	국가	특징
사법절차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사건에서 12세 이상의 아동 견해 표현</li> <li>• 아동 견해 확인 및 아동 의견 청취 규정(아동복지법 제20조)</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리분별(discernement)이 가능한 미성년자는 모든 사법적 절차에서 본인의 의견 개진</li> </ul>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변호사를 임명하여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아동이 견해를 표현하도록 함</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과정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적장치(Guardian Ad Litem (GAL)와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프로그램을 마련함</li> </ul>
	남아프리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과정에서 아동의 나이, 성숙도 및 발달단계, 욕구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함</li> </ul>
행정절차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조치에서 아동을 당사자로 인정함</li> <li>• 보호조치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연령이 어릴 경우 관찰한 결과를 자기결정권의 표현으로 인정함</li> <li>• 아동보호조치 전후의 모든 단계마다 아동 청문권이 보장됨</li> </ul>

유형	국가	특징
학교 및 지역사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행정적 절차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 표명권을 법적으로 보장함</li> <li>• 아동·청소년을 자율적 권리를 가진 권리행사주체로 인식</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li> </ul>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학교법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 법제화</li> </ul>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협의회(Children's Councils)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 참여</li> </ul>
기타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cerned for Working Children(CWC)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및 자체계획 수립에 대한 아동의 의견제시</li> <li>• 지역사회 내 어린이 우체통을 구비하여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의 의사표현 권리 제고 및 아동·청소년이 공적사안에 참여하도록 권한 강화</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아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25개년 국가 틀을 아동과 협력하여 제작함</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법원 절차에서 일어나는 종합적인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하고자 웹 사이트 제작</li> </ul>
	우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관 및 실무자들을 위한 아동참여에 대한 안내서 제작</li> <li>• 사회 전체에 아동 청문권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 전달</li> </ul>



## 제3장

# 아동 청문권에 대한 종사자 인식 : FGI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연구결과

제3절 FGI 함의



## 제3장 아동 청문권에 대한 종사자 인식 : FGI

### 제1절 조사개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들은 아동 청문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청문권 보장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실천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FGI는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회(2021년 5월 7일)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3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2명)가 함께 참여하였고 이후 2, 3차 FGI에는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2021년 7월 1일, 7명 참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2021년 6월 29일, 5명 참여)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기관별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기관 간의 역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기관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FGI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자료 분석은 녹취록을 읽으면서 주요 개념(의미 단위)을 확인하고 확인한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루어졌다.

<표 3-1>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FGI 집단	성명	성별	직책/경력	비고
1	A	남	팀장/5.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B	여	팀장/6년	
	C	여	상담원/3년	
	D	여	시설장/15년	학대피해아동쉼터
	E	여	시설장/14년	

FGI 집단	성명	성별	직책/경력	비고
2	F	여	팀장/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G	여	팀장/6년	
	H	남	팀장/7.5년	
	I	여	팀장/7년	
	J	남	팀장/6년	
	K	남	팀장/10년	
	L	여	상담원/4년	
3	M	여	시설장/15년	학대피해아동쉼터
	N	여	시설장/14년	
	O	여	시설장/14년	
	P	여	주임/8년	
	Q	여	주임/5년	

## 제2절 연구결과

FGI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1) 아동 청문권에 대한 이해, 2) 아동 청문권 보장의 현실, 3)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등으로 정리하였다.

〈표 3-2〉 분석결과 정리

영역	상위범주	범주	의미 있는 진술
청문권에 대한 이해	특정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청문을 이해함	청문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는 것	그룹홈 평가지표에 아동 의견 청취가 포함되어 청문에 신경 씬/개인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서비스 욕구 파악/가족회의, 집단상담, 자체 회의를 통해 서비스 욕구 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청문은 딜레마 상황임	분리 보호, 가정복귀와 관련한 청문은 어려운 일/일반적인 상황의 청문과 다름
청문권 보장의 현실	현장에서 부딪치는 어려움	무엇이 최선의 실천인가?	안전을 위한 보호 VS 아동 의견 청취/보호 권과 참여권의 딜레마/청문권이 혼란을 야기함/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수성이 있음/‘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명문 규정이라도 있으면 좋겠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청문”인가? 청문권 보장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음.
		아동의 의견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가?	얼마나 들어야 할지 모르겠음
			들어주려고 해도 서비스가 없다. - 아동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서비스가 있는가?
			관계자들 간의 의견 상충
		실무자의 청문 역량 부족과 부담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음/청소년의 청문은 어려움
슈퍼비저 역량, 담당자 인식에 따라 달라짐			
조사관, 국선변호사의 인권 민감성이 천차만별임			
매뉴얼의 한계 판단에 따른 부담감			
충분히 더 많이 듣기 어려운 업무 환경: 들을 시간이 없음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음/공공화 이후 전문 사례관리기관으로 전환 과정에서 업무가 더 많아짐		

영역	상위범주	범주	의미 있는 진술
	청문권 보장을 위한 노력	기본적, 절차적 노력	아동의 의견을 묻고 설명하고 설득함/“분리 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 작성/외부 자문을 구함
		청문권 실현을 위한 노력	아동 의견에 따라, 아동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함: “역동적 과정”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잘 듣기 위해 필요한 것	사례집과 같은 형태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음	매뉴얼, 서식 등 변화
		아보전상담원의 역량 강화와 판단에 따른 직원보조장치 필요	상담원에 대한 교육과 보호 제공
	아동이 잘 말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동의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함
		아동의 알 권리 충족	정보 제공/법원 진술녹화 상황에 대한 안내 필요함
		시간이 필요함	판단 이전에 아동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함
		아동이 직접 진술	아동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 제공
	아동 중심의 청문 환경	아동이 편하게,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도울 수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간의 협력/지역사회와 협력/컨트롤 타워 필요	

## 1. 아동 청문권에 대한 이해

FGI 참여자에 따라 청문, 청문권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 쉼터 참여자들은 공동생활 가정 평가지표에서 아동 의견 수렴을 강조하는 상황과 맞물려, 맞춤형,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청문을 이해하였다. 실제 2020년도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 지표 중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에서 가족 행사나 모임을 통한 아동의 욕구 수렴 및 반영, 아동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학습 지원에 각 4점이 배점되었다. 한편, “아동의 권리” 라는 평가 영역에서는 비밀보장,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sup>35)</sup>, 아동의 고충처리<sup>36)</sup>

35)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평가지표에서는 인권침해 관련 규정 마련, 아동에게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아동 대상 인권교육 계획 및 실천, 직원 대상 인권교육 계획 및 실시, 직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직원으로부터 학대 및 인권침해 금지에 대한 서약서 받아서 보관, 아동 간 분쟁 시 직원이 규정에 따라 개입

등을 평가한다. 쉼터 종사자와 달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안전” 이슈가 매우 중요하며,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의 아동 의견 청취와는 다르다는 점, 이와 관련된 딜레마를 언급하였다. 이 때 딜레마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 아동의 의견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경험하는 것이었다.

## 1) 청문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는 것

### (1) 그룹홈 평가지표에 아동 의견 청취가 포함되어 청문에 신경 씬

“아동의 의견이나 청취할 때 저희는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최근에 그룹홈 평가라는게 저희가 3년마다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있기 전에는 두루뭉술하게 아동의 상담이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했었는데 평가라는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그룹홈이나 기타 기관에서도 아이의 의견을 꼭 청취해야한다는 인식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D)

“아이들의 쉼터 내 생활이 최근 몇 년 동안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원하는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였는가. 이 부분을 평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O)

### (2) 개인 상담·치료를 통해 서비스 욕구 파악/가족회의, 집단상담, 자체회의를 통해 서비스 욕구 파악

“아이들 1:1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가 힘든지, 뭐가 불만인지, 옆에 아이 때문에 내가 무슨 피해를 받고 있는지, 부모님과 연락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등의 이야기는 대부분 개별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불만이 있을 때는 집단상담이나 가족회의를 통해서 아이들 의견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회의라고 해서 아까 가족회의랑 유사하고 동일한 것 일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번에는 뭘 하고 싶은지 또는 청소구역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등의 아이들 의견을 직접 듣고 운영함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E)

등을 평가한다(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2019).

- 36) 아동의 고충처리 평가지표에서는 아동의 고충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 있음, 고충접수 및 처리과정 문서화, 홈페이지, 건의함 등을 통해 고충(건의)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 마련, 15일 이내에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공지 등을 평가한다(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2019).

## 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청문은 딜레마 상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관의 정체성을 재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 보장에 두기에 안전 보장을 위해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아동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청문은 어렵고 딜레마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FGI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청문을 ‘아동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의 권리랑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아이의 안전이나 생명 그리고 재학대 이런 것과 이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100% 아동의 의견만을 존중을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일을 하면서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아이의 의견을 들었는데 위험 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책임이나 그런 부담이라든지 죄책감 이런 것들은 사실 기관이나 기관 담당자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이에 대한 청문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뒤에 윤리적 딜레마로 나오기는 하지만 조금 뭐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조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L)

## 2. 청문권 보장의 현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부딪치는 청문권 보장의 어려움과 청문권 보장을 위한 현재의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 1) 현장에서 부딪치는 어려움

#### (1) 무엇이 최선의 실천인가?

앞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기관의 특수성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FGI 참여자들은 청문을 아동 의견을 어떻게든 어느 정도든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안전 때문에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의견을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갇혀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안전”이 최고이고 아동 의견보다 안전이 최우선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원하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I(보건복지부, 2020, 188p)에 의하면, 2020년 3월 24일 일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응급조치 시 피해아동 등의 보호시설 인도에서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아동의 의사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단순히 아동의 의사만을 따르는 것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 스스로가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점,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로서 피해아동을 시설로 보호하는 것이 아동 이익 최우선을 준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적시하였다.

이처럼 매뉴얼에서 아동의 의견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밝혔고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이 최선일 수 있다고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아동 의견 청문과 아동 의견 반영을 등치시켜 이해하였고 안전 보장을 위해 아동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딜레마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안전”과 “청문”을 대립적인 것으로, “아동 청문”을 아동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인데, 청문이 아동 의견대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는 작업이 교육이나 지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최선의 실천에서 아동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의견 존중은 아동 의견을 따르는 것과 다르다.

가. 안전을 위한 보호 VS 아동 의견 청취/보호권과 참여권의 딜레마/청문권이 혼란을 야기함/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특수성이 있음/‘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명문 규정이라도 있으면 좋겠음

“무조건 아동의 의견에 따라서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 안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출타기가 애매한데 그리고 그 아동의 안전은 어떤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A)

“아보전이 아동 권리 보호에 있어서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동 권리를 가장 옹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권과 그리고 아이들의 청문권이 겹치게 되는 상황이 아동 학대 상황에 많다보니까 그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현장에서의 고민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떠오르지 않나... 오히려 이전에는 청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기 전에는 아동 권리 보호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청문권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상담원으로서는 더 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K)

나.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청문”인가? 청문권 보장이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음.

아동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법적 증언이 더욱 그러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 의견에 따라 혹은 아동 의견에 반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때 아동이 가질 심리적 부담감(예, 죄책감) 등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도 아동에게 해롭다고 말한다. FGI 참여자들은 아동 의견 청취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청문 과정 또한 아동 중심적이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증언을 하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공교롭게 성학대 사건이었고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직접 들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아이들의 청문권을 보장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되나? 굳이 아이를 재판하는 법원에 데려가서... 일생에 한번 가지 않을 일이 많을 애들인데 굳이 거기 가서 마이크를 가지고 진술하는 것을 아이가 경험을 해야 할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거절한 적도 있어요. 편지로 대신하겠다. 아이가 화가 나있고 분노한 상황을 아이도 싫다고 한다 ‘처벌해주세요’ 편지를 써서 보낸 적도 있었고 반대로 ‘꼭 가서 얘기 할래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이가 원해서 가긴 하지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하는대로 했지만 이게 맞는 걸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O)

“그래서 아이들에게 분리나 어떤 얘기하거나 어떤 사건 처리 의사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그 나이 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나는 이 아이처럼 이렇게 답변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찰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대같은 경우는 사실 남이 아닌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족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결국은 이제 도움이 되

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은 그러한 결정이 아이와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들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H)

## (2) 아동의 의견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가?

가. 얼마나 들어야 할지 모르겠음

FGI 참여자들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 100%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며, 존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늘 빠른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아동 의견 확인 여부 혹은 반영 정도를 객관화시켜 보여줘야 하기에, ‘얼마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중략) 아이가 시설에 가면 가출하거나 분명히 문제행동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아이가 시설에 가고 싶다고 하니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즉각 분리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12시에 시설에 데려다줬는데 점심 먹는 그 한 시간 사이에 가출을 해서 다시 시설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저녁 6시에 담배를 피러 나간다고 하면서 또 가출을 했어요. 또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밤사이엔 못나가게 하니까 못 나가게 한다고 소화기로 온 집을 난리를 쳐놓고 새벽 2시에 나가서 무면허로 현행범으로 잡혀서 지금 유치장에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의견을 존중해야하는지 사실은 항상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C)

나. 들어주려고 해도 서비스가 없다.

아동의 의견을 들으려고 해도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많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 의견을 제한된 서비스에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의견 청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제한된 선택지에서도 아동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등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이도 시설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가 이 가정을 위해서 돌봐줘야 되는데 아이가 시설에 가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본인이 아이가 의사를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청문권이나 아이의 의사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과연 여러 가지 지역사회나 또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더 넓게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이 사례가 조금 떠올랐습니다.”(F)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개수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G)

#### 다. 관계자들 간의 의견 상충

학대피해아동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는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이 있다. FGI 참여자들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 판단에서 보호자가 대책도 없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보호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아동이 집으로 가겠다는 경우, 상담원이 보기에는 시기상조인데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동 의견을 얼마나 고려해야 할지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편, 보호자의 강력한 민원 제기가 모든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아이 의견보다는 때때로 경찰이나 시청이나 상담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 라는... 그게 현장에서 느껴왔던 과거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분리보호 하게 될 때도 아이 의견을 물어보라고는 되어있었지만 2020년 10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아동보호동의서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아이에게 받고 분리를 하게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던 거 같기도 하고, 실제로 가정복귀를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아이가 가정복귀 의사가 없다하면 보통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호자가 얼마나 민원을 많이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시행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그래서 실제적으로 따지면 아이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애는 보낼 수 없는데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상담원이 애너지를 쏟아야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긴 하거든요. (중략) 보호자가 원하고 또 아이가 원하면 그거를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8회기, 4회기, 6회기 각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도 하고, 또 보장원 같이 매뉴얼을 지침을 주는 기관에서는 지자체마다 자기를 역량대로... 이게 강제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니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저희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의견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하더라도 민원성이 심하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기관의견이 불가하더라도 아이 복귀 시킬거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B)

### (3) 실무자의 청문 역량 부족과 부담

가. 아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FGI 참여자들은 아동이 어린 경우, 의견을 자주 바꾸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 스스로가 자기 의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의견을 표현할 줄 모르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하였다. 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의견 존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드러냈다.

청소년 사례의 어려움은 다른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강지영(2019)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청소년 사례에서 아동학대 판단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육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양육자의 폭력을 야기하면서 자신의 문제행동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강지영, 2019).

“아동의 연령이나 성숙도 고려, 청문권 보장이라는 질문을 봤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를 처음에 질문해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면 영유아의 경우는 초단위로 아이들 의견이 바뀝니다. 너무 수시로 바뀌어서 이런 어린 아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할 수가 있지? 그러다보니 영유아들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부모들의 의견이라는 거죠.”(E)

“애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애들이 저희에게 뭘 요구해야하는지 뭘 이야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의견이 어디까지 반영되는지 잘 몰라서 이야기할 때 보면 생활적인 면에서 요구를 많이 하지만 그룹홈에 와서 ‘집에 언제 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 것만 물어보는 상황이 되어서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 됐어요. 이야기할 때 나도 답답하고 아이도 답답한 이런 상황입니다.”(Q)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저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어떻게 하고 싶니? 물어보면’ 몰라요’하는 애들이 많거든요.”(N)

“청소년들이 비행문제와 학대가 접목이 되었을 때는 아이들 관리가 더 어려운 거 같습니다.”(D)

“매일 바뀌는 그 아이의 심리상태를 그 의견이라 해서 들어줄 수만은 없어서 저도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적장애아동 의견 청취는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할지...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D)

#### 나. 슈퍼바이저 역량, 담당자 인식에 따라 달라짐

FGI 참여자들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실무자,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았다. 아동의 청문권이 개인적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정한 교육,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아이의 의견을 100% 듣는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거 같지 않고 아이한테 아이가 원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걸 충분히 설명해주고 아이를 설득해주는 과정이 있고... 이런 사실 어떤 기관의 슈퍼바이저의 역량이나 담당자의 인식이나 각 기관마다 아이 의견 청취를 하고자하는 그런 민감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B)

#### 다. 조사관, 국선변호사의 인권 민감성이 천차만별임

아동 의견 청취와 존중과 관련된 역량은 조사관, 국선 변호사의 경우에도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아동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아동에게 이로운 과정을 되기 위해, 아동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듣는 다양한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 공동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아이랑 부모님을 같이 불러서 재판 전에 사전 조사를 하는데 따로 아이를 분리해서 아이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작업 없이 부모님과 같이 오게 해서 행위자랑 같은 공간에서 아이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B)

#### 라. 매뉴얼의 한계

FGI 참여자들은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업무 수행에서 매뉴얼 의존도가 매우 큰데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참고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중략) 지금 저희에게 배포된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은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아동 권리나 어떤 청문권에 기반을 둔 사실 매뉴얼은 좀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한 예로 아이들에게 지금 보호가 필요한데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경

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성인일지라도 어떤 큰 결정을 할 때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아이들에게는 그날 그때 당장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매뉴얼 상에는 그런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매뉴얼들이 있어서 이런 청문권과 아동 권리를 보장한 매뉴얼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들은 안전의 기반인 건데 이제 외부적인 것으로는 ‘청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서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문득 들어서 그런 거가 맞춰진 매뉴얼들이 생긴다면 조금 더 저희가 업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 또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 늘 아동 학대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저희 기관만 업무를 하는 것 같다 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H)

#### 마. 판단에 따른 부담감

학대사례 판단은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의 업무가 되었지만, 사례판단을 비롯하여 원가정복귀와 관련된 판단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의견은 여전히 중요하다. 사실, 판단에 대한 부담은 아동의 의견 청취와 무관하게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문을 안전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상황에서 청문 강조는 고려할 변수가 많아진 것으로 혹은 선택의 딜레마를 가중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판단 부담 증가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서 판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건이 나중에 터졌을 때 핑계나 변명처럼 보일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저희가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기록을 남겨도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지자체가 100% 책임을 질거다 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나도 원하고 있고 부모의 품을 원한다 하니...”(B)

“최근에 저희도 아직 전담공무원 배치가 안된 곳이 있어서 복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시설에 간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시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사실 저희의 글들이 대부분 작성이 되어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인만 받으러 다니는 등의 의무적인 시스템으로만 진행이 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가 진짜 많이 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C)

#### (4) 충분히 더 많이 듣기 어려운 업무 환경 : 들을 시간이 없음

FGI 참여자들은 실무자의 청문 역량 부족 및 부담에 덧붙여, 아동 의견을 충분히 더 많이 듣기 어려운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것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2020년 10월 이후 전문 사례관리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인 지라 청문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다. 아동의 의견을 더 잘, 더 많이 듣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 환경의 개선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심터를 말씀드리면, 교대로 생활 지도원이 아이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업무들을 별도로 사무원이나 행정인력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근무시간 동안 일곱 명의 아이들을 케어도 하면서 본인의 행정 업무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학습지도나 아이들의 상담요청을 했을 때... (중략) 아이들의 의견이나 욕구를 충분히 들어주거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뒤로 미루고 아이와 함께 충분히 놀아주거나 의견을 들어주거나 해야 하는데 개개인마다의 역할에 대해서 촉박하게 되면 그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큰 것 같아요.”(M)

“사실 매뉴얼은 너무 높게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실무에서 느낄 때는 이번에 공공화 과정을 거치면서 매뉴얼이 전면 개편되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또 공공에 배치된 공무원분들께도 업무도 알려드려야 되고 또 아이를 만나면서 청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아이도 설득하겠지만 유관 기관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말 짐 한 보따리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만날 때마다 이렇게 풀어 헤쳐서 설명드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제도가 급변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에게는 그게 좀 고민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청문권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저희의 내부적인 회의라든지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건 원래 체계가 있어서 진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이 제도 개편의 속 쓰나미가 저희들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 소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청문권을 보장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다 라고 답변드리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중략) 공무원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조사 지원도 해야 되고 저희는 강화된 사례 관리도 해야 되고 변화

된 거는 또 일일이 유관 기관들이 관심이 없으면 모르다 보니까 양육시설 아니면 기타사회복지 기관들, 경찰 아무튼 저희하고 함께 일하는 기관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층 사례관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은 고민이 되는 거죠.”(J)

## 2) 청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청문권을 보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청문권을 보장할 업무 여건도 미흡한 현실에서도 FGI 참여자들은 청문권 관련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과 아동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기본적, 절차적 노력

FGI 참여자들은 청문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묻고 설명하고 설득하기,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 받기, 외부 자문 구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먼저 의견을 묻고 설명하고 설득하기에서, ‘설득’은 상대방이 이쪽 편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으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보면 애초부터 말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청문 과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설명과 설득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선호나 가치가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가. 의견을 묻고 설명하고 설득하기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보면 아이는 “무조건 가지 않겠다, 엄마 곁이 편하다..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완강해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위험한 상황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경찰들이 힘으로 제압을 해서 “지금은 가야한다”라고 해서 어제는 그렇게 데려왔다고 하고.. (중략) 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왔을 때는 굉장히 엄청 울고 하니깐 흥분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보니까 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에 부모하고 생활을 했을 때, 엄마가 우리를 깨서 누나를 위협하고 이런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엄마가 또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엄마가 이런 행동

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엄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하고, 아이의 특성에서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특성을 발견을 했어요. 오자마자 피아노를 치고 이런 부분이 있길래.. 아이하고 연주를 같이 해주고 하면서 라포를 형성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갔고, 아이한테 엄마가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엄마는 병원에서, 너는 이곳에서 기다려주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겠냐? 라고 아이한테 설득을 해서.. 지금은 마음이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또 어느 순간에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또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D)

“아이들이 확실히 자유를 좋아하다보니까 쉼터 내에서 자유롭게 핸드폰도 사용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계속적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한 설득을 합니다.”(B)

#### 나. 동의서 받기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2020)에 의하면,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 보호시설의 종류(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와 특징,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일반 등 보호시설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최대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아동의 의사를 반드시 서면(‘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으로 확인<sup>37)</sup>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서면 동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인다.

“저희는 사실 분리 동의서를 사용할 때 아이들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대부분 동의서 작성을 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부터는 자기 이름을 다 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고 본인의 이름을 쓸 수 있게끔 하고 사실상 동의서 안에 아이들이 의견을 표하지 못하는데 상담원의 그걸로 동의를 대체한다 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걸 체크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이 어릴 경우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C)

37) 아동을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은 1) 피해아동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피해아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피해아동이 학대행위로 인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거나 탈진 또는 실신 상태에 있어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학대행위자나 부모 등의 개입이나 방해 등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0).

“저희가 사용하는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설입소에 동의합니다가 끝인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합니다’ 하고 이름쓰고 서명하면 끝인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청소년이나 아동들이나 다르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명이 갖는 설명 없이 그냥 시설에 갈래, 안 갈래만 묻는 것이 되어버려서...”(D)

## (2) 청문권 실현을 위한 노력 : 아동 의견에 따라, 아동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함 “역동적 과정”

앞서 살펴본, 기본적으로 절차적인 노력을 넘어 아동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아동 의견이 아동 이익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맞지 않은 경우, ‘어쩔 수 없음’으로 끝내지 않고 상황 변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가정 복귀 사례 아동 중에 저희도 그렇고, 치료사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돌아가면 재학대 위험도 있고 부모들이 제 역할을 아직 할 수 없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자매라서 큰 아이에게 동생들을 돌봐야하는 부담이 같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안 갔으면 했는데 아이들이 세 명 다 원가정 복귀를 너무 희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에게 부족한 면을 (지원하는 것을) 주변 지역 내 인프라를 연결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E)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데 확실히 상담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이가 안전한 시설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 크고... 특히 성학대 케이스들은 유연히 행위자를 지나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애를 보내야하는데 애가 초등학교 5학년 연령이고, 자기 의사표현이 확실하고, 학교에 가야한다는 의사가 명확해서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같이 조율해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연령이나 성숙도와 인지능력이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아이의 안전이랑 과연 어떤 것을 비중을 더 크게 두어야하는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B)

### 3.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

청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잘 듣기위해 필요한 것, 아동이 잘 말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 관계 기관 간 협력 등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잘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례집과 같은 형태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역량 강화와 판단에 따른 직원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 1) 잘 듣기 위해 필요한 것

##### (1) 사례집과 같은 형태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음

FGI 참여자들은 청문권 보장과 관련된 사례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례집 형태의 자료에 대한 요구는 다른 영역(예, 사례판단)에서도 발견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례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식화 혹은 표준화한 사례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그래서 “사례” 예시를 통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를 요구하였다(강지영, 2019). 이는 실제 현장에서 고민하는 사례와 유사한 사례들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제공된다면 실무자들이 실제 만나는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강지영, 2019)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아이의 의견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 안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출타기가 애매한데 그리고 그 아동의 안전은 어떤 것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담원에 따라서 혹은 어떤 기관이 개입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모아보던지, 이런 상황별 사례들을 예시를 들어서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는 항상 있을 거 같습니다. 아동 안전이나 아동의 청문권이냐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과연 그 최우선이라는 것이 아이의 의사가 최우선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전이 애한테 최우선인건지 그것은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상에 전국적인 어떤 사례를 모아놓는다면 법원의 판례집처럼..이 사례는 이렇게 했었고 결과는 어떠했다 이 정도로 참고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A)

“지금 복지법 15조에서는 아이들을 보호 조치를 할 때 아이 의견을 들어봐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령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보호

조치할 때는 아이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청취과정은 의도적으로도 갖고 있고 하지만 이것을 청취하라고만 법령으로 되어 있는 하위 법령이라든지 지침 매뉴얼 어디에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세부 규정이나 방법에 의해서 받아들여라, 청취해라라는 내용들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규정이 생기면서 더 이제 현장에서는 헛갈리게 되는 이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시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아동 의사에 반해서 안전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에 반한 업무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과거에 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사례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이런 판례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법률 100선이라고 해가지고 아동학대에 따른 법률을 학대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한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현장에 일하는 실무자로서도 이것도 이런 부분도 아동학대의 유형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좀 가이드가 좀 잡히는 거 같더라고요.(중략) 청문권 보장을 위한 100선 현장의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그게 좀 공유가 되고 또 인권 감수성을 위한 이런 상식적인 교육 방안들도 좀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현장에서 생각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K)

## (2) 상담원의 역량 강화와 직원보호 장치 마련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아동 의견을 묻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과연 안전이나 재학대 예방과 양립 가능한 것인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상담원의 역량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기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어떻게 들을 것인지, 잘 듣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아동이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아동의 결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무 교육 커리큘럼(굿네이버스, 2021)을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2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아동권리 감수성 교육이 있다.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전문인력 양성 표준과정(임선영, 2020)에 따르면, 아동권리 감수성 교육 내용은 신입 상담원, 상담원, 팀장, 관장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며, 아동과 아동권리(나와 아동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아동관 인식 및 재정립, 아동기의 경험 공유, 기본권에 대한 이해), 취약아동의 권리(장애를 가진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살펴보기, 아동권리실천(아동보호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아동권리

침해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덧붙여, 아동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방안을 사례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아동보호 관련 판단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지우는 상황(문화, 분위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일련의 아동보호 과정은 여러 번의 판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각 과정에서의 판단은 이후의 판단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어느 한 사람(혹은 한 기관)을 탓하기 이전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선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수퍼비전 강화에 덧붙여 적정 업무량 등과 같은 업무 환경적 변화 또한 필요하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원의 경우 100시간 교육을 받아야 자격을 갖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상담원의 경우 보통 아보전에 취업을 하고나서 100시간 교육같은 전문 교육을 수료합니다. (중략)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C)

“네. 저도 얘기 들으면서 이 청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하면서 사실 저희 기관이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면 사례관리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라든지 아동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사례 관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돌아보면 사실 아이의 안전, 그리고 위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위자나 아동에게) 약간 저희가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존중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청문권에 대한 인식 개선, 그런 인권이나 그런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끌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장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대한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L)

“현장에서도 의사에 반한 이런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데 안전의 이슈가 너무나 상위적으로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중략)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텐데 그 책임에 일차적인 부분이 아보전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K)

## 2) 아동이 잘 말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잘 듣기 위해 필요한 것에 이어, 아동이 잘 말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동의 치유와 회복, 아동의 알 권리 충족, 충분한 시간, 아동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아동 중심의 청문 환경 마련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 (1) 치유와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

쉼터 참여자들은 분리 이후 아동이 겪는 불안, 걱정, 두려움, 모호함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아동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분리 당시, 분리 직후, 분리 이후의 시간에 따라 아동 의견을 듣는 작업이 달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대변인 같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입소 초기에 학대 상황에서 긴급하게 보호가 쉼터로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또 생활하는 공간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탐색하는 기간,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차츰 생활의 안정감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아이는 고등학생인데 성학대가 오빠에 의해 일어났었고 그런 가족력도 히스토리도 좀 있었는데 아이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한 10-30분은 그냥 ‘네/아니오’로 하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나게 기다려야할 정도로 되게 힘든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조금씩 지나면서 생활적인 부분에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중략) 애초에 후견인이나 국선변호인은 법률, 행정을 위해서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은 아니더라도 옆에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일관되게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함께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이가 애정 결핍이 있거나 성적으로 후유증이 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행동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때가 간혹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M)

### (2) 아동의 알 권리 충족

아동의 의견은 언제나 “~에 대한 의견”으로 “~”에 대해 많이 알수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은 관

심 영역의 확대, 선택 기회의 확대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FGI 참여자들은 아동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청문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다. 또한 아동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과정을 알림으로써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아동 안전이란 관련해서는 이 아이한테 최대한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청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러한 상황이 왜 되었는지, 아이한테 잘 안내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그나마 그 아이의 청문권을 보장하는 다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A)

“아이들이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시설을 가야 되면 매번은 아니지만 시설을 여러 군데를 같이 가서 아이가 고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P)

“(진술녹화)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아이 권리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이 있을 거 같은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법원에 재판 일정이 있을 때 사전에 아이한테 그 재판참석과 관련된 법원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법원에 가본 상담원은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안 가본 상담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많지 않은 상담원도 많다보니가 아이한테 그걸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도 선택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데 보통은 진술녹화의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오늘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고 녹화가 될 거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 진술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매뉴얼적으로 ‘꼭 해야 한다’ 라는게 없기도 하고, 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저희가 아이들을 픽업해주면서 법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겠지만,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나 학대행위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님도 법원에 처음 가시는 분이 많으셔서 아이들한테 네가 선서를 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거고, 네가 그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중압감에 대해 얘기를 못해주는 경우도 많은 거 같습니다.”(B)

### (3) 충분한 시간

앞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기 위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치유와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덧붙여 아동은 자신의 의견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

고 다양한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 안전하게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는 과정 등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제대로 듣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아동 분리가 응급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렵다. 제한된 시간에서 잘 듣기 위한 노력, 덧붙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한 노력, 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업무량 같은 업무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실 약 8주 정도 진행되는 원가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가정 프로그램에서 가장 제가 느끼는.. 취약점까지는 아닌데요.. 이 아이가 재학대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집에 가서 1주일 정도 살아본다던가, 2주 정도 살아본다던가..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은 1, 2주는 잘 해주시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희망을 합니다. “아빠가 제 방도 만들어주고, 핸드폰도 사 준대요” 하면서 엄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거의 몇 달 동안 집에 없었던 아이가 있으니까 좋아서 잘 해주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자신들에게)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음... 그걸 좀 짚 만한.. 잣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도 선택의 여지처럼 이 방법도 한번 직접 해보고, 저 방법도 직접 해보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너가 그렇게 원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 가서 적응기를 가져보자”, “집에 갔다오니까 어땠어?” 들어보기도 하고 또 만약 예를 든다면 ‘시설에서 너가 계속 생활한다면 어떨 거 같아?’라고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E)

”아이들은 그룹홈에 가고 싶지만 그룹홈에 티오가 없으면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소해서 부터 조금씩 설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갈 때쯤 돼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장 내일 ‘가’ 하지 않고 ‘너한테 충분히 물어보고 생각할 시간 주고 많이 설명을 해 줄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막상 본인보다 다른 아이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다른 시설에 간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끝이 아니라 가끔 연락 오는 애들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 안부도 물어보고 전화통화도 하긴 하거든요. 개인 애들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긴 어때?’하고 애들끼리 정보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쁜 쪽으로 생각은 안하고 기대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변하더라구요. 그러면 자기도 빨리 가고 싶다고 오히려 저희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시설이 언제 결정이 나냐고 빨리 가고 싶은데 거긴 장기간이니까 적응할 수 있

는 게 빨라졌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 상황과 그 쪽에 가서 너희의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N)

#### (4) 아동이 직접 진술

UN 아동권리협약 12조 2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혹은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아동의 권리를 밝히고 있다(황옥경 외, 2015). FGI 참여자 중 일부는 아동 관련 회의에서 누군가가 아동 의견을 취합해서 대신 전달하는 상황이 아니라,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저희가 아이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끼리 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있거나 그런 방법이 과정 중에 있으면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중략) 회의를 해도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몇 번 더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한테 회의 내용을 온전히 다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 그러면 아동 입장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게 너무 지연되고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한대로, 말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좌절같은 것도 경험하기도 하니까 아동이 직접 자기의 의견을 내서 그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P)

#### (5) 아동 중심의 청문 환경

아동이 편하게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청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관련하여 FGI 참여자들은 어른의 유도 질문, 어른의 가치를 암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아동 의견이 왜곡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아동의 견해 존중에 대한 일반논평(2006)에서 UN아동권리위원회도 어른이 조작한 상황에 아동을 두거나 아동의 참여가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으며 12조를 실행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황옥경 외, 2015에서 재인용).

“저희는 성학대는 아니고 신체, 정서학대 아동이었는데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을 만나거나 법원 실무관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중학생 아동

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무관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두둔하려는 건 아니었겠지만 ‘아 근데 너희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니었을 거야’ 이러면서...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하지만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 드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아..’ 아이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법원이라는 데를 가면 낯설어서 주눅이 드는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나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너한테 그러는 건 너무 나쁘게 생각 하지마. 좀 좋게 생각해...’ 그분은 엄마의 이야기를 만나서 듣고 하니까, 아이에 대한 이해가 100%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 이야기도 듣고, 아이 입장도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거 같고, 다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아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학대 사실을 이야기하려 간 건데 주눅이 들어서 오히려 이야기를 잘 못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르니까.. 그럴 때는 공무원이나 검찰에서 일하시는 분들, 법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두둔하거나 대변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P)

### 3) 관계기관 간 협력 :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아동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도울 수 있다.

이번 FGI에 참여한 쉼터 종사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소통이나 협력이 미흡한 점을 문제로 보았다. 아동의 의견은 상황, 시점, 이야기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기에 쉼터 종사자가 파악한 아동의 의견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파악한 아동 의견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 의견을 아동 의견의 전부로 간주하는 것은 아동 의견을 제대로 존중하는 방법이 아니다. 각 기관에서 파악한 아동 의견이 다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아동을 더 잘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 (1)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간의 협력

“아이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아보전 담당자는 확인을 하기 위해 오는데 무슨 질문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를 뿐더러 (아이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아이는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 하면 (아보전에서는) 어.. 이상하다.. 저희가 들이론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맞아?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관찰하는 건 우리가 관찰하는데 아보전에서는 잠깐 보고 아이가 의견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Q)

## (2) 지역사회와 협력/컨트롤타워 필요

아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한다. 또한, 아동이 신뢰하는 사람은 아동의 비공식적 관계망 속의 누군가일 수 있다. 그러기에 FGI 참여자들은 앞서 살펴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간의 소통과 협력을 넘어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사람들과의 소통,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덧붙여 이를 가능하게 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의 존재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과정에서의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의 어떤 욕구라든지 아이가 바라는 부분을 표현을 할 때에도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기 사정도 여러 번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가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문권도 어찌 보면 아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이와 관계가 있는 상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족 안에 다른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실제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청취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사례하면서 아이 분리가 좀 고민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유관기관, 학교, 공무원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논의 과정에 할머니를 좀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좀 냈었던데요. 할머니가 물론 이 가정에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아이나 행위자인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도 아이와 친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런 것처럼 가족 안에서 이 아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비가해 보호자 이런 분들을 좀 같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아이 청문권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F)

“지역사회의 자원이 되게 도움이 될 때는 그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신뢰될 만한 사람이라고요. (중략) 어떤 경우에는 아이의 의견을 묻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럴 때는 지역 사회가 같이 순서를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신뢰될 만한 사람이 먼저 아이에게 ‘이런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야’라는 설명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을 만났을 때 너의 의견이 어떤지를 편안하게 대답해 주면 괜찮아’라고 이렇게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안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낯선 이인데 그렇게 해서 신뢰될 만한 분들이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지만 보통은 분리의 그 의견 안에 있으시다 보니 그런 의견을 주실 때도 ‘같이 책임을 같이 갖자’라는 메시지로 나

가게 하는 거 같아요. 이전에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후에 혹은 그 과정 안에 지역사회는 뭘 할 거예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아이의 삶에서 어떤 걸 도울 수 있으세요 라는 것들을 물어서 좀 계속 그게 조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I)

“좀 지역 내에서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실은 보장원에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나 원거리기도 하고 지역적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좀 지역의 거점에 아니면 시의 아동 보호팀도 괜찮고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조정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저희는 민간 신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동보호팀, 드림, 희망, 여러 유관 기관을 다 이렇게 아우르기는 좀 서로 의견만 좀 다르고 서로 그냥 합의되지 않은 결과물만 도출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권역 단위로 뭔가 좀 허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들이 아동 보호에 있어서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수행 기관들이 좀 있으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K)

## 제3절 FGI 합의

### 1. 종사자 역량 강화

FGI 참여자들은 더 잘 듣기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문권과 관련된 역량 강화 교육은 안전과 다른 권리를 상충하는 것으로 혹은 서열화시켜 이해하는 현실, 아동의 의견대로 하는 것을 청문권 보장으로 이해하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1) 아동 권리의 불가분성 원칙에 대한 인식 제고

인권은 나눌 수 없는 성격(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원칙)이 있다. 인권을 자유권, 사회권, 제3의 권리 등으로 나누는 것, 혹은 아동권리의 경우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나누는 것은 편의를 위해 혹은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분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자유로운 이동을 이야기하는 자유권의 경우 ‘무엇을 위한, ~을 향한 자유’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고 그랬을 때 교육을 받은 자유, 일할 자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유권은 교육을 받을 자유나 일할 자유와 같은 교육권, 노동권으로 사회권의 내용이 된다.

이것을 FGI 참여자가 중시하는 ‘안전’, ‘생존’, ‘보호’의 권리에 적용하면,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즉 보호권이 있지만,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를 생각하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호,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한 보호로, 발달권, 참여권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아동 권리는 쪼개서 생각할 수 없고 인권 영역의 중요성에 서열을 매기고 특정 영역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또는 소홀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학대피해아동의 경우에도 안전과 함께 발달을, 안전과 함께 참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2) 아동권리협약 12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필요

UN아동권리협약 12조 상의 2개 항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에의 관여(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에 정

당한 비중을 부여)에 관한 것이다(황옥경 외, 2015). 즉, 아동이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기에 FGI 참여자들이 청문을 아동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동 의견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12조, 청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UN아동권리협약 12조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을 지도하고 조언하면서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와 성인들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황옥경 외, 2015). 이러한 점에서도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2. 청문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

FGI 참여자들은 아동의 욕구와 의견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바빠서 잘 들을 수 없고 특정 선택이 업무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상황의 해결, 아동 의견을 존중한 판단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담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장치 개발 등도 더 잘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기에 이와 관련하여 아동보호 서비스 다양화, 업무량 조정, 아동보호 전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각자의 역할과 상호 협력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덧붙여 아동이 잘 말할 수 있도록 연령과 성숙도에 맞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잘 말할 수 있도록 우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아동 중심의 청문 환경을 마련하는 것 등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 제4장

# 아동 청문권에 대한 전문가 인식 : 델파이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설문 항목 및 내용 구성

제3절 연구결과

제4절 델파이 조사결과 함의



## 제4장 아동 청문권에 대한 전문가 인식 : 델파이조사

### 제1절 조사개요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 청문권에 대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관계로 탐색적 성격으로 설계되었으며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만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1,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에는 아동 청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보장 현황, 보장요인, 개선사항 등을 객관식·주관식으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2차에는 1차에서 수집된 답변들을 토대로 추가 객관식 질문과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조사 문항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청문권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실천적 함의 도출을 위해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이용한 기법으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한다. 델파이 기법은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해서 수집하고 발전 시킴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 방법이다(이종수, 2019). 또한, 델파이 기법은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각 전문가의 개인적 경험과 식견에 기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합의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이종성, 2001).

1차 델파이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조치 시 대립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AHP는 1971년 Saaty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서, 불확실한 상황이나 다양한 평가기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문제의 분석에 있어서 주관적 판단과 시스템적인 접근을 잘 섞어 놓은 문제해결형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이다. 박용성(2009)은 AHP는 조사가 판단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총합화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부여해 준다고 이야기하였다. 키노시타 에이조 등(2012)은 AHP의 첫 번째 특징은 절대평가가 아닌 쌍 비교에 의한 상대평가에 근거하여 행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상충(갈등, conflict) 딜레마 해소의 전

략이 필요할 때 상충 딜레마 해소의 사회적 의의(필요성), 즉 사회적 합의 형성(집단의 사결정)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AHP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형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해 상충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Expert Choice Comparison 프로그램과 AHP의 창시자인 Tom Saaty(2019)는 일상생활에서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일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Saaty는 약 10%(I.C. 0.1)이하의 불일치 비율이 합리적이긴 하나 특정 상황에서는 최대 30%까지 허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모든 문항의 I.C.(inconsistency)<sup>38)</sup>가 0.3 이하로 수용 기준을 충족하여 모든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요인의 가중치를 구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요인의 우선순위를 목록화 하였다.

## 2. 조사참여자 및 모집절차

본 델파이 조사는 굿네이버스와 연구진의 추천을 통하여 아동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법경찰관, 변호사, 유관기관 실무자, 가사조사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의 아동 관련 경력을 살펴보면 11년 이상~20년 이하가 42.5%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10년 이하가 40%, 21년 이상~30년 이하가 17.5%로 나타났다.

## 3. 자료 수집 절차

1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아동 청문권의 보장 현황, 기준, 주체별 역할 적합도, 관련 문제, 해외제도, 청문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객관식·주관식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질문지는 1차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분석하여 유사한 응답 요소들로 범주화한 후 중요도와 적합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요인 기준, 아동 청문권 보장 필요기준,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 원인, 의견상충 시 의견

38) inconsistency는 본 연구 분석에서 실시한 Expert Choice Comparison에서 제시한 각 문항에 대한 불일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응답자가 얼마나 일관되지 않게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수치이다. 보통 0.1이하를 가장 합리적이고 제시하나 탐색적인 성격을 띤 연구에서는 0.3까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시 주체, 보호조치 단계별 아동의견 청취, 아동 청문권 보장 관련 전문가, 해외 아동 청문권 보장제도,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에 대한 쌍대 비교 문항까지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21년 6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2회(1차: 2021년 6월 15일~6월 23일 / 2차: 7월 30일~8월 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모든 조사는 e-mail로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Expert Choice Comparion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1, 2차 델파이 조사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한 후, 유사한 응답을 세부 항목별로 범주화하여 비슷한 의견을 통합하였다. 1, 2차 조사는 모든 항목을 코딩하고 자료 값을 입력한 후 통계 값을 산출하였다.

## 제2절 설문 항목 및 내용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델파이 조사도구는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후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1차 설문은 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은 아동 청문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었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에 응답한 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1·2차 설문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0명이었다.

〈표 4-1〉 델파이 1차 설문 항목 및 내용 구성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	1	아동의 각 발달단계 별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아동 청문권 보장 연령	2	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시작해야 하는 연령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 청문권 보장 기준	3	아동 청문권에서 아동의 연령이나 인지능력, 성숙도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의 연령, 인지능력, 성숙도) 지적/정서적 발달 지연 혹은 나이가 어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사법체계 내 아동 청문권 보장현황	4	다음은 현재 아동 보호조치 시 사법 체계 내에서 아동 청문권 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아동 보호조치 시 경찰, 검찰, 법무부에서 아동 청문권을 얼마나 잘 보장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 (경찰, 검찰, 법무부) 위 기관에서 아동 청문권과 관련하여 추가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어주세요. 위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전혀 또는 별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 청문권 주체별 역할 적합도	5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 보호조치 시 피해아동의 의견청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시행령을 보시고 귀하가 아동보호조치 중 '아동의 청문권'과 관련하여 각 주체별 역할 적합 정도에 대해 체크해 주시고 그 이유를 함께 적어주십시오.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점	6	현재 아동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체크해주세요.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세부영역을 선정해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아동 청문권 보장 요인 중요도	7	아동 청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청문권에 대한 아래의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적어주십시오.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관련 예상 문제	8	다음은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에 대한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체크하신 후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영역을 골라 아래 빈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세요.
사법처리 절차 내 아동 청문권 반영방법	9	다음은 아동학대 발생 시 사법처리 절차입니다. 각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신고, 응급조치, 보호명령청구, 법정 증언, 분리조치, 가정복귀)
아동 청문권 해외제도 도입 필요/중요도	10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미국의 아동보호국 전문 변호사, 영국의 아동대리인, 미성년후견인, 변호사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위 인적장치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참고 매뉴얼	11	아동 보호조치 시 귀하가 참고하고 있는 매뉴얼 및 지침이 있다면 이에 관한 제목, 발행자, 발행년도, 기타 정보를 적어주십시오. 혹은 없을 경우 “없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호조치 중 의견 대립 시 해결방안 및 판단근거	12	아동 보호조치 중 분리/복귀 과정에서 아동과 어른(부모, 실무자 등)의 의견 대립 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귀하의 해결방안과 판단 근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아동 청문권 보장 시 충돌하는 가치 및 상황	13	지금부터는 아동 청문권 보장 시 가치나, 여러 상황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는 심각도에 따라 점수를 적어주십시오.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세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귀하가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해결 방법 및 아동 청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
아동의 간접적 의견 청취 방법	14	아동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간접적인 정보 획득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영유아 의견 청취 방법	15	영유아 의견을 획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실무자의 필요 역량	16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실무자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아동 의견 신뢰성 보장 방법	17	아동 의견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아동 청문권 보장시 긍정/부정 효과	18	아동 청문권 강소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기대효과,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아동 청문권 보장 관련 법/제도 방안	19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지원 정책 별 추가/개선사항	20	다음은 주최 별 아동 청문권 지원 정책 방안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아래의 정책과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 각 영역별로 추가/개선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	21	아동 청문권 보장 및 본 연구와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4-2〉 델파이 2차 설문 항목 및 내용 구성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아동 청문권의 명칭	1	아동 청문권을 학대피해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관계자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개념으로 볼 때의 명칭은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청문권 미보장 이유	2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동의하시는 항목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적합한 의견 청취방법	3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적합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전문가 요인 중요도	4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요인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환경적 요인 적합도	5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보호조치 조사 및 증언 시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환경적 요인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적합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의견 차이 시 적합한 문제해결의 주체	6	보호조치 단계에서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적합한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V 표시 하여 주십시오.
시스템 개선 요인 중요도	7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보호조치의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요인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아동요인 기준 중요도	8	다음은 아동 청문권의 아동 요인의 기준에 관한 항목입니다. [8-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8-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십시오.

세부 항목	문항	내용 구성
아동 청문권 보장 필요기준 중요도	9	다음은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항목입니다. [9-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9-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 원인 중요도	10	다음은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의 원인 요인입니다. [10-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0-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의견상충 시 의견 중시 주체	11	보호조치(예: 아동 분리, 보호조치결정, 원가정 만남, 원가정복귀 등)과정 중에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충된다면, 누구의 의견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느끼시는지 [11-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1-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보호조치 의사결정 단계 별 아동 의견 청취 중요도	12	다음은 보호조치의 각 단계입니다. 아동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사결정 단계에 [12-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2-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아동 청문권 보장 관련 전문가	13	다음은 현재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13-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3-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해외 아동 청문권 보장제도	14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해외에서 실행되고 있는 아동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 제도입니다. [14-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4-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	15	다음은 아동 보호조치 시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5-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5-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사법절차 내 아동 청문권 보장 방안	16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보호조치의 사법 절차 중 아동 청문권 보장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적합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 제3절 연구결과

### 1. 조사 참여자 분석 결과

#### 1)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 참여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교수, 쉼터/센터 관련 실무자를 포함한 40명이다. 이들을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응답자 직책**

분류	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
사법경찰관	3
가정보호사건조사관	5
변호사	10
아동보호전문기관실무자	4
교수	10
기타 (쉼터, 센터 관련 실무자)	7

응답자들을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 응답자 거주 지역**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1	1	2	1	2	1	1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	9	3	1	4	1	2

응답자 대상별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4-5>와 같다. 성비는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75%, 남성이 25%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0대가 45%로 가장 높게 조

사되었다. 학력은 석사와 박사가 각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20%, 석사 수료 17.5%, 박사수료 7.5%로 나타났다.

아동 관련 경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로는 11년 이상~20년 이하의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상~10년 이하가 40%, 21년 이상~30년 이하가 17.5%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이내 아동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한 비율은 있음이 80%, 없음이 20%로 나타났다.

〈표 4-5〉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0	25.0
	여자	30	75.0
	합계	40	100.0
나이	30대 이상	10	25.0
	40대 이상	18	45.0
	50대 이상	12	30.0
	합계	40	100.0
학력	대졸	8	20.0
	석사수료	7	17.5
	석사	11	27.5
	박사수료	3	7.5
	박사	11	27.5
	합계	40	100.0
관련 경력	1년 이상 ~ 10년 이하	16	40.0
	11년 이상 ~ 20년 이하	17	42.5
	21년 이상 ~ 30년 이하	7	17.5
	합계	40	100.0
1년 내 아동권리 관련 교육 수강 유무	있음	32	80.0
	없음	8	20.0
	합계	40	100.0

## 2. 설문 문항 응답 결과

### 1) 아동 청문권 관련 용어 정의

청문권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관계자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을 반영한 명칭으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 질문한 결과, ‘아동참여권’이 3.93으로 가장 높았으며, ‘피청취권’은 2.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6〉 아동 청문권 용어

세부영역		적합성	
		평균	표준편차
1	아동 청문권	3.38	1.067
2	피청취권	2.21	.801
3	의견 표명권	3.38	.721
4	의견 청취권	3.00	.959
5	아동 참여권	3.93	.859

### 2)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

#### (1) 발달단계별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

아동의 각 발달단계 별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에 대한 응답은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보장이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아기는 1.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7〉 발달단계별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

항목	보장현황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1.48	1.65	2.30	2.70	3.22	3.68	3.77
표준편차	.816	.770	.687	.823	.862	.829	.832

## ① 영·유아기

대체적으로 영유아기는 아동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며 부모 의존도와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고 아동의 청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 개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령에 맞는 청문 절차와 방법도 미비하다고 응답하였다.

## ② 학령전기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의사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여전히 부모 및 주 보호자로 부터 받는 영향력이 있어 아동의 객관적인 의견이라는 신뢰성을 갖기 어려우며 비교적 간단한 수준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청문 절차와 방법은 미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아동이 실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해도 사안을 실제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 ③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경우 스스로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견이 권리로써 보장되는 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저연령 아동군일 경우 특히 참여적/제도적 소통의 기회가 고학년에 비해 더욱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후로는 여전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전에 비해 참여적·제도적 의사소통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고도 응답하였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본인의 권리임을 알고 이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성인들은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아동은 성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보호조치 시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생 이후를 중심으로 진술조력인 등의 제도를 활용해 청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④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경우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나 아동의 청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 개념이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청문 절차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동 청문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 (2) 사법체계 내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

아동보호조치 시 경찰/검찰/법무부의 아동 청문권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실제 보장 현황에 대해 물었을 때 ‘법무부’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이 2.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8〉 사법체계 내 아동 청문권 관련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경찰	「아동학대 두 번 신고 시 즉시 분리 보호」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 ②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
검찰	1) 피해자인권과 설치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① 각 검찰청의 피해자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관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할 ② 각 검찰청에 수사 또는 검찰 행정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고 피해자 지원실을 마련, 피해자 상담 전용 전화를 운영 ③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조사 시 가족 등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운영하고, 범죄 피해자 조사 대기실 및 피해자 전용 조사실을 마련 ④ 범죄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 소환 제도를 적극 시행 ⑤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신변위험을 느끼는 피해자·증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담당관 등이 수사 기관·법정에 동행,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에 대해 안내 ⑥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출소사실 등 관련 정보를 통지하고 범죄 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도록 함
법무부	1) 진술조력인제도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로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풍부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방법 등을 조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진술조력인 지원 내용                          ① 피해자 사전평가 ②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③ 의사소통 중개 ④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div> 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 : 선정된 변호사는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쉽게 설명해 주고, 진술이나 증인 출석 시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해 주기도 함.

〈표 4-9〉 사법체계 내 아동 청문권 보장 현황

항목	보장도		
	경찰	검찰	법무부
평균	2.67	2.82	3.34
표준편차	.859	.790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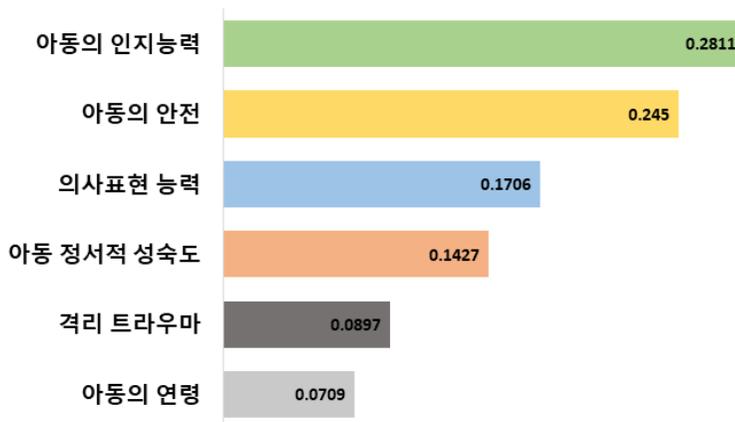
### 3) 아동 청문권의 보장 기준

아동 청문권에서 아동의 연령이나 인지능력, 성숙도의 중요도를 물었을 때 ‘아동의 인지능력’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연령’은 3.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0〉 아동 청문권 보장 기준

항목	중요도		
	연령	인지능력	정서적 성숙도
평균	3.78	4.18	3.98
표준편차	1.888	1.920	1.874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2차 델파이 조사에서 AHP 쌍대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아동 청문권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아동 요인은 아동의 인지능력 - 아동의 안전 - 아동의 의사표현능력 -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 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 - 아동의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I.C. 0.21)



〈그림 4-1〉 아동 청문권 보장기준

## (1) 아동 청문권의 보장 연령

아동의 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연령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응답이 수집되었다.

### ① 영아기

아동은 존재만으로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아기 부터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숙도와 인지능력은 연령 요인 외에도 수많은 영향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동별로 개별화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령을 기준으로 청문권 보장 여부나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 보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전 연령의 아동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연령에 따라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아동의 청문권을 수용하는 비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언어적 표현 등 성숙도로 인해 직접적 의견 표명이 어려운 영아기의 경우 이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리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통해서라도 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감정상태, 표정, 울음 등 비언어적 표현이나 건강상태 등을 관찰하거나, 진료를 통해 아동의 의사를 추정하는 등 성인이 민감하게 살피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청문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 ② 유아기

아동이 실질적으로 언어표현이 가능할 때 아동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아기를 아동 청문권 보장의 최소 연령으로 보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청문권을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아기 이후에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듣는 사람은 유아기 아동의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수용적인 청취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 ③ 학령전기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시기부터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만 3-5세 경부터 아이들이 나름의 인지를 갖게 되는 시기로서 적극적인 청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시기는 아동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언어적·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이며 혹, 언어적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더라도 청문이 반드시 언어로만 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청문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제한적인 의사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이 아동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④ 초등학생

이 시기는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목적형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응답하였다. 본격적인 학습을 통해 사고, 인지 능력, 사회적 기술 등이 발달, 확장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보조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으로 아동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 편의적, 보호자 편의적으로 청문권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 ⑤ 중·고등학생

현재 만 13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인(보호자)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의사를 묻고 있다고 보이며 의견 청취를 위한 제도나 정책들의 시행이 형식적으로라도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아동청소년의 독자적 진술권 등의 논의가 있기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 (2) 아동 청문권 미보장 이유

위의 질문처럼 아동 청문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다시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에 맞는 청취 절차/방법 미비'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아동 의견의 낮은 신뢰성'은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1〉 아동 청문권 미보장 이유

세부영역		동의	
		평균	표준편차
1	아동의 충분하지 않은 의사표현 능력	3.60	.841
2	아동의 높은 부모 의존도, 영향도	3.85	.736
3	아동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	3.85	.933
4	연령에 맞는 청취 절차/방법 미비	4.05	.857
5	표명된 의사의 실질적 반영 불가	3.08	1.133
6	아동 의견의 낮은 신뢰성	2.74	.880

사법체계 내 경찰/검찰/법무부 내에서 아동 청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경찰

가. 이웃 조사 부족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의견이나 진술 외에 아동 주변인에 의한 정보는 아동의 바람이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대부분 피해당사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이웃 등 주변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주변사람들이 학대 정황에 대해 잘 모르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 주변에 대한 수사 및 조사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아동의 청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나. 행정 기준만 강조

현재 일률적으로 2회라는 신고 횟수로 분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아이 상태의 심각성, 학대 행위자의 상황, 인지능력,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2회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분리보호되는 경우에 아동의 바람과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다. 아동학대 및 아동 청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 부족

주로 중범죄를 다루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아동학대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으며, 관련 정보수집이나 의사소통을 주로 성인들과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성인 부모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학대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아동에게 학대 피해 경험을 직접 묻기 보다는 물리적 흔적이나 주변인 진술을 통해 학대 증거를 찾고자 한다고 지적하였다.

#### 라. 성인 중심 조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보호자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 아동과의 면담 등도 수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건 처리 시 아동 의견보다 부모 의견 중심으로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었다.

#### 마. 아동 청문권 보장 관련 환경 미비

대면조사 방법으로 아동학대 사건 조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분리조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해 일시 또는 장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동보호를 하게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고 이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 ② 검찰

#### 가. 성인 중심 조사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성인 중심의 의사소통과 정보에 기초하여 개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특히 행위자가 부모일 경우, 행위자인 부모 외에 다른 부모(비가해자)의 동행 하에 진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많다고 지적되었다.

#### 나. 당사자인 아동이 출석하지 않음

아동보호 사건 처리 시 검찰 단계에서 피해아동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도 드물어서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학대, 폭력 등의 사건으로 기소된 기록을 중심으

로 검토해볼 때 주로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토대로 처분 의견을 결정하는 경우가 잦다고 응답하였다.

#### 다. 구체적 지침 부재 및 진행절차 안내 부족

아동의 입장에서 청문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고 지적되었다. 그나마 일부 존재하는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사항이며, 특별한 고려(연령, 장애 등)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아동사건이나 성범죄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거나 이해도가 높은 수사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사건처리 절차, 재판 절차 등 공식 절차나 사건 처분 결과 등에 대해 아동이 잘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예 아동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거나 역으로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중복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검찰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며 심적인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이에 필요한 보호지원제도가 있어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실제 검찰 등 사건진행 과정에 실시하였으나 이런 제도가 어떤 제도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아동에게는 더욱 본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및 절차 등이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이 있어야 하며 그 아동이 동의하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실제로 절차 진행 정보 통지나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는 검사가 기소 한 이후, 출소 등 형 집행상황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만 각각 정보 제공 신청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각 단계별 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검찰로부터 위 지침의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안내받거나 신청할 기회가 없는데 아동의 경우는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위 지침의 내용들을 안내하고 신청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안내하는 등 해당 내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 ③ 법무부

#### 가. 보조 인력의 실효성 부족

아동보호사건에서 피해아동 변호를 위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기도 하나, 피해아동을 만나거나 피해아동이 의견 진술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응답하였다.

진술조력인은 진술 전 피해아동과 상당시간 면담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여 조력을 하는 전문가임에도 법정단계에서 진술조력인 요청 시, 담당재판부에서 피해아동을 만나보지 않은 중립적인 조력인이 있는지를 묻는 등 진술조력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대한 기관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와는 달리 공판단계에서 진술조력인 없이 피해아동의 법정 증언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관계인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나 대부분은 성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고 지적되었다.

#### 나. 비가해 보호자로 인한 진술의 오염 가능성

신뢰 관계가 있는 자는 행위자(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다른 부모(비가해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 다. 비포괄적인 아동 청문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원활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연령 아동이나 장애아와 같이 특별한 개입이 필요한 아동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었다.

## 4) 아동 의사표현 청취 방법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문항별 적합도를 물었다. 분석 결과, ‘아동관찰, 부모면접, 전문가 의견 청취를 종합한 사정결과’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자를 통한 청취’가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2〉 다양한 아동 의사표현 청취 방법

세부영역		적합성	
		평균	표준편차
1	비언어적 표현 관찰(표정, 울음, 그림, 놀이 등)	4.32	.526
2	보호자를 통한 청취	3.11	.606
3	전문가를 통한 청취	4.10	.598
4	아동이 의견을 말할 때 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	4.03	.668
5	아동관찰, 부모면접, 전문가 의견 청취를 종합한 사정결과	4.65	.580

위 내용과 더불어 응답자들의 추가 개방형 응답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 (1) 비언어적 표현을 통한 청취

단순한 언어적 표현 외에 아동의 감정, 행동, 표정 등의 다양한 의견표현 방법(자극에 대한 반응, 애착유형, 심리적 안정감)에 주목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지적/정서적 발달 지연 혹은 나이가 어린 아동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청취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비언어적 표현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민감성, 공감, 수용의 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진다고 응답하였다.

### (2) 대리인(보호자)을 통한 청취

학대행위자가 아닌 비가해 부모나 조부모 또는 아이 돌보미, 친한 친구의 부모 등 아동의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대리인, 또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청취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대리인이 아동과 함께 동석하여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3) 전문가를 통한 청취

여러 사정이 있는 아동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현재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진술조력인, 진술분석가와 같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부모나 교사 등은 아동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반면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조력인과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동의 의사표현과 소통을 돕는 전문가가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아동발달 및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진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아동을 양육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물리적인 자원과 인적 자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발달 및 아동심리 전문가 등을 통한 아동의 행동, 몸짓, 신체상태, 표정 등을 통한 아동의 의사 확인과 관련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는 계속 최신화하여 아동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되었다. 이 외에도 아동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자문(심리검사 등) 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 등도 함께 제안되었다.

#### (4) 놀이, 그림 등을 통한 확인

조사자가 해당 아동과 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눈높이로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동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또한, 익숙한 환경에서 놀이를 통한 방법이나 그림 등을 활용한 투사 검사나 아이들이 몸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 (5) 충분한 시간 확보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견 청취자와 아동 간의 라포 형성을 할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라고 응답하였다.

#### (6) 기타

아동의 요인을 고려한 메시지의 완성도 보다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아동 메시지의 사실 여부, 내용 등은 아동의 나이, 성숙도,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중개하는 자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에 따라 청취의 정도와 정보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중개자의 “자의”가 개입되는 경우에 있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수 있으므로, 아동이 의

사를 제대로 표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청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면밀히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 청문권은 아동이 말하는 대로 이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해당 아동의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의 표현 양식을 아동의 맥락과 발달단계에 맞추어 별도로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 5) 간접적인 아동 의견 청취 방안

이외에도 아동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간접적인 정보 획득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동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간접적 정보획득 방법의 적합성을 물었을 때 아동 심리상담 및 심리결과 기록이 4.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 주변인 조사가 4.15로 뒤를 이었다.

〈표 4-13〉 간접적 아동의견 청취 방안

내용		적합성	
		평균	표준편차
1	아동 SNS 기록	3.33	.982
2	아동 심리상담 및 심리결과 기록	4.36	.743
3	아동 일기장 및 메모 기록	3.59	1.044
4	아동 주변인 (교사, 이웃, 친구) 조사	4.15	.709
5	기타	3.27	.647

이러한 간접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중에 예상 가능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들은 대부분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및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동의 개인 기록은 신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개인 기록을 공유하는데 있어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청문권 외의 다른 권리들 또한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인 아동의 동의를 통해 정보를 획득 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SNS의 경우, 아동 발달과 연관된 감정적인 불안정성

을 바탕으로 기재되거나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수 있어 아동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의견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아동 주변인 조사 시 전언을 통해 본질이 흐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입을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특히 아동 주변인 조사 시 아동이 처한 상황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어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6) 아동 의견 신뢰성 보장

아동 의견을 청취하는 직·간접적 절차에서 아동 의견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 친화적 의견 청취 환경 보장

아동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이 있는 그대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하였다.

### (2) 가해자와의 분리 진술

가해자와의 분리된 환경에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며 아동의 의견 확인 이후 아동이 신뢰하는 주변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 (3) 아동 전문가의 협조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 동일한 응답을 하는지의 여부와 아동 상담 전문가를 통한 청취,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한 사정 정보의 다각화 즉,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종합하고, 여러 번의 의견 청취를 통해 일관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 (4) 기타

이 외에도 아동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어 신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변경된 의견도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아동이 의견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인도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의견이 반복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아동의 의견 반복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7)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요인

### (1) 포괄적 아동 청문권 보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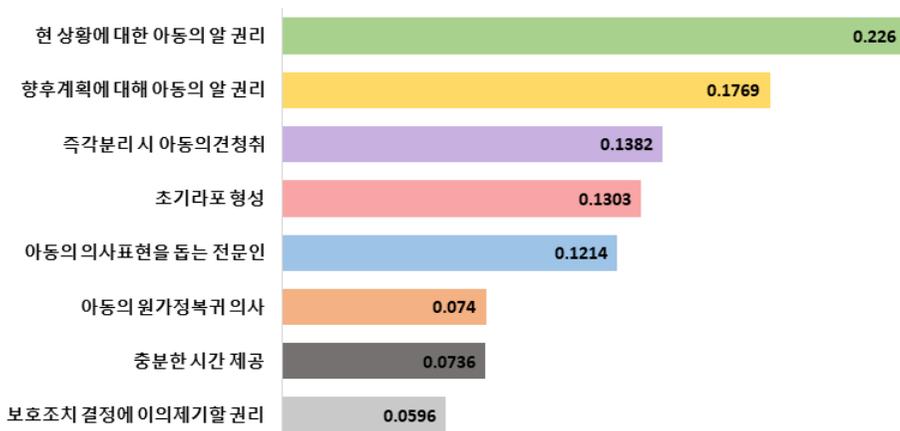
아동 청문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항별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향후 절차 및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알 권리’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속적 원가정복귀 요구’가 4.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4〉 포괄적 아동 청문권 보장 요인

세부영역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초기 라포 형성	6.28	.784
2	현 상황(보호조치)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알 권리	6.43	.636
3	향후 절차 및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알 권리	6.48	.554
4	아동 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	6.48	.877
5	아동 주변인 조사	5.70	1.018
6	아동의 고지된 동의 획득	5.90	1.008
7	아동이 원하는 거주지에 대한 의견 청취	6.10	.955
8	형제 자매와의 동거에 대한 아동의 의견 청취	6.05	.959
9	아동보호기관 배치로 인한 소속 학교 잔류 혹은 변경	5.82	.984
10	보호기관 유형(쉼터, 일시보호기관) 선택에 대한 아동 의견 청취	5.90	.928
11	보호 기간에 대한 아동 의견 청취	5.75	.954
12	서비스 계획수립 시 아동 의견 청취	5.85	.975
13	프로그램 참여 중 아동 의견 청취	5.88	1.017
14	아동 청문권에 대한 보호자 교육	6.00	1.076
15	전문가 간 아동의 연락처 공유 동의 획득	5.37	1.055
16	진술 시 비디오 촬영 등 녹화/녹취 동의 획득	6.06	.891
17	심리검사 결과 공유 획득	5.47	1.086
18	기관의 홍보지, SNS 등에의 개인초상권 보호 (추가)	6.02	1.025

세부영역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9	아동의 원 가족 복귀 의사	6.23	.931
20	부모의 지속적 원가정 복귀 요구	4.58	1.375
21	아동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 고지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인지할 시간을 주는 권리	6.35	.802
22	아동이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6.23	.742
23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제3자로부터 독립된 의견을 구할 권리	6.03	.873
24	필요시 아동을 위한 통역인(혹은 수화인) 등을 비롯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	6.33	.806

아동 청문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항별 중요도를 확인한 후(〈표 4-14〉 참고), 중요도가 높게 나온 항목을 중심으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다시 질문하였다.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요인의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현 상황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초기 라포 형성’-‘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참여’-‘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보호조치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I.C. 0.19)



〈그림 4-2〉 포괄적 아동 청문권 보장 요인

이외에도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환경적 요인의 적합도를 물었을 때 ‘가해자와의 분리 진술’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상/서면 등의 증언 채택’이 4.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5〉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환경적 요인

세부영역		적합성	
		평균	표준편차
1	가해자와의 분리 진술	4.85	.362
2	반복된 진술 최소화	4.17	.747
3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동석인) 선택	4.25	.707
4	영상/서면 등의 증언 채택	4.10	.900
5	아동 관련 정보 교환 시 아동의 사생활 보호	4.13	.853

## (2)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요인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보호조치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요인을 물었을 때 ‘적정 사례 수 배정’이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홍보/캠페인’이 3.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6〉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요인

세부영역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아동기관 내 법률자문팀 확보	4.15	.770
2	아동 청문권 관련 예산 확보(상담실, 의뢰비용 등)	4.30	.608
3	적정 사례 수 배정	4.43	.675
4	홍보/캠페인	3.64	.743
5	지역 간 전문인력 및 물적 자원 상이 등 편차 해소	4.10	.632
6	담당자 보호 체계 구축(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음)	4.28	.640

### (3)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실무자 역량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실무자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물었는데, 응답 대부분은 실무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관련되었다. 아동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아동에 대한 따뜻한 마음, 아동을 대하는 기술,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 지식, 공감능력,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하는 기술, 의사소통 방법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덧붙여 아동 청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고취, 아동 보호조치 관련 절차 및 세부지침 숙지 등이 필요하며 아동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문 및 슈퍼바이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조사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요인을 물었을 때 ‘인권 감수성 강화’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성 강화’가 4.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7〉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요인

세부영역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전문성 강화(관련 교육 참여 등)	4.31	.569
2	인권 감수성 강화(아동을 존중하고 청문권을 권리로 인식)	4.64	.537
3	아동의 요구와 의사가 반영된 사례관리 수행	4.38	.590
4	전문적인 슈퍼비전 체계 구축	4.32	.572

### 8) 아동 청문권 주체역할 적합도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 보호조치 시 피해아동의 의견청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에게 아래의 시행령을 안내 후 아동보호조치 중 아동의 청문권과 관련하여 각 주체별 역할 적합 정도를 물었을 때 ‘아동복지시설’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등)**

-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표 4-18〉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주체별 역할 적합도**

구분		적합도	
		평균	표준편차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74	.891
2	사법경찰관	3.29	1.037
3	보호시설/의료기관	3.74	.760
4	아동복지시설	3.89	.809
5	시·도지사/시·군·구청장	2.92	1.010
6	가정보호사건조사관	3.58	.948
7	법원공무원	3.03	.944
8	보호관찰관	3.21	1.044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3.87	.935
10	수탁기관의 장	3.43	.899

주체별로 역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아동의 청문권을 가장 잘 실천하기에 적합도가 높다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및 책임감이 증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아동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중개 역할을 맡길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기피 업무에 해당하여 담당자가 자주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신뢰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 (2)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의 아동에 대한 청문권 보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장에서 만나는 사법경찰관 대부분은 아동 청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의 역할이 중첩되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경찰이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는 상황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 (3) 보호시설/의료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수탁기관의 장은 사건 발생시 1차적, 직접적으로 아동을 접하기 때문에 역할 적합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시설의 담당자가 아이의 생활 등 전반적인 이해도와 라포 형성 면에서 역할 적합도가 가장 높다고 강조하였다.

###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신뢰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법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아동의 발달 상태에 대한 이해나 아동상담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증거나 아동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담당하거나 동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 (5)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 (6)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아동보호사건의 조사관으로 보여지고, 법원공무원의 범위에도 포함되므로, 조사관은 청문권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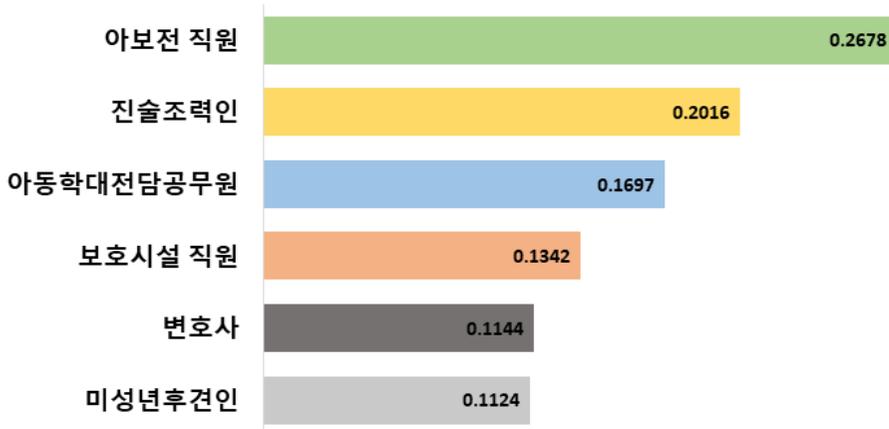
####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기관 성격상 아동보호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주체가 가장 적극적인 아동 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8) 기타

수사기관 조사 시 아동에게 좀 더 편한 환경 제공과 아동 심리 전문가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서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피해아동 상황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는 피해아동과 라포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동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의견 청취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당 업무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성과 여러 기관 보다는 단일한 기관에서 집중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쌍대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진술조력인’-‘아동학대전담공무원’-‘보호시설직원’-‘변호사’-‘미성년후견인’순으로 나타났다. (I.C. 0.16)



〈그림 4-3〉 아동 청문권 보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 우선순위

특히 아동 보호조치 중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적합한 대상을 물었을 때 ‘아동 ombuds퍼슨’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권리 보장원이 3.2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9〉 의견 차이 발생 시 문제 해결의 주체

세부영역		적합성	
		평균	표준편차
1	아동 ombuds퍼슨 (아동권리옹호관)	3.74	.751
2	아동보장권리원	3.28	.793
3	지자체 사례관리팀	3.67	.797
4	기관 내 슈퍼비전 체계를 이용한 자체 해결	3.35	.770
5	타 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3.70	.758

## 9) 아동 청문권과 관련된 문제

현재 아동 보호조치 중 아동의 청문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물었을 때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부족’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 간 상이한 관련 지침’이 3.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0〉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 요인

	세부영역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	4.49	.683
2	아동의 권리행사를 지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부족	4.21	.801
3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관점 부족	4.36	.778
4	보호아동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계획 부족	4.05	.686
5	보호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	4.00	.679
6	보호과정에서의 아동 청문권 관련규정 중요성 강조 부족	4.00	.761
7	아동보호 전문가 인력 양성 부족 (관련 교육)	4.25	.707
8	실무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법/규정) 결여	3.97	.668
9	보호조치 과정 및 절차 세분화 부족	3.62	.815
10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인적 장치 부족 (아동후견인, 법정대리인, 사례 관리자 등)	4.25	.776
11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실행지침(하위법, 행정지침) 부족	4.05	.769
12	지자체 간 상이한 관련 지침	3.42	.976
13	한 실무자 당 과도한 담당 사례 수	4.17	.844

이외에 아동 청문권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주관식으로 질문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응답하였다.

### (1) 의견 상충 이슈

#### ① 전문가-아동

전문가와 아동의 의견 상충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보호조치 이후 사례관리단계에서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조치 후 분리 보호되는 기간이나 향후 진행될 절차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② 보호자-아동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을 '15세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청문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아동보호 사건이 아동의 법적 또는 실제적 보호자와 아동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아동이 성인 보호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더라도 언젠가 원가정복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아동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아동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데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아동의 의사와 다른 보호조치나 아동이 원하는 부모와의 강제격리 조치 등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 아동 청문권 보장 환경 마련

아동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강제로 진술이나 의견을 강제당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앞에서 진술하지 않아야 하고 가정 내에서 분리된 공간이더라도 보호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이 가능한 시/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보호조치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최대한 아동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보호자 또는 시설보호자가 반복해서 아동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아동이 자신에 관한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알 권리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동의 의사표현 정도와 이를 확인하는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아동 진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담당자들의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아동과 라포나 신뢰 형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 (3)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청문권 행사로 인해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죄책감, 불안함 등 정서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청문권 행사 자체가 자칫하면 아동에게 충격 및 불안 등 2차적 학대(심리적 학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교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아동이 단순히 원가정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열악한 시설환경이나 단체 생활의 강한 규율,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뿐

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등교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전학, 친구들과의 이별과 적응의 문제 등은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다. 이로 인하여 아동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에 보호조치 이후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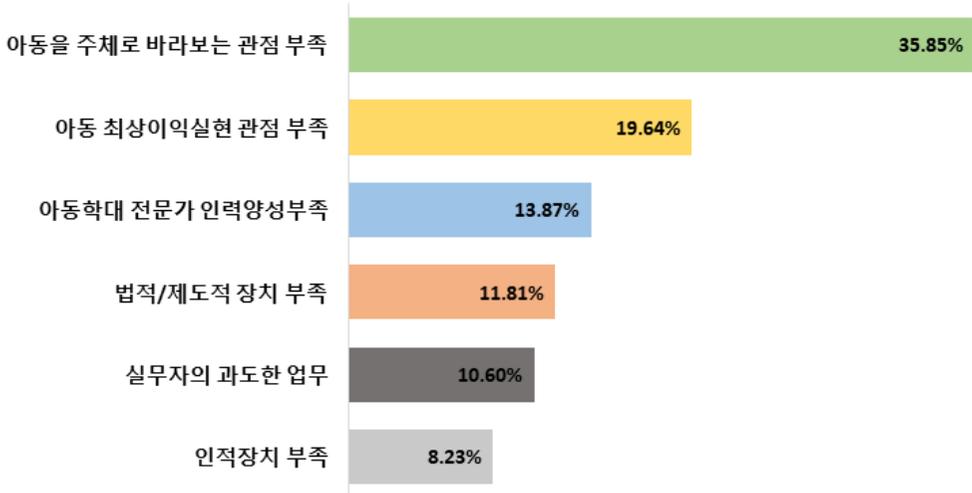
#### (4) 아동 청문권에 대한 오해 및 전문가의 인식 부재

아동 청문권이 무조건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동 청문권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전문가의 인식이 부족한 경우, 아동 청문권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전문가의 잘못된 실천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고 지적되었다.

#### (5) 전문가의 보호 장치 부재

보호조치 결정 이후의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민원에 민감하여 지침, 규정보다 민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아동 중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2차 조사에서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요인을 쌍대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아동 최상 이익실현 관점 부족’-‘아동학대 전문가 인력 양성 부족’-‘법적/제도적 장치 부족’-‘실무자의 과도한 업무’-‘인적장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I.C. 0.18)



〈그림 4-4〉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요인

추가로 아동 보호조치 중 아동의 청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사항을 물었을 때 ‘자신에 관한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4.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 보호조치(격리 등)에 관한 보호자 무조건적인 반대’가 3.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1〉 보호조치 중 아동 청문권 관련 발생 가능한 문제

내용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	알 권리 (가정 갈등 상황에 대한 상황 안내)	4.20	.723
2	고지된 동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	4.22	.768
3	자신에 관한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알 권리	4.33	.730
4	아동의 연령	3.83	.931
5	아동의 의사표현 가능 정도	4.08	.917
6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	3.85	.921
7	아동이 알고 있고, 추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3.63	.740
8	아동의 의견 반복으로 인한 신뢰도 저하	3.37	.740
9	아동 보호조치(격리 등)에 관한 보호자 무조건적인 반대	3.33	1.118
10	보호자의 아동 양육 능력 (정신질환, 장애, 경제능력 등)	4.02	.920
11	대안 양육자 부재 및 양육 능력 부족	3.93	.859

내용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12	보호자의 부재 및 연락 두절	3.72	.933
13	부모의 강제적인 면접 교섭권	3.63	.979
14	아동의 보호자(학대 가해자) 앞 진술	4.15	1.051
15	전문가의 인식(보호 절차 및 서비스 관련 지식) 부족	4.07	.730
16	전문가의 인권 감수성 부족	4.22	.832
17	전문가 교육 훈련 부족	4.20	.853
18	보호조치 이후 사후 사례관리 부재	4.23	.810
19	보호조치 이후 학교 출석 문제 / 전학 문제	3.90	.632
20	찾은 법정 출두	3.65	.802
21	강제적인 주거지 선택	3.97	.650
22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서비스) 부족	3.97	.768

## 10) 보호조치 단계별 아동 청문권 보장 방법

아동학대 발생 시 각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이다.

### (1) 신고

#### ① 아동 의견 경청 및 신뢰

아동을 신속하게 격리조치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의 말을 경청,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혹시라도 아동의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된다 해도 아동의 말을 일단 믿고 진행해야 하며,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학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② 아동의 비언어적 표현 고려

아동과 부모의 관계나 학대 지속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동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표현되지 아니한 욕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동의 표정, 몸짓, 그림, 놀이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 및 의견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고 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동이 본인의 의사와 욕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신뢰관계형성 및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 특성에 따른 반응을 고려할 수 있는 아동발달 단계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아동이 사건의 신고로 추후 자신이 피해를 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이 담보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③ 전문가를 통한 청취

모든 신고 아동의 감정이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 발달수준 및 연령대에 맞는 청문 전문가가 필요하며 특히 영유아기 아동과 장애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④ 청취자에 대한 교육

아동을 대면하는 전문가에게 라포 형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아동 연령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질문방법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⑤ 아동 안심시키기

아동이 신고 시에 바로 출동하여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이 신고한 후, 신고로 인한 불안과 불이익,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안정시키고 추후 절차 등을 안내하며, 아동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 주고,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⑥ 기타

아동의 학대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 당사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럴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단계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응답하였다. 신고의무자는 아동의 학대피해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아동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대행위자가 아동이 학대사실을 외부에 노출시켰다고 확대해석하여 아동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해 아동에게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2) 응급조치

### ① 충분한 설명과 의견청취

의료적 처치(치료)를 포함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하며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고 안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는 이유, 이후의 과정, 시설로 옮겨지게 될 경우 절차, 72시간 이후에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며, 아동이 시설 보호를 원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시설 보호가 불가피할 경우 그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급조치로 인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이동할 때 죄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아동의 의견과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협력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동이 시설에 보호될 경우 분리 직전까지의 생활과 분리 이후 생활 패턴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② 전문가 의견 고려

응급조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동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판단 이후 아동에게 자세히 설명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③ 아동이 원치 않아도 필요시 분리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것과 아동의 욕구가 상충될 수 있고, 아동이 분리에 불안을 느끼거나 거부감이 심한 경우일지라도 반복적인 학대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에게 제공될 환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이 적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도와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응급조치는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④ 지침마련

응급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아동을 대면하는 초기에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나 지침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아동 외에도 연령, 장

애여부, 응급상황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인 지침, 표현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 ⑤ 기타

분리 조치 시 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이외에 시설 선택 시 아동의 욕구나 성격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 (3) 보호명령 청구

#### ① 전문가 의견 고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조회 결과를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다만, 진단소견 등을 조회할 때, 전문가 간 정보공유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전에 아동 본인의 의사 결정을 최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전문가나 의사 진단서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신고출동 현장의 분위기와 상태를 반드시 확인 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아동이 직접 듣고 아동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과정 전반에서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② 충분한 설명과 의견청취

아동의 의견이 가해자나 측근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안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명하며, 아동의 생각, 감정 등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반드시 아동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 대응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호명령의 결과로 아동의 신상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아동에게 이러한 명령 청구와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후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③ 기타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속한 결정을 통해 피해자인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조사 심리와 확인 과정이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히 첨부하고 보호명령 청구의 취지를 판사에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4) 법적증언

① 아동친화적 청문 환경 마련

아동이 자유의지에 따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아동 친화적인 법정 (예: 아동법정 등)의 설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알려주고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진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아동이 영상 녹화 증언, 직접 증언 등 증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감정, 생각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절히 반응해 주어 정서적으로 안정감,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② 진술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법률상 지원 인력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 이해, 아동 학대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차이 이해 등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아동에게 진술조력인제도, 국선변호인 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도 등 지원내용을 제공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이 가해자인 경우 다른 한쪽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뢰관계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변호사로 명시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신뢰관계인은 실제로 아동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아동이 보조인의 참석을 원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지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아동의 법정 증언 시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의무사항으로 지원받기에는 진술조력인력과 예산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법정 증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진술을 오염시켜 재판이 무죄가 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에게 법정에서의 증언과 형사사법에서의 증언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만 17세 미만의 아동은 선서능력(선서에 관한 특별행위능력(特別行爲能力))이 없는 등 증언에 있어서의 부담이 성인에 비해 가벼울 수 있는 부분과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진술거부권 등의 행사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③ 법정 출석 최소화 및 사후 관리 필요

법정출석 경험이 아동에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반복적인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성폭력은 물론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수사, 검찰수사, 법원단계에 이르기까지 같은 피해내용에 대하여 재차 진술하는 자체가 피해를 재회상하고 상기시키는 등의 고통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된 진술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드시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의 의사를 참고하여 증언의 형태(영상녹화, 서신 등)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정 증언 시 학대행위자와 함께 불러 법정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학대행위자와 아동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아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법정증언 이후 학대 행위자에 대한 양가감정과 죄책감 등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증언 전 후로 심리상담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④ 법적 한계

아동학대처벌법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에서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성폭법 관련 규정을 준용(30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규정, 31조 심리비공개, 32조 증인지원시설, 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35조 진술조력인, 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하고 있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가 드물고, 진술조력인 등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규정상 큰 문제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한정하고 있

어,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 상의 위 규정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것이 필요하고, 라포가 형성된 아동복지 기관 담당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진술조력인의 조력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 (5) 분리조치

### ① 개별 아동중심 의견 청취

분리조치 시 개별 아동의 상황 및 의견에 맞추어 복지시설을 선택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형제자매 분리나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며 집에 있고 싶은지를 확인하는 단순한 형태의 질문보다는, 가정 외에서 보호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민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분리조치를 취하는 이유, 이후의 과정, 시설 입소 시 절차, 시설 보호 외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가정위탁, 입양, 친인척 보호 등 선택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시설 보호가 불가할 경우 그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소통할 수 있는 창구와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장치도 설명하여야 한다. 이후 아동이 시설에 입소할 경우,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② 보호자 참여

보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보호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보호자가 아동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비가해 보호자 등) 분리조치 이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고, 보호자 및 아동의 의견과 질문, 감정에 반응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보호자를 통한 사전 정보를 최대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 ③ 현실적 어려움

반면, 보호계획수립에 있어서 아동 및 보호자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는 다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 부모의 반대로 아동 분리보호가 어려운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응급으로 분리한 이후 보호자의 진정(민원)으로 인한 현장의 고충도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필수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 ④ 기타

분리조치로 인해, 피해아동이 보복성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전문가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학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무조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한 후, 그것을 성과인 듯 내세워서는 안되며,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동을 보호하게 될 시설 및 유관기관과 아동 보호조치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계획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6) 가정복귀

## ① 아동 친화적 조력

가정복귀에 대한 아동의 의사 확인은 적절한 시기에 아동이 편안해하는 안정된 공간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복귀 결정 과정 및 가정복귀 후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며 혹, 가정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이루어질 노력,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아동에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② 전문가 의견

원가정 복귀에 대하여 아동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복귀할 원가정이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 ③ 현 제도 개선

아동 분리보호 기간이 만료되고 원가정 복귀 절차로서 피해아동의 안전여부를 평가하는 동안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야 하고, 원가정 복귀에 대한 아동의 의사가

명확하고, 안전한 가정환경 및 부모의 양육, 상담 치료가 완료된 때 원가정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가정복귀 절차에 대한 혼란이 많으므로 매뉴얼, 지침, 근거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종료된 아동의 시설 퇴소 시에 퇴소 후 가정복귀 정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④ 적극적인 사후관리

적극적인 사후관리 부재로 잠재적인 학대요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방문은 필수적이며 방문 시 아동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행동 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교 교사 및 지인을 통한 면담도 필요할 것이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감수성 및 책임성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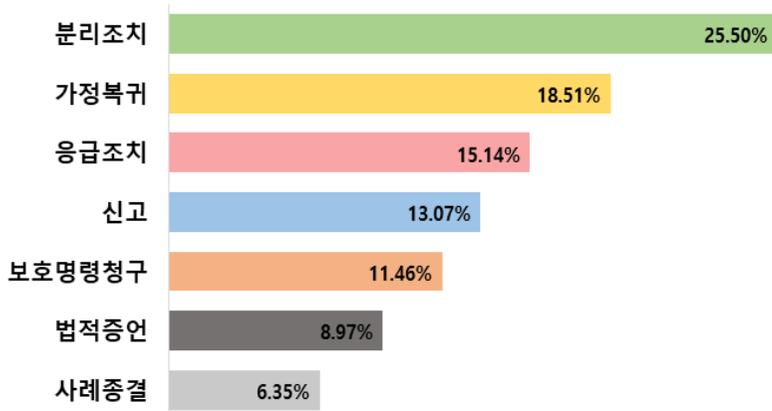
분리 직후부터 원가정 복귀에 대한 계획을 아동 및 보호자와 함께 수립하며, 그 과정에 대해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 노력 및 점검을 하고, 복귀 이후 외부 개입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지 않도록 분리부터 가정 외 보호기간 동안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복귀 이후 외부개입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거부로 재학대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호 간에 공동 계약 및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가정복귀는 아동의 의사보다는 행위자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행위자의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⑤ 기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가족 재결합 서비스 진행내용이 아동보호시설에 공유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분리 조치된 기간 동안 행위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상담하면서 태도 변화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에게 정확히 제공하여, 이를 근거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어떤 절차로든 아동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세심한 평가와 의사 파악할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최상의 제도나 법규도 다 무용지물이며 기관 내에서 가정 복귀를 중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동의견 청취가 보호조치 단계별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 분석한 결과, ‘분리조치’-‘가정복귀’-‘응급조치’-‘신고’-‘보호명령청구’-‘법적증언’-‘사례종결’ 순으로 나타났다. (I.C. 0.15)



〈그림 4-5〉 보호조치 단계별 아동의견 청취의 중요도 높은 순

## 11) 아동 청문권 관련 해외 제도

아동대리인 - 보호명령 등을 신청할 때나 명령 이후 법원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에 아동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독립방문자 - 지자체와 독립되어 활동, 아동 배치 이후에 아동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아동의 의견 청취  
 독립점검관 - 지자체와 독립되어 사례검토 및 아동상황 수시 점검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제928조).

해외에서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을 제시한 후 해당 제도의 필요도와 중요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대리인’의 필요도가 4.18, 중요도가 4.23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방문자’의 필요도가 3.74, 중요도가 3.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2〉 해외 아동 청문권 지원제도

구분	필요도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아동대리인	4.18	.790	4.23	.742
2 독립방문자	3.74	1.005	3.68	.989
3 독립점검관	3.84	.973	3.82	.926
4 미성년후견인	4.11	.953	4.13	.777

(1) 기존의 미성년 후견인의 범위 확대

외국에 있는 장치도입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아동 전문 국선변호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재 민법상 미성년 후견인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 제한·정지 사유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혐의 등을 인정받아 상실·제한시키는 경우와 같이 확실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후견인 선정이 매우 어려워 제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되었을 때 이를 대신할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미성년후견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친권 상실 시 미성년 후견인 선임 건의 청구부터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만큼 신상보호 측면에서 아동의 청문권에 대해 교육하고 그에 따른 정기적인 감독이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 아동대리인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아동 대리인제도 등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대리인은 아동과 충분한 교감 및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방문과 점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 독립방문자, 독립점검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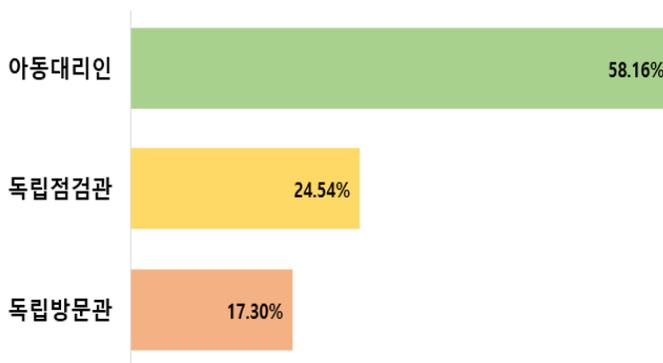
독립점검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체계 자체를 감독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악

하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란 염려도 존재하였다. 아동에게 제대로 된 지원과 보호가 되는지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 본인의 의사를 표하는 것도 피로도가 높고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독립방문자와 독립점검관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선정하기 보다는 한 기관에서 동일인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하였다.

#### (4) 역할 중복, 시기 상조

아동대리인은 현재 국선변호사제도가 시행중이고, 독립방문자, 독립점검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친권 제한 및 상실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직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자체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자나 점검관은 현시점에서 논의가 성급하다고 보여지며 현행 제도의 운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2차 조사 시 해외의 아동 청문권 보장제도의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아동대리인’-‘독립점검관’-‘독립방문관’ 순으로 나타났다. (I.C. 0.14)



〈그림 4-6〉 해외의 아동 청문권 보장제도의 우선순위

## 12) 보호조치 중 의견대립

아동 보호조치 중 분리/복귀 과정에서 아동과 어른(부모, 실무자 등)의 의견 대립 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해결방안과 판단 근거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 (1) 해결방안

### ① 아동 의사 우선적 반영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학대와 분리 상황의 특수성(보호자 및 가해자에 대한 안전장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동의 나이와 학대유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 시 아동학대 재발이 되었을 때 신고 및 분리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아동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전에 아동이 가장 신뢰하는 대상과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하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아동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응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여 아동에게 분리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아동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강제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하며 거부하는 사유를 청취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아동은 원가정 복귀를 원하지만, 복귀 조건이 미흡하거나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복귀를 진행하지 않아야 하며 아동에게 복귀가 어려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해결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정복귀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등 아동보호사건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② 실무자/주변인의 의견 반영

학대피해아동 분리 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비추어 아동의 의견이 최적이 아니라면 아동을 설득하는 일을 우선한 다음 아동의 의견과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를 통해 사건의 사례관리과정에 대해서 전달받고, 실무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과 자주 대면하는 어린이집 교사, 학교 담임교사 등의 조언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 ③ 지침/매뉴얼 참고

응급상황인지 일반상황인지에 따라 지침,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판단한 후 그

에 맞게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침에 근거하여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아동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되 그 결정이 아동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④ 갈등에 대한 이해

의견 대립 자체보다 대립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하기 위한 소통을 통해 의견대립 없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분리 시에는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원가정 보존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복귀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 대립을 조정하는 절차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단계적인 재결합, 조건 충족 시 재결합 등 아동과 부모의 의견대립을 조정하는 절차 자체가 원가정 복귀 준비 과정이라고 제안하였다.

### (2) 판단 근거

#### ① 아동 자체

아동 자신의 삶에 관한 일이므로 아동의 안전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즉, 보호조치 시 의견이 대립될 경우 무엇보다 아동의 상황과 의사가 판단에 주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② 법률·지침 참고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아동학대 관련 법령, 업무 수행 지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관련 법률 등 관련 업무매뉴얼 등을 참고한다고 응답하였다.

#### ③ 전문가와의 협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의 사례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 13) 아동 청문권 보장 시 발생 가능한 가치 및 상황 충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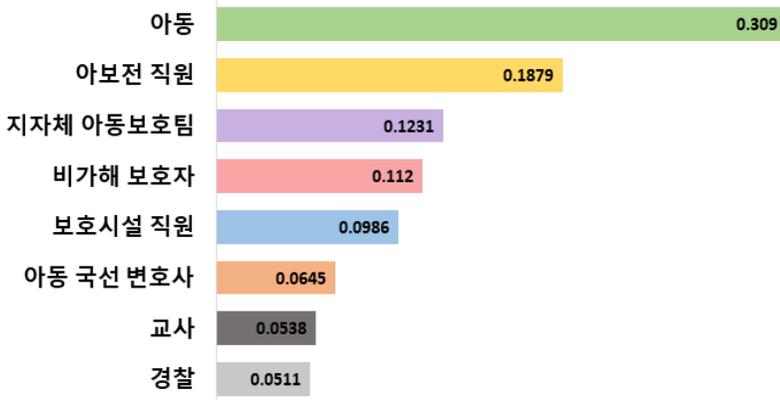
아동 청문권 보장 시 가치 및 상황이 충돌하는 상황별 심각도를 물었을 때 '아동이 보호조치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이 악화될 경우', '전문

가 판단 시, 아동의 의견이 보호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이는 경우'가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관련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3> 아동 청문권 보장 시 발생가능한 가치 및 상황 충돌 상황**

	내용	심각도	
		평균	표준편차
1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 각 보호시설의 일과로서 강제로 종교 행사를 참여하게 하는 경우	4.20	.687
2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나 아동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4.33	.694
3	아동의 형제자매가 함께 보호되지 못할 경우	3.93	.694
4	아동이 법정 및 가해 보호자 앞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40	.900
5	아동의 분리 조치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3.85	.802
6	아동이 보호조치를 거부하여 더 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4.28	.679
7	아동의 동의 없이 전문가 간 아동의 연락처 및 상담 기록 공유할 경우	3.53	.716
8	지적/정서적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3.73	.679
9	보호 조치의 결과로 해외입양을 가게 될 경우	4.05	.793
10	아동이 보호조치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이 악화될 경우	4.43	.636
11	전문가의 판단 시, 아동의 의견이 보호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이는 경우	4.43	.594
12	아동의 의견이 수시로 바뀌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3.60	.744
13	아동 보호 조치에 대한 관련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3.38	.586

보호조치 과정 중 의견 상충 시 의견 중시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아동'-'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지자체 아동보호팀'-'비가해보호자'-'보호시설 직원'-'아동 국선 변호사'-'교사'-'경찰' 순으로 나타났다. (I.C. 0.17)



〈그림 4-7〉 보호조치 과정 중 의견상충 시 의견 중시에 대한 우선순위

이외에 응답자가 예상하는 발생 가능 상황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 (1) 보호시설 및 과정 내 부적응

부모와 아동의 갈등으로 인해 아동에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아동이 심리치료,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의 심리정서 관련 증상이나 품행장애가 심각하여 아동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청취하거나 선택을 허용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이 보호시설 내 핸드폰 사용이나 친구들과 놀이를 하고 싶으나 보호시설의 규율을 따라야할 경우 혹은 보호시설 내 다른 아동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2) 원치않는 사건 공개나 학습 중단, 강제 전학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이 다니는 학교나 시설에 알려지거나 분리 조치로 인해 학습이 중단되거나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는 문제도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 (3) 아동의 거짓 진술 또는 진술 오염

아동학대 행위자가 합의나 취하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하는 경우와 아동이 자발적으로 거짓진술을 하여 보호자에게 반항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분리보호된 아동이 집에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아동이 분리보호의 근거가 된 자신의 진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도 언급되었다.

#### (4) 종사자의 전문성 부재

종사자들의 전문성 미비로 인해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아동의 보호조치 후 사례관리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 성장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5) 기타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를 원하는 사유가 아동의 행동문제(비행, 가출, 폭력 등)에 기인하는 경우, 아동의 청문권이 보장되기보다는 조사관 혹은 실무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우선시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의 판단과 달리 아동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미취학/초등 저학년 아동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의사가 확고한 고학년 아동의 경우는 강제하기 어려우며 때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에서 파악한 아동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 ① 끊임없는 설득

아동보호의 최종목적은 아동의 삶이 바르고 편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을 설득하고 그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안전을 위해 아동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② 전문가의 의견

아동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심층 상담 내지 정신과 진료를 필수로 거친 후 진정한 의사에 의해 거부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보호조치 자체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 등의 정확한 진단과 심리상담 등을 함께 제공하고, 다시 사례회의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고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③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제공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학대사건을 처리하고 학대피해아동을 대하는 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피해 아동을 만나는 전문가(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들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차이가 없도록 전문가 집단 간 지속적인 교류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문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듣는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④ 관련 법률조항 지침 명시

아동 보호 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나 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아동의 의견이 보호자의 영향을 받아 의견이 바뀌거나 분리가 필요함에도 거부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해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동과 보호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아동이 보호자의 영향을 받아 아동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한 의견 조율을 해본 후 강제력이 동원되더라도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⑤ 아동 친화적 청문환경 조성

아동과 라포형성 및 심리치료적 접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은 학대를 당해도 여전히 성인 보호자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이 보호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아동의 의견이 보호자의 영향을 받는 경우 분리보호 후 접근금지, 정보통신 금지 결정이 필요하며,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주변인(지인, 친인척)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아동에게 전달하여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의견은 수시로 바뀌거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여 대응하는 것 또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

#### ⑥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입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엇보다 가족중심 실천이 필요하며, 일회성, 단편적으로 청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맥락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가족 위기상황의 조기 발견부터 초기 개입과정에서

의 충분한 신뢰관계 형성, 강점관점 실천 등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의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⑦ 기타

기타 의견으로는 청문권 보장이 아동의 의견을 모두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분리 조치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현재처럼 분리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세운다면 해결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원칙적으로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당 아동에게 적합하고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인데, 현재는 그냥 분리방식만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왜 아동 보호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위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가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4)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

사법 절차 중 아동 청문권 보장 방안의 적합도를 물었을 때, ‘아동 맞춤 청문 절차 마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선변호인 조력 의무화’는 3.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24〉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

세부영역		적합성	
		평균	표준편차
1	아동 학대 전담 검사/판사제도 도입	3.85	.834
2	아동/장애인 전담 진술조력인 도입	4.20	.791
3	국선변호인 조력 의무화	3.75	.809
4	아동 맞춤 청문 절차 마련	4.45	.815

이외에도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경찰

① 아동 청문권 인식

아동학대발생시 아동의 진정한 의견과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따라

서, 경찰은 우선 아동 청문권 개념을 숙지하고, 아동의 의사나 의견개진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아동 청문권이 아동의 연령이나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되어야 할 기본권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아동의 상흔 등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아동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지체 없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② 아동의견·정보 청취 및 환경 마련

아동이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아동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동에게 어떠한 선택권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고 진술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해자 처벌 및 보호자 진술 시 아동의견보다 비가해자 부모 의견이 존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현장에서 행위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기회나 통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는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획득을 실패하게 만들며, 피해아동보호를 미흡하게 하고, 피해아동의 욕구파악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 ③ 아동 전문가의 협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담당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조치 거부 시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④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가의 민감성 확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관련해서 경찰들도 분리 보호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현재의 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 ⑤ 필수 대면조사 기준 범위 조정 및 신고 횡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대면 조사를 해서 피해아동의 상황 및 아동의 의사를 면밀하

게 살펴야 하는데 필수 대면 조사 범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피해아동의 이웃까지 만나서 의심정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아동의 이웃이나 시설관계자(교사/원장) 등의 진술이 책임 문제나 가해자로부터의 위협 등으로 인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일률적으로 신고 횟수로 분리기준을 정하는 것은 개별 가족 및 아동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두 번 신고 시 아동 학대사례로 판단하여 사례관리를 시작하고 상황 및 위험에 따라 분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더불어 '두 번 신고'의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인지, 112 신고인지, 정식 고소장 제출 등의 형사신고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 ⑥ 매뉴얼 절차 마련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망 범위를 포괄적(어린이집, 유치원교사, 학교교사, 학원강사까지도 확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법적인 의무조항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의 안착에 의해 아동 청문권 보호의 정도가 점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사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과 이를 안전하게 확보할 절차가 더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과 현장에서의 판단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병의원 진료를 위한 전담의료체계 및 관련 예산 확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시 분리와 같은 경우는 아동의 청문권 보다는 신고 횟수 등의 객관적 지표로 기계적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아동 청문권에 관한 선언적 조항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보장 방안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⑦ 기타

분리보호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라면 분리보호를 친족 보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장에 조사를 나가서 파악한 부분

들을 아동과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공유하여 가정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일회성 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사후관리 진행을 통해 아동의 의견, 심정의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황에 대한 진술 조사 뿐만 아니라 아동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거나 관계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⑧ 한계

심각한 상해가 아닌 외상이 없는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자백이 없이는 피해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동 학대 관련 사건 진행 시 분리, 시설보호, 행위자 퇴거 등과 같은 조치가 아동의 욕구,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부모가 이혼 소송 중에 있어 한쪽 부모의 편을 들고 있는 아동의 경우(당사자들 중, 이혼소송 중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일부러 아동학대 고소를 하는 경우), 다른 쪽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검찰

#### ① 매뉴얼, 절차, 규정 마련

아동학대 유형이나 심리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지침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기본적으로 형사 시스템 자체가 아동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 청문권 보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피해아동은 행위자와 특수관계에 놓여있어 진술을 축소하거나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진술 오염에 대한 대책을 지침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일반 범피해자제도는 성인피해자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뿐 아니라, 가해자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아동”이 형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가 될 경우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추가로 이러한 지원 제도마저 검찰에 추가 진술을 하러 가지 않는 한, 위 지원제도

여부조차 알기 어려우며 이에 신규로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지원내용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② 아동 의견 청취 환경 마련

아동의 의견이나 의사가 가해자에 의해 오염되거나 왜곡, 묵비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격리, 보호조치 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의 욕구에 초점화된 심도있고 독립적인 청문 과정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스스로 의견을 진술할 성숙도가 부족할 시, 아동의 감정이나 욕구,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아동 추가조사 시 대질심문 같이 행위자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검찰에서 아동 의견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찰 조사와 중복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화해야하며, 아동이 죄책감 등 부정적인 감정에 놓이지 않도록 피해조사 전에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③ 전담 인력 확충

전담 검사, 전담 판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진술조력인 등 아동의 진술을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문인력은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조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④ 기타

실제로는 주로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하는데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누락 되는 경우가 잦으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범 죄피해자에게 배상명령, 피해자구조제도를 안내한다고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에게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그 과정에서 아동이 느끼는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 피드백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시설보호자의 공동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 (3) 법무부

#### ①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확보

검찰이 진술조력인의 역할 및 본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본 제도를 보다 필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특성(저연령, 장애아동 등)이나 학대 유형과 정도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현재는 아동관련 지식이나 기술에 있어 진술조력인 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건없이 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아동과 성인, 더 나아가 일반아동/장애아동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하고, 대상에 맞는 진술조력인을 교육, 양성함으로써 아동의 특성에 맞게 청문권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석하여 진정을 해야하는 사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② 아동 친화적 의견 청취 환경 마련

아동의 바람과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아동 진술 전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상 아동의 연령, 발달단계 및 개인적 특성(장애 등)을 고려한 분야별 전문가와 충분히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조사 진행 과정에서 지원자가 변경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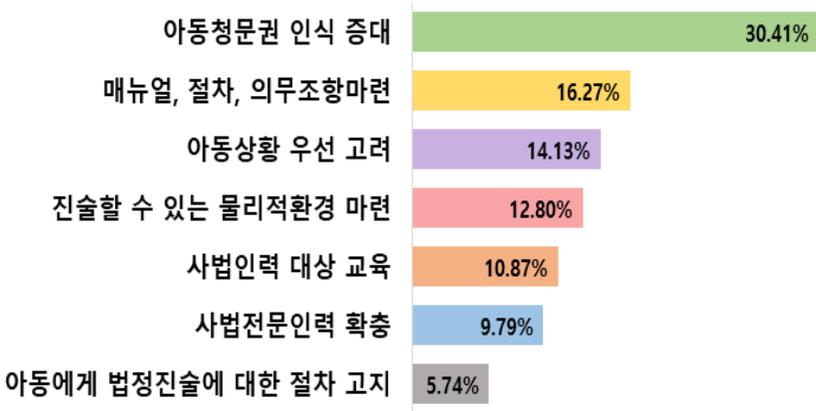
#### ③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증대

진술조력인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원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전문가들을 만날 때, 대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사건 중심의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동은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만나고 변호할 때는 일반 성인을 대할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술조력인의 경우는 대상에 특화된 진술조력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아동 부분에 특화된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신뢰관계인이나 전문가 그룹(다문화 통역관 등)의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

신뢰 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은 필수 의무사항이라 동석 없이 조사 및 법정증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은 필수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며 희망한다고 해도 예산 부족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진술조력인과 국선변호사 또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2차 조사에서 보호조치 시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의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아동 청문권 인식 증대’-‘매뉴얼, 절차, 의무 조항 마련’-‘진술 청취 시 아동상황 우선 고려’-‘아동의 의견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사법인력 대상 교육’-‘사법전문인력 확충’-‘아동에게 법정 진술에 대한 절차 고지’ 순으로 나타났다. (I.C. 0.18)



〈그림 4-8〉 보호조치 시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의 우선순위

## 15)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방안

### (1) 새로운 제도 및 법률 필요

학대나 폭력 신고 핫라인처럼 표적 아동들에 대한 청취 핫라인 같은 제도나 절차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더불어 아동 청문 전담 상담원을 양성하고 아동보호 전문 국선변호인 제도를 신설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 상 아동 청문권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고 실행지침도 결여되어 있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에서 아동 청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였다.

자체 매뉴얼 등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기관 수준에서 진행될 경우,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언적일지라도 법률상에 청문권 조항을 넣고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 적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안에 따라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여 결정하는 기관이나(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의사를 전달하는 기관(국선변호사 등)은 일정 시간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어 진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로 강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이 해당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확인과정과 정보공유에 대한 동의절차의 의무화, 각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술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고 아동에게 이를 설명했는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2) 법률자문팀

지자체 혹은 기관 내 법률자문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들 간의 토론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합동 솔루션 형태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법률 관련 제안사항 등은 법·제도·지침에 수시로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3) 적극적인 사례관리 및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원가정 복귀 절차 전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의무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적응 기간을 실시하고, 복귀이후 아동보호담당자(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와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행위자의 교육·상담 미출석 시 과태료 등 법적 조치, 사후관리 기간 보장 및 사후관리에 대한 비협조 시 법적 조치 등 학대 행위자가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4) 다양한 보호환경 구축

아동 분리 보호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보호시설 및 전문가를 확충하고 양

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아동의 주변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며, 아동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및 기관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5) 전문가 보강 및 관련 교육

현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전문한 공무원이 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업무를 맡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16) 아동 청문권 강조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 (1)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 시 기대 효과

##### ① 실질적인 아동보호

아동의 진정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수준의 아동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② 아동 청문권의 사회적 인식 함양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되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아동의 권리 주체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아동 학대 감소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 인권에 대한 실제적인 강화 방안이 모색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응답되었다. 다만 이러한 아동 청문권 보장이 아동인권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는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③ 기타

아동 청문권은 긍정·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이며, 절차적으로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실무에 영향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업무상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동 당사자에 대한 청문 없이 종사자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아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관련 역량을 키우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2)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 시 우려되는 점

### ① 인력 전문성 강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현장에서 아동 청문권을 강화하는데 있어 인력의 전문성과 감수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더불어, 지역간(수도권 VS 지방)에 존재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의 격차를 좁히는 것 또한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실무자의 업무 양 및 업무 스트레스 증가

청문권 보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사례량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 확인을 위한 방문조차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업무가 더해진다면, 실무자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한층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예산투입과 실무자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무자의 소진으로 이어져 사실상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 ③ 종사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

아동 분리 조치시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제약이 따르며, 아동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칫 아동의 잘못된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판단하는 자가 오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 청문권을 강조하여 적용함으로써 역으로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④ 시간적 딜레이 발생 가능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등 청문권을 강조할 경우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제4절 델파이 조사결과 합의

### 1. 아동 청문권 사회적 인식 증대

#### 1)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은 그동안 많이 발달되어 왔지만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에 비해 참여권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으며, 아동 관련 서비스나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의견존중, 청문권 보장보다는 그 외 사항에 더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의 4대 권리는 각 조항 별 상대적 가중치를 따지지 않고 균등하게 아동에게 주어져야 할 권리이며 따라서 이후부터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여 현재 본인이 처해있는 모든 과정과 절차를 알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겠다.

또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첫 번째 추진전략이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 (가칭)아동청원 플랫폼 도입,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에서의 학생참여를 제도화하는 것과 가사소송 시 아동의 진술기회를 보장함과 증장기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추진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에 따라 아동의 청문권 및 의견표명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산 지원, 관련 업무 인력 충원, 아동 및 아동 관련 종사자의 교육 훈련과 사회적으로는 아동의견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 2) 아동 청문권에 관한 편견과 오해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이 표현하는 모든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아동이 원하는 대로 절차를 수행해나가는 것이라는 오해를 풀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단순히 아동의 '언어' 표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비언어적 표현, 기타 신체적 특징, 간접적 정보 획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의 의사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3) 궁극적인 아동 보호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동의 의사와 견해를 확인하고 의사결정과정에 함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아동의 의견을 듣고, 여러 정보원에서 오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아동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절차에 포함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은 기존의 편 의중심적인 행정 절차와 성인 중심의 보호 절차에 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할애 되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아동 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 2. 아동친화적 청문 환경 조성

‘아동친화적’의 정의는 아동의 성숙도 및 이해도 수준과 사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 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경을 말한다. 특히, 아동이 사법 절차에 참여하고 이해할 권리, 사생활과 가족의 삶, 그리고 진실성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Council of Europe, 2010).

사법 절차상의 아동친화적인 요소로는 정보제공, 개인 및 가정생활 보호, 안전 등이 있다. 먼저 정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성별과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위협, 보복, 2차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친화적인 청문환경은 아동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해 아동 청문 분위기를 방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Council of Europe, 2010).

### 1) 아동 보호 전문인력 및 예산 보충

아동 청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청문권 관련 업무를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체계(구조와 인력, 예산 등)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할 때 아동의 의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관련 법·지침·매뉴얼

현재 법률에는 아동 청문권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지침이 거의 없다. 이는 결국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지침·매뉴얼이 신설되어 해당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에게 업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추가로 아동 보호조치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갈등에 대비하여 아동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를 보호하는 관련 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 3) 아동청문 환경 마련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때 가해자와의 분리 진술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이외에도 아동이 원하는 증언 형식(영상, 서면 등)을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언어적 표현 외에 주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나 진술 전과 후에 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심리적 케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3. 지속적인 사례·사후 관리

아동의 보호조치 과정 중 신고, 분리, 응급조치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아동 청문권 보장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분리 조치 이후의 아동의 생활, 원가정 복귀 직전 및 원가정 복귀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분리 조치 이후 아동이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 | 제5장 결론



## 제5장 결론

아동 청문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아동 의견 존중의 조항으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국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서도 아동의 의견을 묻고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 청문권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및 타인 존중을 발전시키며, 아동의 관점으로 충분한 정보제공이 될 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폭력, 학대, 위협, 부당 또는 차별의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소속감, 연대감, 책임, 배려, 갈등해결을 배움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꼭 보장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아동 청문권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법에서 아동 청문권에 대한 이행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간접적인 조항이며, 특히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의견존중’이 유일한 상황이다.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는 아동 청문권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한 것은 물론 나이제한의 규제 또한 아동 청문권의 온전한 실현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동 청문권 자체를 다룬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아동 청문권에 대하여 연령대별, 교육·보호·활동 등 각 부문별, 가정·학교·지역사회 등 삶의 다양한 공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장실무자들은 주로 과도한 업무나 업무절차 및 환경으로 인해 아동 청문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변호사,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등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계층화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무자의 아동권리 관점 및 청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청문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강화 및 옴부즈퍼슨의 배치 및 조정역할 부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보호서비스 행정절차 상 청문권 향상을 위한 제언

### 1) 하위법령 및 실무지침의 마련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관련하여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보호조치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하위법령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실무지침에서는 단순 질문이나 점검표 수준, 중요한 선택에 있어 아동의 자기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정도로 제시되어 있어 아동 청문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아동복지법 내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아동 청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이 마련되어 제시된다면 아동보호서비스 행정절차 상 청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아동보호절차 각 단계에서의 절차상 변화

아동 청문권 보장은 아동 관련 서비스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아동보호 현장에서부터 시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삶과 안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아동 청문권에 대한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 혹은 실무자가 아동 청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로서는 아동보호서비스와 가정외보호서비스에서 분리조치 시, 그리고 원가정 복귀 시에 우선적으로 아동 청문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들이 아동 청문권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아동의 동의를 명문화하는 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써 아동의 동의 서명을 받도록 문서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자 이해와 서명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증빙을 서명에 준하는 수준으로 마련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동은 영아기, 유아기, 학령전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세부 발달단계에 따라 인지적으로 청문권을 이해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양하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

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이 청문권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각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게 안내자료(시청각 자료 등)가 마련되어 각 절차에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에 아동보호서비스의 단계별로 아동 청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면, 먼저 1단계(상담, 조사, 사정)에서는 아동복지 종사자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격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격리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단계(보호계획 및 결정)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실행하였는지,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아동에게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는지, 아동상담의 목적을 아동에게 설명하고, 아동이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단계(보호조치)에서는 보호조치 시 아동의 견을 충분히 청취하였는지, 아동이 보호조치에 대해 동의하는지, 보호조치 및 서비스 계획에 대해 아동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아동이 이해했음을 확인하였는지, 아동이 추가로 제시하는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단계(종결)와 5단계(사후관리)에서도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혹은 서비스종결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를 통해 아동이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청문권을 보장해야 한다.

### 3) 음부즈퍼슨의 배치 및 역할 부여

아동 보호조치 중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요구하고, 아동 또한 이에 동의한다면 아동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실무자들에게는 더더욱 세심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동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아동이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면 음부즈퍼슨의 배치 및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음부즈퍼슨은 아동복지 업무에 유능하면서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사례결정위원회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다.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서 아동음부즈퍼슨, 즉 아동권리옹호관이 제시되었다. 아동권리옹호 전문인력을 훈련 및 양성하여 아동상담서비스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상

황에서 파견 및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옴부즈퍼슨 역할을 주로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가 담당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제3자가 지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옴부즈퍼슨이 문제해결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아동을 비롯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동이 자신에 대해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아동의 연령, 언어, 장애 등 아동의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옴부즈퍼슨을 배치하여 이의제기 및 권리보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아동의 이의 및 소명 절차 마련 및 지자체의 역할 부여

새롭게 개편된 현재 아동보호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먼저 아동이 자신에 대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내 사례결정위원회에 아동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장을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기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종 심의 이전에 아동 당사자와 보호자, 옴부즈퍼슨 등에게 심의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결위에서 재심의회하는 것, 이런 절차를 거쳐 심의를 최종 확정하는 것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의제기 판단 기준을 수립하여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내 아동보호팀, 사례관리팀 등에서 아동 보호계획 체크리스트에 청문권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 청문의 절차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통하여 모든 사례마다 빠짐없이 아동 청문권이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 서비스 다양화

아동의 욕구가 다양한만큼 아동복지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며 매우 한정적이다. 분리조치 시 아동에게 시설별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아동과 함께 기관방문도 실시한 후 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전국에 76곳에 그치고 있으며 영유아나 장애아에 대한 구분 없이 성별로만 나뉘어 만 0세부터 19세 아동이 모두 거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쉼터의 경우 보육사 3명이 3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아동을 보살피는 실무자는 단 1명뿐인 경우도 있다(노컷뉴스, 2021). 아동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시설이 확보되려면 지자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쉼터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나 장애아가 있는 시설은 보육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6월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장애가 있는 학대피해아동 과반수가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쉼터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다시 폭행과 폭언을 당했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쉼터에서 보호가 된 아이들조차 최초 신고 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됐다. 그 동안은 이러한 이유로 장애아동의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 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도에 총 5개소의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가 설치될 것으로 계획되어 지고 있다(여성신문, 2021).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추후 아동보호 관련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다양화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한정적인 서비스를 벗어나 학대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동의 회복과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임선영, 2021). 본 연구 FGI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분리 조치 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 서비스 선택지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어서 의견 청취가 무의미한 경우가 발생한다. 당장 입소 가능한 시설이나 지역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 서비스에 대해 갖는 기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실무자가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모든 아동에게 개별화된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아동복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동복지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및 시설배치 등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아동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상황을 아동에게 설명하는 것은 청문권 보장의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궁극적으로 아동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체가 청문권 보장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2. 아동보호서비스 사법절차 상 청문권 향상을 위한 제언

### 1) 아동 친화적 청문환경 조성

성인이 사법절차에서 부담감을 갖는 것 이상으로 아동 또한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청문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청문 환경이 위협적이고 적대적이며 연령에 맞지 않는다면 아동이 바람과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절차 상에서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부담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아동이 자신의 청문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이 외적 환경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과도한 영향 및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동 친화적인 청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해야하며, 아동이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의 배치, 그리고 법정 안에서도 위협감이나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리를 배치해야한다. 또한, 판사와 변호사의 복장도 위협감이 들지 않아야 하며, 아동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등 세심한 노력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대신 연령별로 참고할 수 있는 법률용어 목록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아동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실무자 배치 및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그리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법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사법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2) 법조인들을 위한 교육훈련

아동의 의견청취 시 법조인들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인용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라며 법조인들에 대한 역량 및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조인들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감안하여 청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법조인들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유아기의 경우 단순하고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며, 아동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한다.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대명사 대신 이름을 사용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멈춰서 아동에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며 보호자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육하원칙에 의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때와 장소, 상황 등을 연결지을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파악한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 면담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단순하고 연령에 맞는 언어를 사용한다. 아동의 관심사,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법조인은 아동이 질문이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하며 추상적인 질문은 피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사용하는 비어, 속어 등을 익혀두는 것은 전문적인 관계 및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질문이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자신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법조인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사법절차 상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아동대리인의 활용

아동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한 후에는 아동의 의견을 들을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사법절차 상에서 아동이 증언을 하거나 의견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데, 아동의 청문권 보장을 위해 직접 또는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청취하는 방법들이 있다. 대리인은 부모, 변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는 이해

상충이 극명하게 나타나기에 이 경우 부모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대리인을 통해 아동의 청문권이 실현되는 경우, 그 대리인은 아동의 견해를 의사결정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아동 또는 아동의 특정 상황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권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아동대리인은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측면과 아동과 함께 했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부모)이나 기관의 이익이 아닌 아동의 이익만을 대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대리인은 법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청취와는 다른 것으로, 전문가가는 자신의 전문소견을 경험과 지식에 의해 증언하며 사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리인은 오직 아동의 의견에 근거해서 아동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 3.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실무자 교육훈련에 대한 제언

아동복지분야의 실무자들에게 아동 청문권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연령이나 정서적 성숙도, 지적 능력과 관련없이 아동의 의견은 청취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분리조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굉장한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의견을 듣는 ‘환경’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상세하게 교육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문하는 실무자가 아동에게 전문 용어로 설명한다든지, 전문적이지 않은 복장을 착용한다든지, 여러 명의 성인이 아동 한 명을 인터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적 언어가 아닌 쉽고 간결한 언어와 말투를 사용하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계속 해 주면서 아동에게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실무자들이 아동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아동의 정서나 행동을 관찰하여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동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지만 부모의 경우는 가해부모와 비가해부모인지에 따라 의사결정 내용을 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동 청문은 현장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외 보호 현장, 아동보호서비스 현장, 일반 아동 서비스 제공 현장 등 현장마다 청문의 고려사항이 다르고 청문이 필요한 중요 실천 과정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실무자들이 각 현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아동 청문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교육 커리큘럼 내에 청문권 인식 및 감수성에 대한 내용, 청문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 구체적 지침 및 사례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무자 대상 교육훈련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실무자들이 아동 청문권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 4. 실무자 업무환경 및 슈퍼비전 체계 개선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및 여러 제반적인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과중한 업무환경 속에서 적절한 아동청문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자 1인당 적정 사례 수의 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 델파이조사에서도 아동 보호조치의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난 것이 바로 적정 사례 수 배정이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경우 배정된 1인당 사례 수가 많아 질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실무자 1인당 사례 배정 수는 평균 76건이다(남인순, 2020). 반면, 미국의 경우 실무자 1인당 사례 배정 수는 최대 14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정익중, 2021).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아동보호 업무의 특성에 따라 적정 사례 수 배정을 보장하여 아동 청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무자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비록 현 상황이 아동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슈퍼비전 체계 및 업무환경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더라도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한다는 기본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을 것이다. 담당 실무자가 아동사례를 담당한다고 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통하여 아동 청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내 슈퍼비전 시스템을 명문화해야 하며 슈퍼바이저 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저에 대한 아동 청문권 인식 및 감수성 증진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잘 훈련된 실무자를 고용해서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슈퍼바이저를 배치하는 것은 아동보호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 5. 아동복지서비스 NGO 법인 내 법률지원팀(가칭) 설치

현행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의 권리옹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 NGO들이 아동권리 옹호에 많이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동복지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화하면서 이에 따른 법인 내 조직변화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실무자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인 내에 법률지원팀을 마련하여 실무 차원에서 실제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법률지원팀은 법 관련 전문가(변호사)를 책임자로 하여 실무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팀의 업무는 각종 서비스 약관 및 서류의 법률적 검토,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아동 청문권을 비롯한 아동권리 측면의 서비스 제공 및 이행이 법률적인 부분과 상충되지 않는지 여부의 판단, 실무자들을 위한 법적 자문 및 지원, 행정적, 사법적 절차 상에서의 법률지원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률지원팀의 업무는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타 부서들과의 협력도 포함한다. 즉 법인 내 모든 사업 검토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업무 범위가 매우 폭넓게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률지원팀의 신설은 그동안 각 개별 기관에서 촉탁변호사나 법조인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중앙에서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업무의 매뉴얼 개편과 이로 인한 전문적인 업무 향상, 분쟁의 최소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6.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아동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동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아동의 욕구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할 때 그들과 협력적으로 일해야 한다. 아동 청문권은 단순히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것부터 시작된다. 최선을 다해 아동에게 현재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 청문권은 아동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동의 의견, 안전, 발달상황, 개인적 특성, 서비스의 활용가능성 등 복합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아동 청문권은 연령, 정서적 성숙도, 인지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각 아동의 특성

을 고려하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의견을 파악하는 등의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부모의 영향력 없이 독자적으로 아동 스스로 결정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이 원가정 보호를 원한다고 할 때 역시 부모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 청문권의 기본원칙들을 아동과 가족, 실무자와 법조인 등 관계자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보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미경·곽지영(2017).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를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81-106.
- 강지영(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67). 1-33.
- 강진주·고은경(2018). 유아의 참여권 신장을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써 기록화의 가능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751-774.
- 강현아·김희숙·신원영·장승원(2006).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59.
- 굿네이버스(2019a). 굿네이버스 이슈포커스 16호.
- 굿네이버스(2019b). 아동권리 활동가 대상 아동권리 이해와 실천을 위한 가이드.
- 굿네이버스(2020). “Good Motion 아동권리모니터링단”,  
<https://goodneighbors.kr/goodmotion.gn>
- 굿네이버스(2021). 아동보호전문기관 직무교육 교육커리큘럼.
- 권순민(2013). 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형사절차법적 수용과 합리적 이행 방안-UN 아동권리협약과 아동 피해자·증인사법지침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5(2), 171-202.
- 김경희·이선희(2017). 모래상자치료를 적용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참여권 증진에 관한 연구. 모래상자치료연구, 7, 29-43.
- 김미숙(2013). 아동, 청소년의 권리옹호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청소년복지연구, 15(3), 149-172.
- 김세원·김지혜·김경희(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결정 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3), 33-68.
- 김신영(2013).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65.

- 김윤나(2010). 청소년 참여권 연령에 대한 부모-교사-청소년간 인식 차이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0(3), 353-381.
- 김윤나(2011). 아동· 청소년 참여권 정량지표의 현황과 발전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4(3), 1-21.
- 김윤나(2013). 청소년 보호권 및 참여권 연령기준 인식차이에 따른 인권교육 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6(1), 45-69.
- 김젤나·이재연(2007).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권 행사와 적응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11(2), 167-185.
- 김진숙(2014). 영유아의 참여권에 관한 고찰.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 11-34.
- 김진숙(2017). 아동참여권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1), 447-460.
- 김태환(2019). 핀란드의 아동복지 법제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38, 35-64.
- 김한진(200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정에서의 참여권 실현 정도: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267-287.
- 김효진·이재연(2011).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4), 127-153.
- 나정숙·김경숙(2020). 토의활동 중심 유아참여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9(1), 125-142.
- 남인순(2020).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는 없어야 한다. *국정감사 자료집*. 남인순 의원실.
- 노컷뉴스(2021). '설 수 없는 쉼터' 학대피해 아동 '맞춤케어' 절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11554>
- 박명숙·강지영·김희균·안재진·장희선(2019).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법제도 개선 연구. *굿네이버스*.
- 박성혜(2018). 한국에서의 미국 CASA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 탐색: 미국과 한국의 아동 보호서비스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473-489.
- 박종성(2009). AHP에 의한 의사결정 : 이론과 실제. 서울: 교우사.

- 베이비뉴스(2021). 성북구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접수(202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20>
- 보건복지부(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년의 권리.
- 보건복지부(2020a). 2020 아동학대대응 업무 매뉴얼 1권(아동학대조사)
- 보건복지부(2020b). 2020 아동학대대응 업무 매뉴얼 2권(아동학대사례관리)
- 보건복지부(2021).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9).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공동생활가정 평가 지표.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I: 아동학대 조사.
- 안문희(2019). 프랑스와 한국의 아동보호에 관한 비교법 연구. 법학연구, 60(1), 167-193.
- 여성신문(2021).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법 국회 통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526>
- 유영준(2016). 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15, 71-89.
- 이성옥(2015). 참여권의 재해석에 기초한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옥·이순형(2015). 아동 참여권의 재해석과 영유아보육현장 적용. 인간발달연구, 22, 67-88.
- 이세원(2017).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지향: 회복적 사법의 적용. 교정복지연구, 50, 197-228.
- 이용교(2004).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의 신장방안. 아동과 권리, 8, 169-188.
- 이종성(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수(2019). “계층화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가상화폐 보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분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정보관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202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 개발. 굿네이버스.
- 임선영(2021). 아동 청문권에 대한 아동보호현장 실무자의 인식 및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중심으로. 굿네이버스.
- 장민영(2019).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고를 위한 교육법제 개선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37-57.
- 장민영(2019). 아동권리협약상 학생의 의견청문권 실현을 위한 교육법제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31(2), 73-93.
- 장영인(2018).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9, 143-175.
- 정병수(2016). 아동참여권 실현을 위한 노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을 기반으로. 동광, 111, 32-49.
- 정서연·윤재희(2021). 유아 참여권 실현을 위한 교사의 지원방법. 유아교육연구, 41(1), 63-86.
- 정선영(2012). 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UN 아동권리협약과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56-175.
- 정익중(2016). 참여권 확보를 위한 아동투표권에 대한 소고. 동광, 111, 2-30.
- 정익중(2021). 아동학대 관련 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아동권리. 2021년 제1회 아동권리 포럼 자료집. 아동권리보장원.
- 중앙일보(2019). “계부 손에 머리카락 다 뽑힌 채 숨진 5세...막을 기회 5번 있었다, 2019년 10월 22일.
- 채은영·이재연(2016).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참여권 행사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0(3), 347-366.
- 최윤진·이해주·이미리(2004). 청소년인권론. 서울: 교육과학사.
- 최창욱·김승경(2010).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키노시타 에이조·오오야 타카오(2012).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AHP, 서울: 청람.

한국보건의료원(2018). 중증 소아 환자의 치료 결정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

<https://hineca.kr/1604>

함민아·강현아(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참여권 인식과 참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6(4), 565-589.

허종렬(2017). 우리나라 영유아 인권 논의의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0(3), 213-231.

홍순옥·정은주(2019). 유아용 참여권인식척도 개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89-413.

홍승애(2010). 아동의 참여권 행사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59-82.

황옥경·안동현·이효균·강현아·홍관표·현소혜·정선영(2015).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Ball, C. (2014). 「Looked After Children」, palgrave macmillan.

Beier, J. M. (2019). Implementing children's right to be heard: Local attenuations of a global commitment. Journal of Human Rights, 18(2), 215-229.

Bosisio, R. (2012). Children's right to be heard: What children think.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20(1), 141-154.

Catts, R., Allan, J., & Smyth, G. E. R. I. (2007). Children's voices: How do we address their right to be heard?. Scottish Educational Review, 39(1), 51.

Cave, E. (2018). Children, autonomy and the courts: Beyond the right to be heard.

Cha, J. M., Kim, H. S., Kwak, M. S., Park, S. H., Park, G. N., Kim, J. S., Kim, J. H., Kim, W. H.(2018). Features of Post-colonoscopy Colorectal Cancer and Survival Times of Patients in Korea. Clinical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Council of Europe. (2010). Guidelines of the Committ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child-friendly justice

- Crowley, A., Larkins, C., & Pinto, L. (2021). Listen-Act-Change Council of Europe Handbook on children's participation For professionals working for and with children.
- Family Court of New Zealand, "Practice note - Lawyer for the Child: Code of Conduct", <http://www.justice.govt.nz/courts/family-court/practice-and-procedure/practice-notes/practice-note-lawyer-for-child>
- Hart, R. (1992). Children's Participatio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New York: UNICEF(Innocenti Essays, 4).
- Hart, R.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 Holt, K. (2014). 「Child Protection」, palgrave macmillan.
- Holt, K. (2019). Child protection. Macmill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 Holt, Kim., 「Child Protection」, palgrave macmillan, 2014.
- Lansdown, G. (2005).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No. innins05/18).
- MandellLawFirm. "What's the Role of a Guardian Ad Litem in a New York Divorce Case?", <https://www.mandellawfirm.com/whats-the-role-of-a-guardian-ad-litem-in-a-new-york-divorce-case/>
-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19). Foster care practice guide for caseworkers and supervisors. New York
- Nicholson, J., Shimpi, P. M., & Carducci, C. (2012). Children's Right to Be Heard: Learning from Children about Their Perspectives on Play. Exchange: The Early Childhood Leaders' Magazine Since 1978, 207, 54-57.
- NYC Department of Education(2021), "Family Guide to Special Education Services for school-agechildren",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special-education/preschool-to-age-21/special-education-in-nyc>
- OCFS(2019). Foster Care Practice Guide for Caseworkers and Supervisors: OCFS.

- O'Donnell, D. (2009). *The Right of Children to be Heard: Children's Right to Have Their Views Taken Into Account and to Participate in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Firenz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Saaty, T. L. (1990). An exposition of the AHP in reply to the paper "remarks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36(3), 259-268.
- UN CRC Committee(2009).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 UN CRC Committee. (2009).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 Unicef. (2011). *Every Child's Right to be Heard*. New York: UNICEF.
- Yu-Wen Chen. (2020). "대만 아동권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https://youtu.be/DN\\_ikx3gzDU](https://youtu.be/DN_ikx3gzDU)
- Warden, C. (2010). A child's right to be heard: Weaving children's voices into meaningful outdoor experiences. *Every Child*, 16(4), 6-7.
- 才村純 (2013). 日本における子どもの権利擁護に関する取り組みの現状と課題. 201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29-144.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89&cntntsId=1107>

용인시 아동시청

[https://www.yongin.go.kr/home/child/c\\_friendly/friendly02\\_02.jsp](https://www.yongin.go.kr/home/child/c_friendly/friendly02_02.jsp)

유니세프 <https://www.unicef.or.kr>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Justice.govt.nz

<http://www.justice.govt.nz/courts/family-court/practice-and-procedure/practice-notes/practice-note-lawyer-for-child>

OCYA [http://advocate.gov.ab.ca/home/OCYA\\_Youth\\_home.cfm](http://advocate.gov.ab.ca/home/OCYA_Youth_home.cfm)

The Mandel Law Firm

<https://www.mandellawfirm.com/whats-the-role-of-a-guardian-ad-litem-in-a-new-york-divorce-case/>





## | 부 록



## 부 록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 청문권 연구 전문가 델파이 질문지 (2차)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굿네이버스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아동 청문권 상황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이를 토대로 아동 청문권 및 의견표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 청문권이란 전세계 196개국에 비준 또는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원칙이자 주요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며 아동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견 표명권(right to express opinion)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듣도록 요구할 권리’를 뜻합니다.

지난번 1차 전문가패널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청문권 보장 방안 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차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수정하였으며 추가로 도출된 항목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기반한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쌍대비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학술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응답하신 설문내용은 오로지 학술적 통계 및 연구 자료로 사용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 평소에 경험하시고 느끼셨던 바를 가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귀중한 시간 내어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쌍대 비교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하는 두 요인의 중요도가 같다면 “비슷함”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비교대상의 왼쪽에 있는 요인이 오른쪽에 있는 요인보다 중요하다면 “비슷함” 왼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시 1)

비교대상의 오른쪽에 있는 요인이 왼쪽에 있는 요인보다 중요하다면 “비슷함” 오른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시 2)

※ AHP 기법은 일관성 있게 응답되지 않은 항목 (일관성 비율 > 0.2)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에게 이를 알리고 다시 응답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일관성 있는 응답을 못 얻을 경우, 그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가의 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소 긴 설문과정이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응답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시1) 아동 보장 기준의 연령이 인지능력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연령		√								인지능력

(예시2) 아동 보장 기준의 성숙도가 인지능력보다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인지능력						√				성숙도

(예시3) 연령이 인지능력보다 중요하고 인지능력이 성숙도보다 중요한 경우, 연령이 성숙도보다 중요함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연령			√							인지능력
연령	√									성숙도
인지능력		√								성숙도

1. 아동 청문권을 확대피해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관계자는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개념으로 볼 때의 명칭은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영역	전혀 적합하지 않음	별로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아동 청문권					
피청취권					
의견표명권					
의견청취권					
아동참여권					

2.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청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동의하시는 항목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세부영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②	③	④	⑤
아동의 충분하지 않은 의사표현 능력					
아동의 높은 부모 의존도, 영향도					
아동을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					
연령에 맞는 청취 절차/방법 미비					
표명된 의사의 실질적 반영 불가					
아동 의견의 낮은 신뢰성					

3.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적합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세부영역	전혀 적합하지 않음	별로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비언어적 표현 관찰(표정, 울음, 그림, 놀이 등)					
보호자를 통한 청취					
전문가를 통한 청취					
아동이 의견을 말할 때 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					
아동관찰, 부모면접, 전문가 의견 청취를 종합한 사정결과					

4.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요인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세부영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전문성 강화 (관련 교육 참여 등)					
인권 감수성 강화 (아동을 존중하고 청문권을 권리로 인식)					
아동의 요구와 의사가 반영된 사례관리 수행					
전문적인 슈퍼비전 체계 구축					

5.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보호조치 조사 및 증언 시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환경적 요인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적합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세부영역	전혀 적합하지 않음	별로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가해자와의 분리 진술					
반복된 진술 최소화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동석인) 선택					
영상/서면 등의 증언 채택					
아동 관련 정보 교환 시 아동의 사생활 보호					

6. 보호조치 단계에서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적합한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항목에 V 표시 하여 주십시오.

세부영역	전혀 적합하지 않음	별로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아동 ombuds퍼슨 (아동권리옹호관)					
아동보장권리원					
지자체 사례관리팀					
기관 내 슈퍼비전 체계를 이용한 자체 해결					
타 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기타	( 귀하의 답변 )				

7.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보호조치의 아동 청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요인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세부영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①	②	③	④	⑤
아동기관 내 법률자문팀 확보					
아동 청문권 관련 예산 확보 (상담실, 의뢰 비용 등)					
적정 사례 수 배정					
홍보/캠페인					
지역 간 전문인력 및 물적 자원 상이 등 편차 해소					
담당자 보호 체계 구축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음)					

8. 다음은 아동 청문권의 아동 요인의 기준에 관한 항목입니다. [8-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8-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십시오. 귀하의 우선순위와 쌍대 비교 문항이 부합되도록 일관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8-1]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아동 요인 중 귀하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5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1차 평균	귀하의 우선순위
1	아동의 연령	3.93	
2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	4.09	
3	아동의 인지 능력	4.16	
4	아동의 의사표현 능력	-	
5	아동의 안전	-	
6	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	-	
기타	기타		(            귀하의 답변 )

**[8-2]**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한 아동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고 각 항목 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주십시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	아동의 연령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
2	아동의 연령										아동의 인지 능력
3	아동의 연령										아동의 의사표현 능력
4	아동의 연령										아동의 안전
5	아동의 연령										부모와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
6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										아동의 인지 능력
7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										아동의 의사표현 능력
8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										아동의 안전
9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										부모와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
10	아동의 인지 능력										아동의 의사표현 능력
11	아동의 인지 능력										아동의 안전
12	아동의 인지 능력										부모와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
13	아동의 의사표현 능력										아동의 안전
14	아동의 의사표현 능력										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
15	아동의 안전										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

9. 다음은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항목입니다. [9-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9-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귀하의 우선순위와 쌍대 비교 문항이 부합되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1]**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5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1차 평균	귀하의 우선순위
1	초기라포형성	6.33	
2	현 상황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	6.40	
3	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	6.44	
4	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	6.37	
5	아동의 원 가정 복귀 의사	6.19	
6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6.26	
7	보호조치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6.19	
8	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포함	6.38	

**[9-2]**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고 각 항목 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주십시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	초기라포형성										현 상황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
2	초기라포형성										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
3	초기라포형성										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
4	초기라포형성										아동의 원 가정 복귀 의사
5	초기라포형성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6	초기라포형성										보호조치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7	초기라포형성										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포함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8	현 상황에 대한 알 권리										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
9	현 상황에 대한 알 권리										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
10	현 상황에 대한 알 권리										아동의 원 가정 복귀 의사
11	현 상황에 대한 알 권리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12	현 상황에 대한 알 권리										보호조치 결정에 이 의제기할 수 있는 아 동의 권리
13	현 상황에 대한 알 권리										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포함
14	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										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
15	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										아동의 원 가정 복귀 의사
16	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17	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										보호조치 결정에 이 의제기할 수 있는 아 동의 권리
18	향후 계획에 대해 아동의 알 권리										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포함
19	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										아동의 원 가정 복귀 의사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20	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21	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										보호조치 결정에 이 의제기할 수 있는 아 동의 권리
22	즉각 분리 시 아동 의견 청취										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포함
23	아동의 원 가정 복귀 의사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24	아동의 원 가정 복귀 의사										보호조치 결정에 이 의제기할 수 있는 아 동의 권리
25	아동의 원 가정 복귀 의사										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포함
26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보호조치 결정에 이 의제기할 수 있는 아 동의 권리
27	아동이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제공										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포함
28	보호조치 결 정에 이의제 기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아동의 의사표현을 돕는 전문인 포함

10. 다음은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의 원인 요인입니다. [10-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0-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귀하의 우선순위와 쌍대 비교 문항이 부합되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1]**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의 원인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5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1차 평균	귀하의 우선순위
1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	4.50	
2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	4.12	
3	아동 최상 이익실현 관점 부족	4.36	
4	아동학대 전문가 인력 양성 부족	4.26	
5	인적장치 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4.26	
6	실무자의 과도한 업무	4.19	

**[10-2]**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관련 문제의 원인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고 각 항목 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주십시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
2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										아동 최상 이익실현 관점 부족
3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										아동학대 전문 인력 양성 부족
4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										인적장치 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5	아동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										실무자의 과도한 업무
6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										아동 최상 이익실현 관점 부족
7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										아동학대 전문 인력 양성 부족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8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										인적장치 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9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										실무자의 과도한 업무
10	아동 최상 이익실현 관점 부족										아동학대 전문 인력 양성 부족
11	아동 최상 이익실현 관점 부족										인적장치 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12	아동 최상 이익실현 관점 부족										실무자의 과도한 업무
13	아동학대 전문 인력 양성 부족										인적장치 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14	아동학대 전문 인력 양성 부족										실무자의 과도한 업무
15	인적장치 부족 (법정대리인, 후견인)										실무자의 과도한 업무

11. 보호조치(예: 아동 분리, 보호조치결정, 원가정 만남, 원가정복귀 등)과정 중에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충된다면, 누구의 의견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느끼시는지 [11-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1-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귀하의 우선순위와 쌍대 비교 문항이 부합되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1]** 보호조치 중 의견상충 시 의견 결정 주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5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귀하의 우선순위
1	아동	
2	비가해 보호자	
3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4	지자체 아동보호팀	
5	교사(학교/보육)	
6	경찰	
7	아동 국선 변호사	
8	보호시설 직원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	

**[11-2]** 보호조치 중 의견상충 시 의견 결정 주체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고 각 항목 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주십시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	아동										비가해 보호자
2	아동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3	아동										지자체 아동보호팀
4	아동										교사(학교/보육)
5	아동										경찰
6	아동										아동 국선 변호사
7	아동										보호시설 직원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8	비가해 보호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9	비가해 보호자										지자체 아동보호팀
10	비가해 보호자										교사(학교/보육)
11	비가해 보호자										경찰
12	비가해 보호자										아동 국선 변호사
13	비가해 보호자										보호시설 직원
14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지자체 아동보호팀
15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교사(학교/보육)
16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경찰
17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아동 국선 변호사
18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										보호시설 직원
19	지자체 아동 보호팀										교사(학교/보육)
20	지자체 아동 보호팀										경찰
21	지자체 아동 보호팀										아동 국선 변호사
22	지자체 아동 보호팀										보호시설 직원
23	교사(학교/보육)										경찰
24	교사(학교/보육)										아동 국선 변호사
25	교사(학교/보육)										보호시설 직원
26	경찰										아동 국선 변호사
27	경찰										보호시설 직원
28	아동 국선 변호사										보호시설 직원

12. 다음은 보호조치의 각 단계입니다. 아동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사결정 단계에 [12-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2-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귀하의 우선순위와 상대 비교 문항이 부합되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2-1]**

보호조치 시 각 단계별 아동 의견 청취 정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5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귀하의 우선순위
1	신고	
2	응급조치	
3	보호명령청구	
4	법적증언	
5	분리조치	
6	가정복귀	
7	사례종결	

**[12-2]**

보호조치 시 각 단계별 아동 의견 청취 정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고 각 항목 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주십시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	신고										응급조치
2	신고										보호명령청구
3	신고										법적증언
4	신고										분리조치
5	신고										가정복귀
6	신고										사례종결
7	응급조치										보호명령청구
8	응급조치										법적증언
9	응급조치										분리조치
10	응급조치										가정복귀
11	응급조치										사례종결
12	보호명령청구										법적증언
13	보호명령청구										분리조치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4	보호명령청구										가정복귀
15	보호명령청구										사례종결
16	법적증언										분리조치
17	법적증언										가정복귀
18	법적증언										사례종결
19	분리조치										가정복귀
20	분리조치										사례종결
21	가정복귀										사례종결

13. 다음은 현재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13-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3-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귀하의 우선순위와 쌍대 비교 문항이 부합되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1]**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돕는 전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5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귀하의 우선순위
1	진술조력인	
2	미성년후견인	
3	변호사	
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6	보호시설 직원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	

**[13-2]**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을 돕는 전문가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고 각 항목 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주십시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	진술조력인										미성년후견인
2	진술조력인										변호사
3	진술조력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5	진술조력인										보호시설 직원
6	미성년후견인										변호사
7	미성년후견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	미성년후견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9	미성년후견인										보호시설 직원
10	변호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1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12	변호사										보호시설 직원
13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14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보호시설 직원
15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보호시설 직원

14. 다음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해외에서 실행되고 있는 아동 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 제도입니다. [14-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4-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귀하의 우선순위와 상대 비교 문항이 부합되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동대리인 - 보호명령 등을 신청할 때나 명령 이후 법원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에 아동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 독립방문관 - 지자체와 독립되어 활동, 아동 배치 이후에 아동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아동의 의견 청취
- 독립점검관 - 지자체와 독립되어 사례검토 및 아동상황 수시 점검

**[14-1]**

해외에서 실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 제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3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1차평균		귀하의 우선순위
		(필요도)	(중요도)	
1	아동대리인	4.21	4.26	
2	독립방문관	3.80	3.76	
3	독립점검관	3.90	3.88	

**[14-2]**

해외에서 실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조치 시 아동 청문권 보장 제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고 각 항목 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주십시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	아동대리인										독립방문관
2	아동대리인										독립점검관
3	독립방문관										독립점검관

15. 다음은 아동 보호조치 시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5-1]에는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우선순위를 기입해주시고, [15-2]에는 각 항목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V표 해주세요. 귀하의 우선순위와 쌍대 비교 문항이 부합되어 일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5-1]** 보호조치 시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중요한 순서대로 5순위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번호	내용	귀하의 우선순위
1	아동 청문권 인식 증대	
2	아동의 의견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	
3	사법인력 대상 교육	
4	매뉴얼, 절차, 의무 조항 마련	
5	사법전문인력 확충 (전담 판,검사)	
6	진술 청취 시 아동상황 우선 고려 (서면진술 권고, 대질심문 지양 등)	
7	아동에게 법정 진술에 대한 절차 고지	

**[15-2]** 보호조치 시 사법체계 내 개선사항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고 각 항목 별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주십시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	아동 청문권 인식 증대										아동의 의견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
2	아동 청문권 인식 증대										사법인력 대상 교육
3	아동 청문권 인식 증대										매뉴얼, 절차, 의무 조항 마련
4	아동 청문권 인식 증대										사법전문인력 확충 (전담 판,검사)
5	아동 청문권 인식 증대										진술 청취 시 아 동상황 우선 고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6	아동 청문권 인식 증대										아동에게 법정 진술에 대한 절차 고지
7	아동의 의견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										사법인력 대상 교육
8	아동의 의견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										매뉴얼, 절차, 의무 조항 마련
9	아동의 의견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										사법전문인력 확충 (전담 판,검사)
10	아동의 의견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										진술 청취 시 아동상황 우선 고려
11	아동의 의견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마련										아동에게 법정 진술에 대한 절차 고지
12	사법인력 대상 교육										매뉴얼, 절차, 의무 조항 마련
13	사법인력 대상 교육										사법전문인력 확충 (전담 판,검사)
14	사법인력 대상 교육										진술 청취 시 아동상황 우선 고려

번호	기준	절대적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비슷 함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적 중요	기준
15	사법인력 대상 교육										아동에게 법정 진술에 대한 절차 고지
16	매뉴얼, 절차, 의무 조항 마련										사법전문인력 확충 (전담 판,검사)
17	매뉴얼, 절차, 의무 조항 마련										진술 청취 시 아동상황 우선 고려
18	매뉴얼, 절차, 의무 조항 마련										아동에게 법정 진술에 대한 절차 고지
19	사법전문인력 확충 (전담 판,검사)										진술 청취 시 아동상황 우선 고려
20	사법전문인력 확충 (전담 판,검사)										아동에게 법정 진술에 대한 절차 고지
21	진술 청취 시 아동상황 우선 고려										아동에게 법정 진술에 대한 절차 고지

16.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아동 보호조치의 사법 절차 중 아동 청문권 보장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신 항목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적합도에 V 체크해 주십시오.

세부영역	전혀 적합하지 않음	별로 적합하지 않음	보통	적합함	매우 적합함
	①	②	③	④	⑤
아동 학대 전담 검사/판사제도 도입					
아동/장애인 전담 진술조력인 도입					
국선변호인 조력 의무화					
아동 맞춤 청문 절차 마련					

## [인구사회학적정보]

직책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④ 법원공무원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⑩ 기타	② 사법경찰관 ⑤ 보호관찰관 ⑧ 교수	③ 가정보호사건조사관 ⑥ 변호사 ⑨ 연구원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	총 (            )년					
지역	① 서울 ⑦ 울산 ⑬ 전북	② 부산 ⑧ 세종 ⑭ 전남	③ 대구 ⑨ 경기 ⑮ 경북	④ 인천 ⑩ 강원 ⑯ 경남	⑤ 광주 ⑪ 충북 ⑰ 제주	⑥ 대전 ⑫ 충남
성별	남 (    )      여 (    )					
연령	만 (    )세, (    )년 생					
학력	① 고졸 ② 대졸 ③ 석사	④ 석사수료 ⑤ 박사	⑥ 박사수료			

감사합니다.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 청문권

: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응 철  
편 집 인 김 미 호  
발 행 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 화 02-6424-1692  
이 메 일 crrt1@gnk.or.kr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I S B N 979-11-977040-2-4

---

 굿네이버스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93330

9 791197 704024

ISBN 979-11-977040-2-4